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DECEMBER 1987. NO. 225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發行人: 1987. 12.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4)級認可 郵便番號: 135

관

음율이 가장 뛰어나
음율이 50% 이상
입니다.

있습니다.
다운 디자인을 다
이곳하고 인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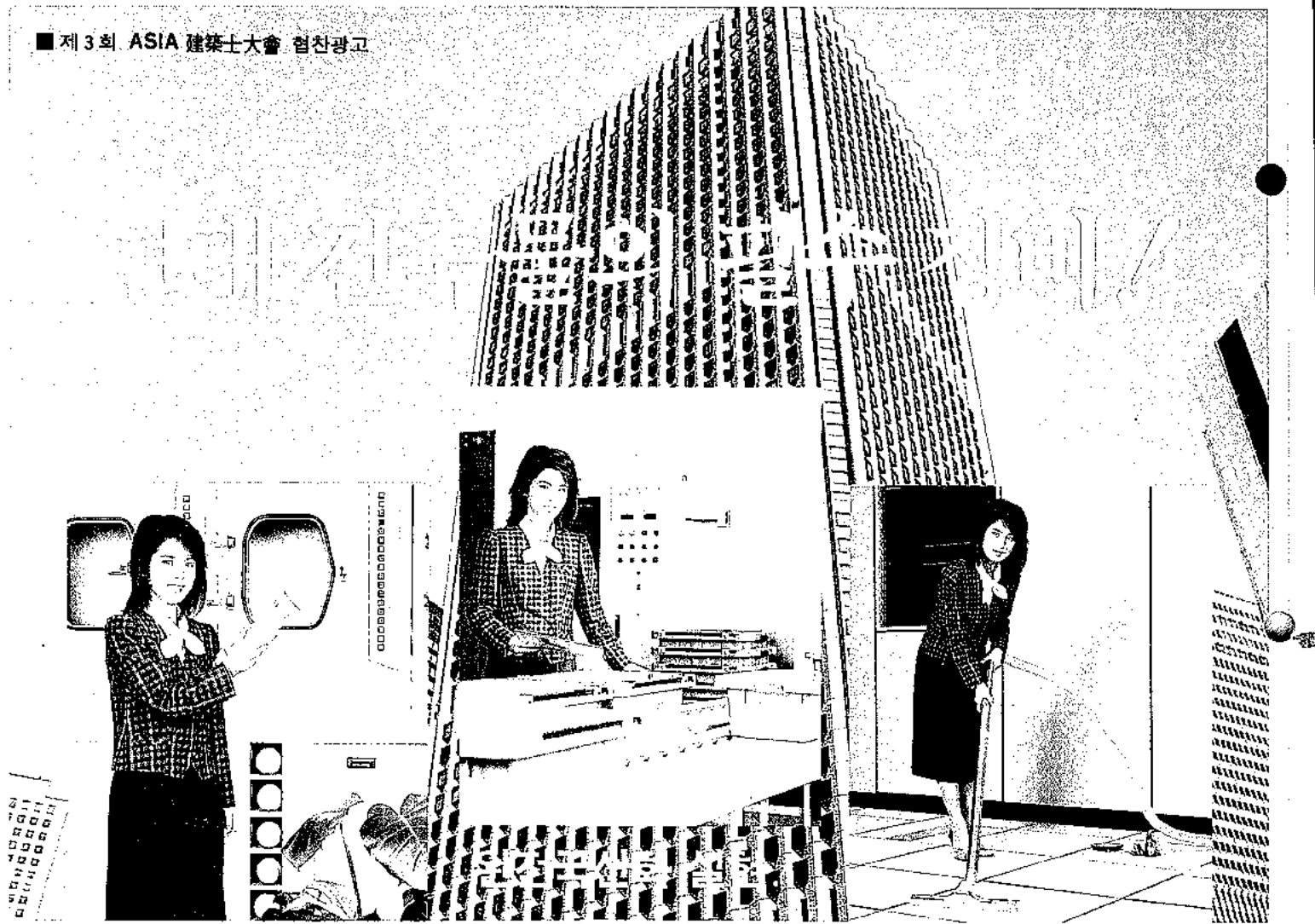
나?
입니다.
이 주원료로 화재시
구 낮아 냉난방비를

입니까?
입니다.
권에 비해 무게가
을 줄여주며 완벽하
사공·보수·관리가
제적인 가격
을 사용해 주십시오.

천정판
TOIE
ONE



1987.12



「병의 에어슈터」는 일단 O.A. 시대를 리드하는 최신 설비!

■에어슈터란 각종 서류, 전표, 문서, 현금, X-Ray 필름 등을 보내고 싶은 층(層)의 방(房)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최신 설비로 고급 인력의 시간 절약은 물론 전사원의 업무 능률 향상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특징

- 각종서류, 문서 등의 신속한 전달
- 사무자동화로 인건비, 관리유지비 절감
- 조작이 간편하며 극소면적 차지
- 기존 건물에도 시공 가능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경매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에어슈터

빌딩 및 공장 건물 속의 작은 트럭!

■「중의 버티컬 콘베어」는 중량 30kg 이하의 운송 물품을 원하는 층, 방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는 운송장비입니다.
특히 병원의 각종 약품, 은행, 오피스의 각종 종서적 및 장비류에서 공장에서의 각종 소형 운송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징

- 전자동 연속 작동으로 대량 운송 가능
- 사용, 취급이 간편함
-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함
- 안전설계로 사고 방지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버티컬 콘베어

현대인을 위한 건강 청소 등의 센츄럴 크리너!

■「센츄럴 크리너」란 종래의 습식 청소방식에서 탈피, 선진국형인 건식 청소 설비입니다.
건물이나 공장내에 산적해 있는 먼지나 오물을 자동으로 흡입식 공기 압력으로 완전 제거하는 최신 청소 장비입니다.

특징

-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 청소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센츄럴 크리너

주식회사 중외상사

서울·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표) 841-1212, (직통) 841-2721~3

決 意 文

우리 전국 2천7백여 건축사회원 일동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다음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자가
아닌자의 건축공사감리 업무 수행을 절대
반대한다.
2. 건축공사감리 과정은 설계의 연장이므로
조형예술 창작자인 건축사만이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축사법 및 건축법과 상충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제40조는 개정되어야한다

1987. 12. 9 .

大韓建築士協會 全國會員一同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 창간 10주년 기념호

표지설명: 삼성종합기술연구소
설계 / 김창수 · 박승 (삼우종합)

建築士

차 례

1987년 12월호 (통권 225호)

발행인 안기태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위 원 강태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 용
위 원 김기석
위 원 박영호
위 원 김정동

편집 출판사업부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 (02) 교 581-5711 (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계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U.D.C. 69/72 (054-2) : 0612 (519)

인쇄: 광문정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 (054-2): 0612 (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선
요강을 준수합니다.

3 決意文

第22回 定期總會

6 開會辭

8 建設部長官 致辭

10 日本建築士會 連合會長 祝辭

會員作品

- 11 국립청주박물관 金壽根
14 국회도서관 李丞雨
16 삼성종합기술연구소 金昌壽 + 朴昇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禹時庸
22 (주) 금성사 중앙연구소 (株) 間 · 三建築
25 안양 석수동성당 鄭求榮

이달의 詩

- 27 편지 鄭浩承

送年에세이

- 28 또 한해를 보내며 尹錫祐 · 朴研心 · 宋洙九 · 金善洋 · 金洛中

컬 럼

- 34 建築設計는 建築士가 하는데 崔昌圭

連 載

- 36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 (7) 金晶東

研究報告

- 48 오디오트라운의 音響設計 孫章烈
56 風水地理說과 住宅設計 (2) 朴時翼
64 吐含山 石窟庵小考 (後) 崔富得

63 율리픽광장

70 會員動靜

- 72 資 料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 정보자료실소장 도서목록, '87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85 總會消息

89 協會消息

91 新入會員

CONTENTS

December 1987 Vol 225

Resolutions	3
THE 22ND GENERAL MEETING	
Opening Address	6
Congratulatory Address of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8
Congratulatory Address of The Chairman of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 Association	10
WORKS	
Cheongjoo National Museum	Kim, Soo-Geun 11
Library of National Assembly	Lee, Seung-Woo 14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Kim, Chang-Soo & Park, Seung 16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Woo, Si-Yong 20
Gold Star Central Research Laboratory	Group 3 Architects Association 22
Seoksoo-Dong Church(Anyang)	Jeong, Koo-Young 25
POEM	
Letters	Cheong, Ho-Seung 27
ESSAY	
COLUMN	
Architecture Design is done by Architects but	Choi, Chang-Kyu 34
SERIAL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Kim, Chung-Dong 36
REPORT	
Acoustis Design of Auditorium	Son, Jang-Ryul 48
Feng-Shui Theory and Architectural Design	Park, Sea-Ik 56
A Study of Seokulam Grotto on Mountain Toham	Choi, Bu-Deuk 64
OLYMPIC PLAZA	63
MOVEMENTS OF THE MEMBER	70
MATERIALS	72
THE 22ND GENERAL MEETING NEWS	85
KIRA NEWS	89
NEWLY ADMITTED MEMBER	91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 1803-55 / 581-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희동 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 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 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 3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 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 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와동 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 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711(부산대파트네)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별어동 371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 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1124-5/(0331) 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 719-9/(0343) 2-2698, 2-0012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 74-6/(032) 63-3144
성남분소/성남시신원동 5512/(0342) 2-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정동 182/(0351) 2-1083
송탄분소/송탄시신원동 21/(0333) 4-6153
고양분소/고양시관문동 409-2/(0346) 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 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중리 216-8/(0336) 2-3396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 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036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 206/(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시상대동 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 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 55-43/(0397) 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월1리 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7116-168/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 573-1/(0441) 2-3082
제천분소/제천시외삼동 8-8/(0443) 2-6253
옥천분소/충북보은읍삼산리 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동구대흥동 487-1/ (042) 22-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 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문리 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서노송동 635-5(대륙빌딩 508) (0652) 3-3881
아리분소/여리시남동 1가 77-22/(0653) 52-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 1가 85/(0654) 2-4060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 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 783-23(추선화관) (062) 364-7567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 1/(0631) 2-7280
순천분소/순천시장전동 51-3/(0661) 2-7892
여수분소/여수시관동 435/(065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7285번지/ (053) 4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 96-70/(0562) 74-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 9-1/(055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원광동 356-2/(0546) 52-7903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 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 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 470-17/(0572) 2-4566
문경분소/문경시정촌동 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 585-6/(0522) 74-8836 74-2555
진주분소/진주시본정동 7-20/(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충주시서호동 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 25B-17L/(0594) 2-3155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내일동 67-1/(0527) 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 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3/(0523) 4-2669
거제분소/거제군신원읍고현리 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 1289-6/(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 425-1/(0642) 62-3920, 3322



建設技術管理法問題 本人 責任下 우리主張 貫徹

오늘 역대 會長님과 代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건축사협회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李圭孝 건설부장관님을 비롯하여 대한건축학회 李光魯 회장님, 한국건축가협회 劉熙俊 회장님, 그리고 우리 협회와의 友好增進을 위하여 멀리 일본에서 오신 일본 건축사연합회 고니시 미사키 부회장 일행과 내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협회는 올해로 창립된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협회로 성장된 것임을 되새기면서, 본인은 앞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專心全力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그 어느때보다도 협회나 회원 모두에게 어려운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업무의 受注方法이 公正去來次元에서 시비의 대상에 올라야 했는가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건축사의 고유 업무인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업무 영역이 다른 기술분야에 의하여 浸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의 부분 조항과 관련한, 일부 회원들의 집단적인 抗議나 異見提示는 우리 건축사의 업무 위축을 염려하는 衷情에서 발로된 것이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과 우리 건축사의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建設部長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설기술관리법 施行令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때, 건축물에 대한 감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反映하기로 한 바에 따라 현재 본협회와 관계기관간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주장을 기필코 달성할 것이며 이에대한 책임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인 본인이 책임을 질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工事監理의 制度改善 監理費의 現實化를 포함한 건축사의 業務 및 報酬規定의 現實化, 建築士 所得標準率의 合理的인 調整, 건축사 특별 진형을 포함한 건축사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건의 등 많은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무파이 뉴라운드」에 의하여, 國際社會로 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自律化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對處方案을 예의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첩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원여러분께서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회원이 一絲不亂한 단결력을 과시하여야 할 때임을 銘心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여러분 오늘의 이 총회는 민주화 바람이 힘차게 불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地方自治制 실시의 막을 올리려고 하는 때에 한발 앞서 우리 협회의 聯合會 制度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獨立豫算體制 실현의 첫발을 내딛는 총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총회를 기점으로 이제부터 회원여러분이 직접 소속 지부의 進路를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지난 몇년간 꾸준히 준비해 오던 대망의 支部 獨立豫算制를 出帆시키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자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88년도에는 연합회제도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될 것이며 그에 따른 協會組織機構의 大幅的인 개편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는 88년은 국가적으로는 세기의 祭典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협회로서는 아세아지역 건축사 단체의 연합기구인 아카시아 總會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건축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카시아 총회는 본협회창립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우리 모든 회원들이 舍心協力하여 처음

맞이하는 국제행사가 훌륭하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29 선언은 민주화 불결이 급진전되는 가운데 합의개헌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 시대적 요구인 民主化에 우리도 적극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였습니다.

우리 건축사는 社會指導者의인 專門人으로서의 안정 속에서 우리 업계를 펴나가야 될 것이며 이에 맞는 바람직한 민주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조물주를 영어로 〈The Great Architect〉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건축사는 造形藝術 創作人으로서의 肯持와 自負를 가지고 스스로 명예와 품위를 保全하고 이 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자랑스러운 건축사상을 정립해 내는데 한층 노력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협회의 再跳躍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11월 27일

會 長 安 箕 泰



建設技術管理法上 施工監理制度, 關聯法 立法 趣旨反映

존경하는 安箕泰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2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致辭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史上 類例가 없었던 災害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

돌이켜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대동기였던 60년대에 건축사의 自助的 協力體로서 설립된
이래 20여년의 연륜을 헤아리는 오늘에는 2천8백여 회원을
擁護한 큰 전문단체로 성장하였고 그동안 기술수준 향상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건축사상의 정립과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하여 왔을뿐 아니라 내년에는 아시아地域
建築士協議會 서울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제
건축제에서의 지위향상등 국위선양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激勵와 致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여러분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경제는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등 선진국을 향한 노력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온
결과 이제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目前에 두게 되었으며
이와더불어 정치적인 면에서도 6.29선언을 시발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정치발전의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새 헌법이 확정된바 있으며 명년에는 민주정치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평화적 政府移讓을 이루어 모든
국민이 새 정부와 더불어 힘을 모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전세계에堂堂하게 펼쳐보이게
될 감격스러운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민족도약의 전기가 되는 올림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것이 세계인의 관심어린 視線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특히 건축물은 우리 文化水準을 대표하게 되고 세계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건축문화창조자인
건축사여러분의 역할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영광이 실현될 날이 目前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左傾容共
노력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폭력·방화등의
과격행동 등을 일삼는가 하면 공공연히 북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우리는 이에 맞설 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결국 그 모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은 건축사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무철한 국가관을 갖고 안정기조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건축사여러분!

본인이 건설부장관의 중책을 맡은지 어언 2년이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건축문화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건축계는 오늘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건축사는 어떠한 자세로써 전환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그동안 사색하고 행동해 오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오늘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뜨거운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건축사 여러분은 우리나라 당대의 건축문화 발전의 선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그 시대 그 사회의 反射文化로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값진 유산이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조상의 열이 살아야 하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어야 하는 우리시대의 새 조형문화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의 위치를 굳건히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기술의 혁신을 줄기차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건축설계등 기술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建設技術管理法를 이번에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韓國建設技術研究院을 확대 개편해서 건설기술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사여러분도 이에 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기술을 향상시켜 선진 수준화함으로써 우리의 건축물은 그 규모와 형태를 불구하고 우리의 손으로 설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로 건축사 여러분은 國家百年大計와 연관되는 전문인으로서 타전문인보다 더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식의 확립은 물론이요, 역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또한 어느 부문의 전문업보다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사 여러분은 건축물의 설계감리

과정을 통하여 이 시대 조형문화 창조와 함께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책임과 심판을 나누어 지고 있는 公人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사중에는 이와같은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건축물에 관련되는 불미스러운 문제를 惹起함으로써 아직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어 이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건축사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요, 건축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여러분 중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의 제정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업무가 일부 侵害 내지 萎縮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상의 施工監理制度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정시 建築士法이나 建築法の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사의 고유업무가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건축사여러분!

금년도 벌써 11월말로써 한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사이에 국가적으로 평화적 정권이양과 세계인의 대축제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국가적 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또한 협회로서는 아시아 지역 건축사협의회 서울대회를 앞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사 여러분은 신진민주주의 미래상을 가슴에 품고 그 기반이 되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데 과거 우리 건축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질서잡힌 안정된 사회없이 국민이 원하는 올림픽도 건축사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아세아지역 건축사대회의 성공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安箕泰희장과 임직원 그리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모임이 협회 및 건축계 발전의 값진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이만 치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11월 27일

建設部長官 李圭孝

祝 辞



대독하는 고니시미사키 부회장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2회 정기총회에 초청받아 축사의 말씀을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일 본회 주최 제30회 건축사회 전국대회에 안기때 회장을 비롯하여 4명의 임원께서는 공무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먼거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錦上添花를 이루게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고하던데, 귀 협회와 본회는 20년전부터 우호관계가 있었지만 지난 1985년 3월, 吳雄錫 전임회장, 太田연합회회장간에 의한 兩會의 사이에 日・韓, 建築交流促進에 대해서 覺書を 조인하여 더욱 일층의 교류를 깊이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本日、大韓建築士協會の第22回定期總會にお招きをいただき、ご祝辞を述べる機会を得ましたことを光榮に存じております。

まず以て、去る10月2日、本会主催による第30回建築士會全國大会には、安會長を始めとする4名の役員の皆様には、公務ご多用の折又遠路のところご臨席いただき、錦上添花を添えて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對し、衷心よりお礼申し上げます。

顧みまするに、貴協會と本会とは20年前より友好關係にありましたが、去る1985年3月、吳協會會長・太田連合會會長による兩會の間に日韓建築交流促進について覺書を調印し、より一層の交流を深め、現在に至っております。

覺書の目的にあるように、兩國の建築士相互間の理解及び友誼増進、相互技術の交流と情報資料の交換等、兩會がますます緊密な親善關係を深め、相互に訪問を重ね、技術と情報の交換を通じて建築士の社会的地位の向上並びに建築文化發展のために尽く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今日、世界各國ともに建築界の躍進はめざましく、情報の交流により日ごとに文化的な建築物を創作し、建築文化發展のために寄与しております。特に

각서의 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양국의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 및 우의증진, 상호기술의 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 등 양회가 더욱더 긴밀한 친선관계를 깊이하여 상호의 방문을 자주하여 기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건축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각국 전부가 건축계의 약진이 눈부시고 정보의 교류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문화적인 건축물을 창작하여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이며 문화면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양국 공히 각각의 고유한 건축양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많은 공통성을 갖고 더불어 발전하여 왔습니다.

한편 양회 내부에는 여러가지 제문제가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지만 건축사로서의 입장은 같아서 기술교류 등 그때 그때의 제문제에 대해 토의를 자주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더 우호를 깊게 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날 TV 혹은 신문 등에서는 귀국의 건축현황이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귀국을 방문하여 새롭게 도시재개발 대단지 및 산업시설의 건설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정비, 때맞추어 올림픽을 위한 제시설의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귀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대성공과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과 임원,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합니다.

日本建築士會連合會
會 長 太田和夫

韓國と日本は隣國であり、文化面においても緊密な關係にあります。兩國ともそれに固有な建築様式には特徴もありますが、多くの共通性をもって共に発展して参りました。

一方、兩會とも内部にはいろいろと諸問題を抱え、これに対応することが急務であると思ひますが、建築士としての立場は同じであり、技術・交流等交流等その時々諸問題につき話し合いを重ね、國境を超えてますます友好を深めていくことを念願いたしております。

昨今、テレビあるいは新聞等で貴國の建築事情が報道されておりますが、本日、貴國を訪問し改めて都市再開発、大団地並びに産業施設の建設等による住環境の整備、併せてオリンピックのため諸施設の建築等多くの分野で輝かしい發展を遂げられておりますことに敬意を表するものであ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明年貴國で開催されますオリンピックの大成功と併せて大韓建築士協會のますますのご發展、並びに役員、會員の皆様方のご健康をお祈り申し上げて祝辞といたします。

日本建築士會連合會 會長 太田和夫



국립청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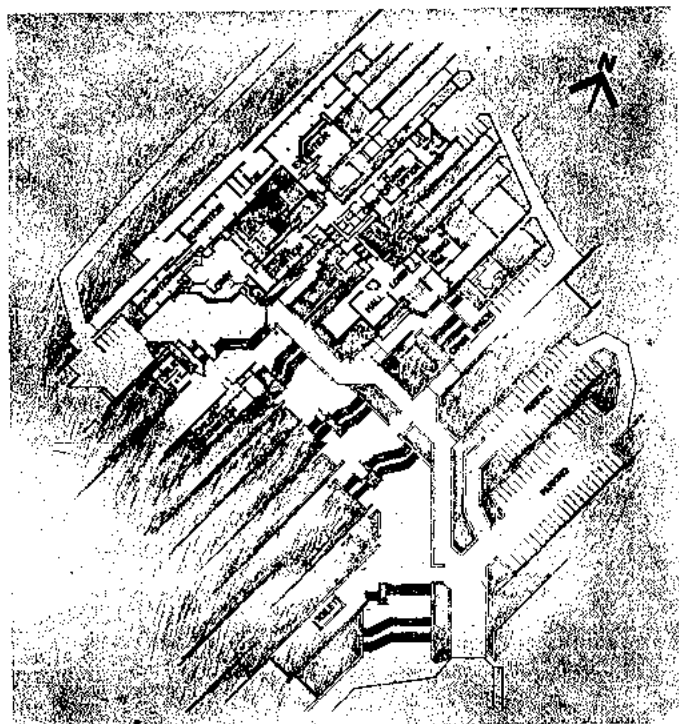
Cheongju National Museum

Designed by Kim, Soo-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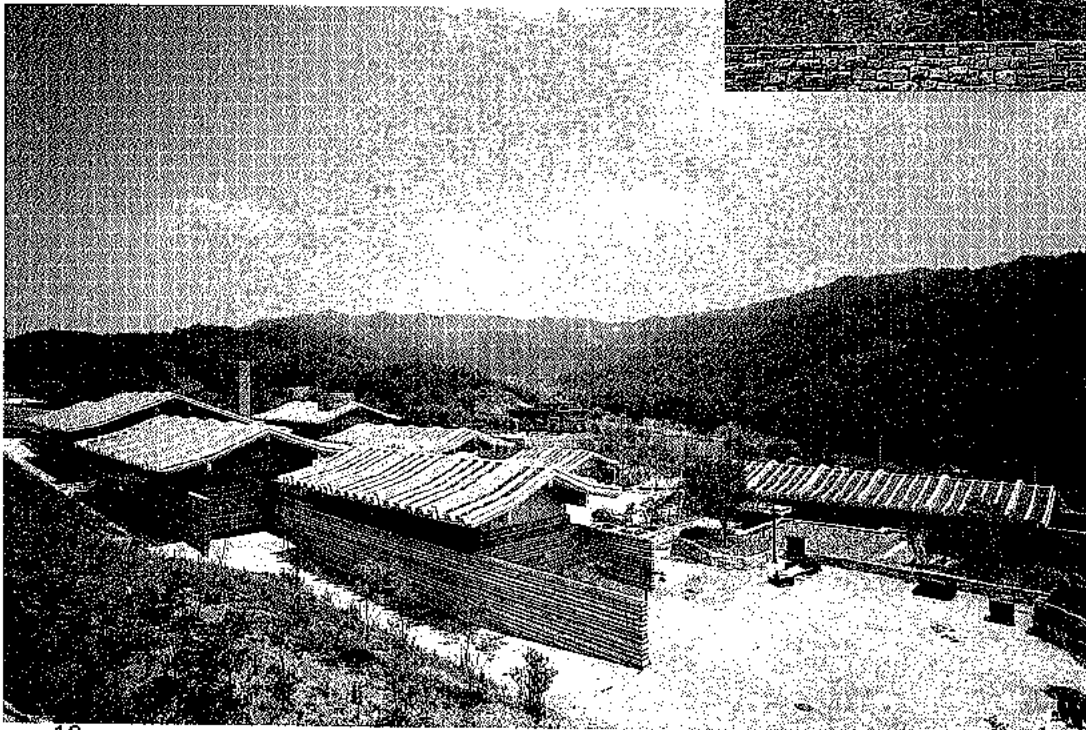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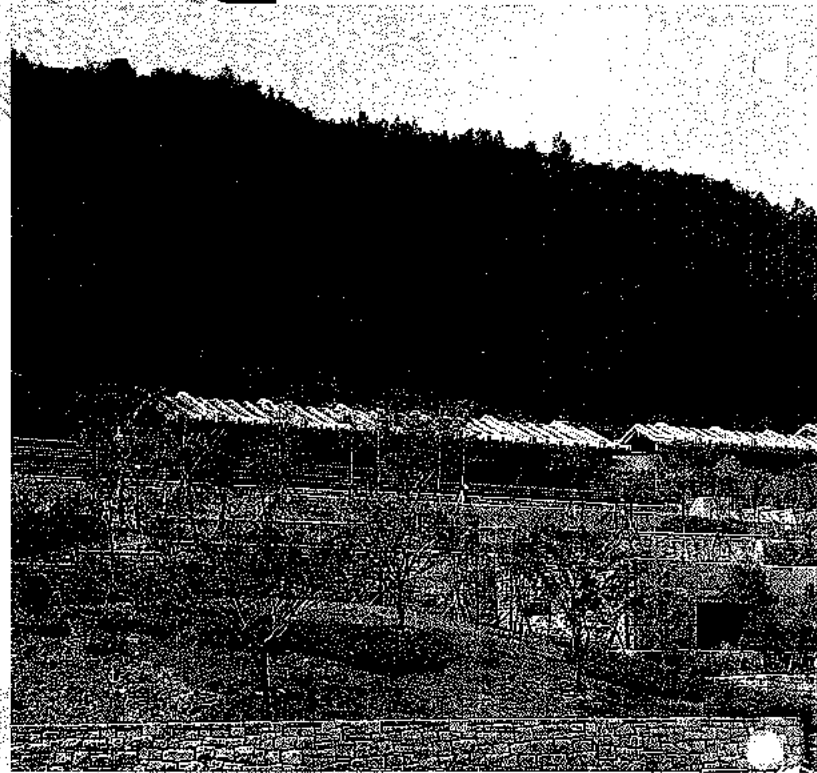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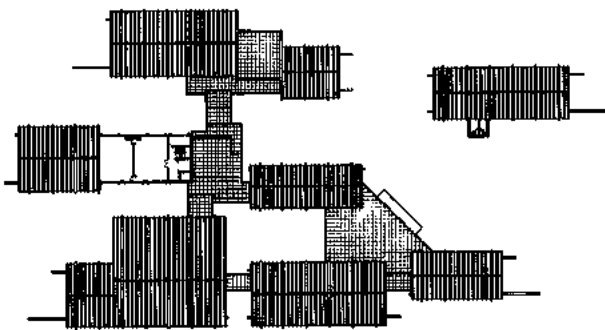
金壽根 / (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원사동 219 / 763-0771~4

- 설계담당 / 송호상
-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명암동 산8번지외
- 대지면적 / 41, 204 평
- 계획대지 / 12, 000 평
- 건축면적 / 1, 414. 9 평
- 건축연면적 / 1, 677. 6 평
- 조경면적 / 10, 800 평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P. C 판넬
- 규모 / 전시실 - 1 층
 객담고 - 지하1 층 및 중 2 층
 사무실 - 지하1 층, 지상1, 2 층
- 주요외부마감재 / 벽 - P. C. 판넬 본타일
 지붕 - 한식기와 임히기
 바닥 - 화강석갈기
 전시실 - 바닥 : 암스트롱타일 (호비 / 화강석)
 벽 : 페인트 몰탈
 천정 : 스틸그릴
- 부대시설 / 관장사택 (50여평), 매표소, 수위실, 담장, 연못 (30여평) 등



배치 및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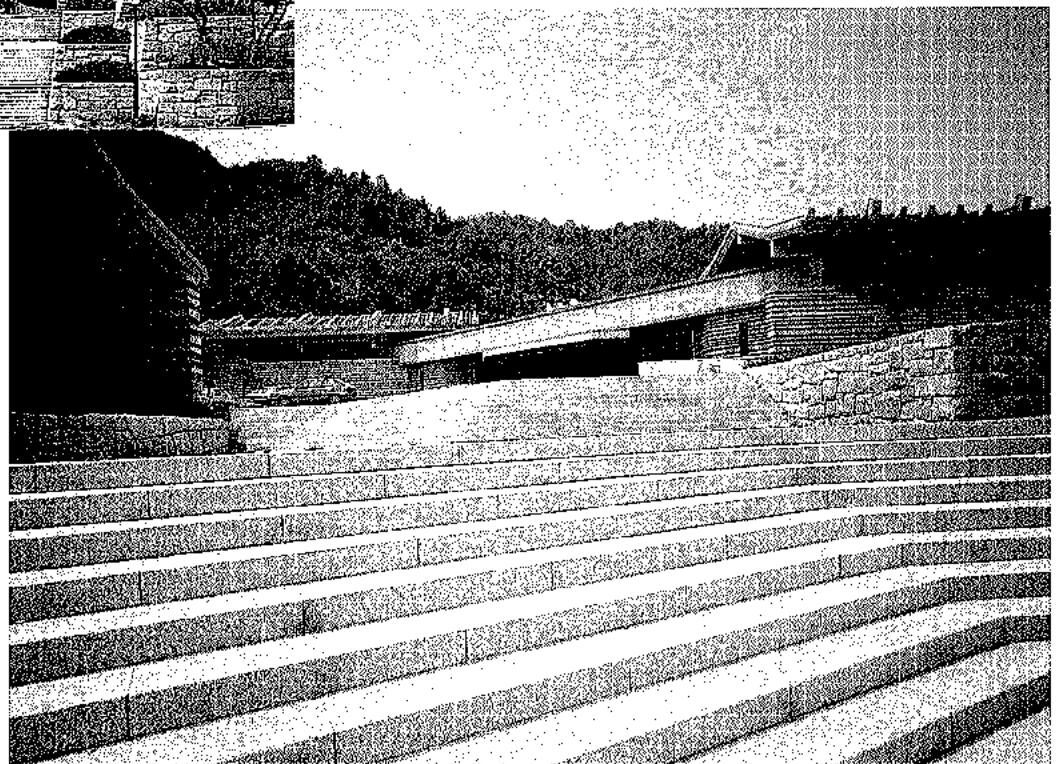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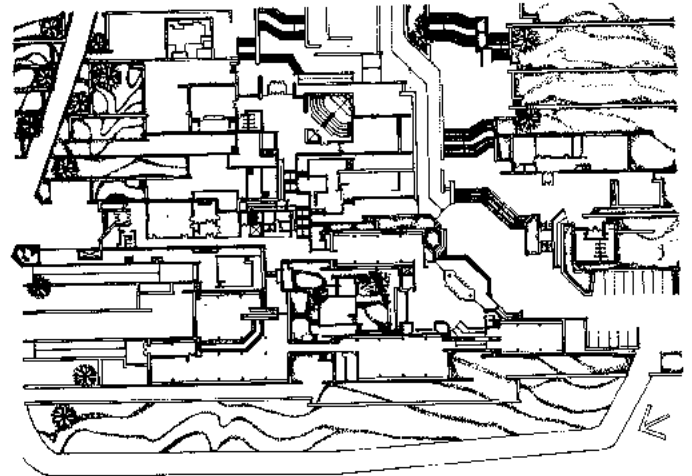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사진 : 임정의

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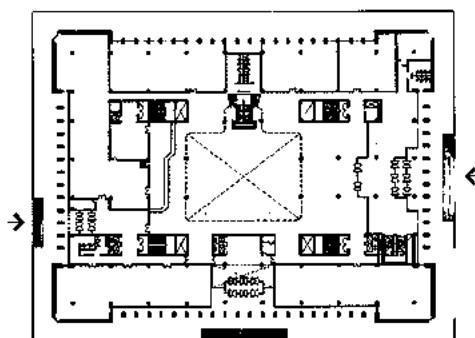
Library of National Assembly

Designed by Lee, Se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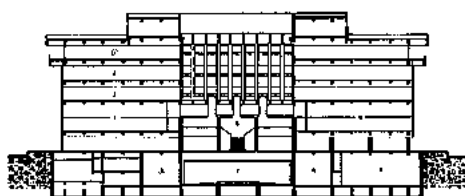
李丞雨 / (주) 종합건축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9-1 / 765-0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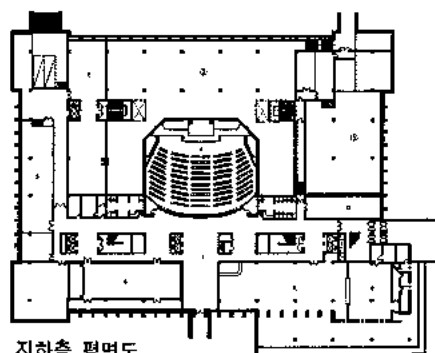
- 대지위치 / 현 국회의사당 대지내
- 건축면적 / 5,517.6㎡
- 연면적 / 25,776.3㎡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욕출지붕은 절골트라스 위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외부마감 / 발색알미늄 커튼월에 22mm 열선흡수패아그래스 30두께
- 화장석 박판바나 마감 건축물아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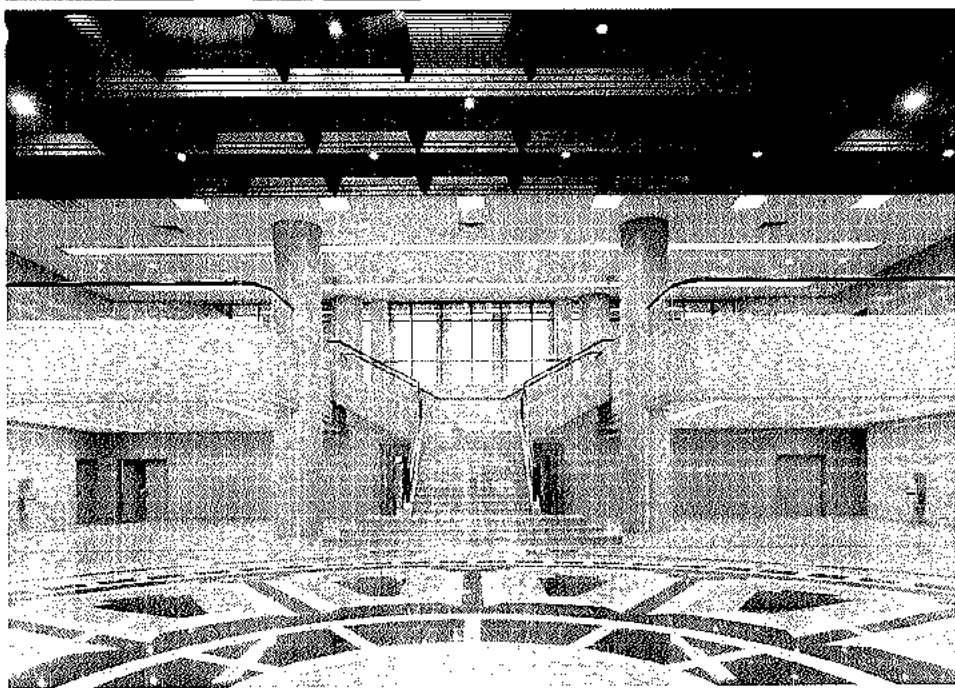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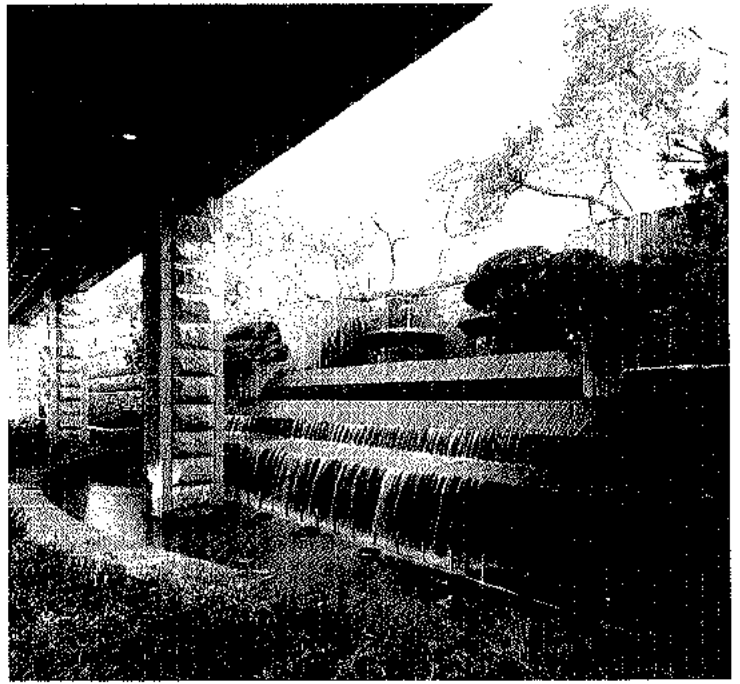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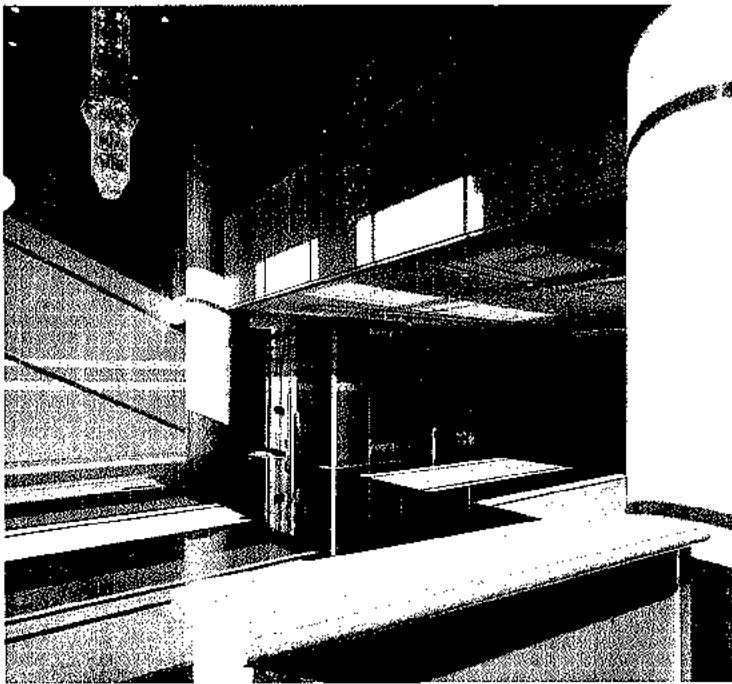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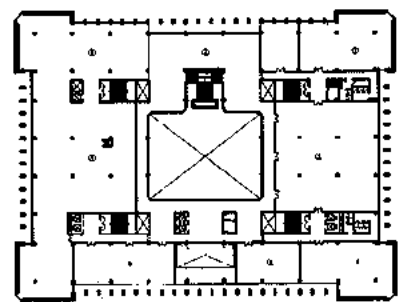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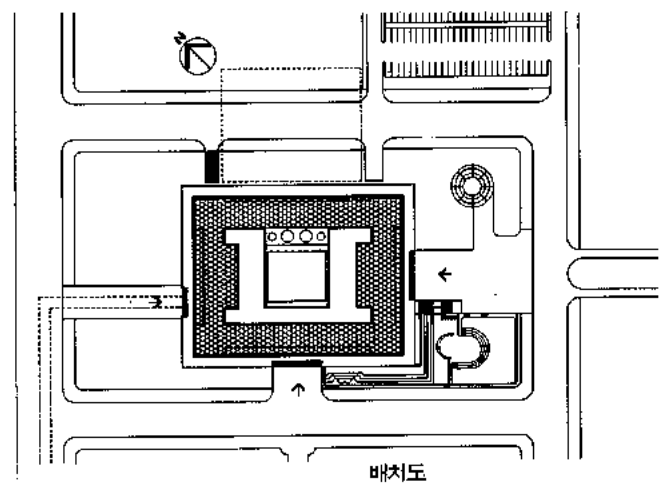
- 1. 포장 및 교통서고
- 2. 기계실 상부
- 3. 전기실 상부
- 4. 주차
- 5. 입선 기동실
- 6. 회의실
- 7. 복
- 8. 식당
- 9. 화장
- 10. 전동공관실



1. 입장 계고
2. 브레드룸
3. 시청각자료실
4. 서고
5. 회의실
6. 강의자료실
7. 회의실
8. 컴퓨터실



2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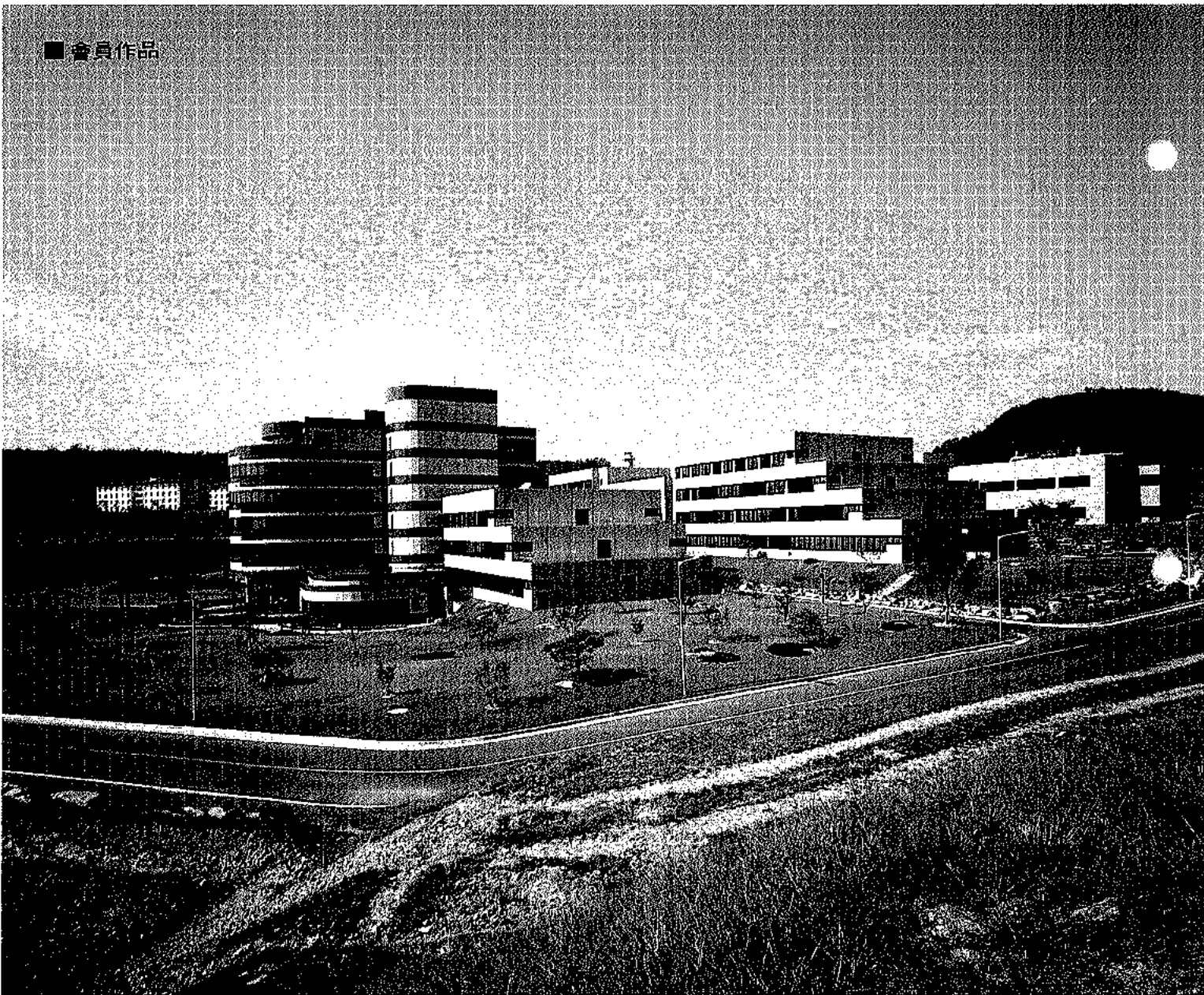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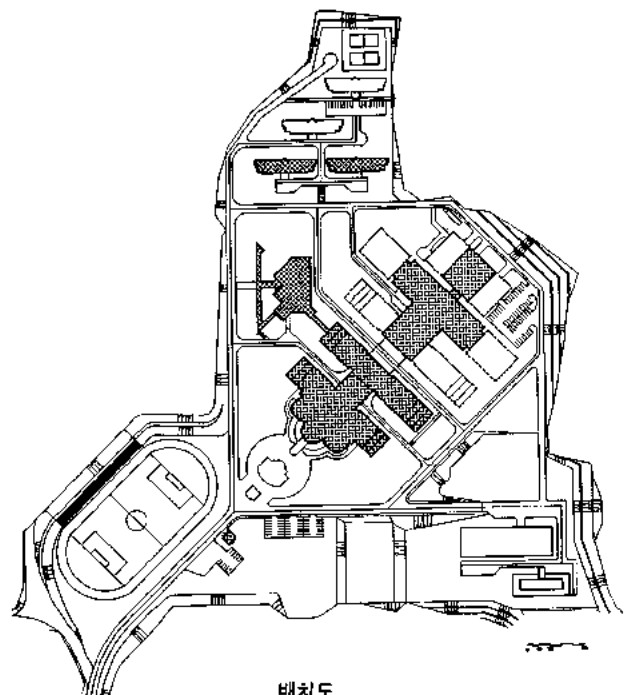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삼성종합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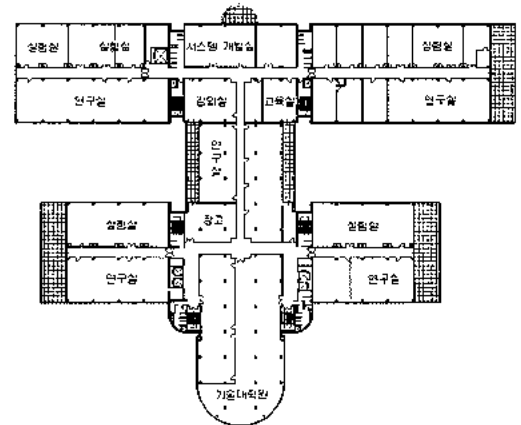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Designed by Kim, Chang-Soo & Park, Seung

金昌壽+朴昇 / (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 783-5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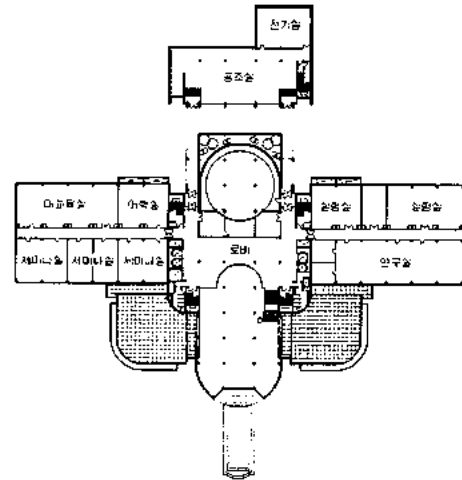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 대지면적 / 169,273㎡
- 건축면적 / 15,438㎡
- 연면적 / 46,586㎡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시설규모 / 연구관리동 - 지상 7층 면적 : 24,364㎡
실험동 - 지상 2층, 지하 1층 면적 : 11,645㎡
식당 및 용역동 - 지상 2층, 지하 1층 면적 : 3,599㎡
가숙사 - 지상 5층, 지하 1층 면적 : 6,794㎡
부속시설 - 면적 : 184㎡
- 건물높이 / 33.2m
- 용적률 / 24.7%
- 건폐율 / 9%
- 주요 외장재료 / 회강석 (Carmen Red + 괴산석), 외장타일, 스프레이타일
- 녹지율 / 18%
- 설계기간 / 86.2~86.9
- 준공 / 19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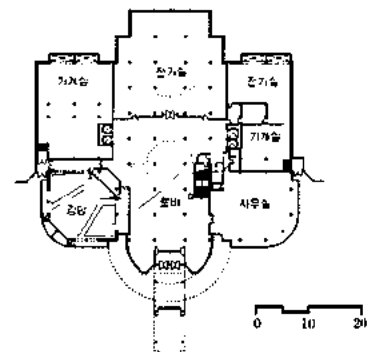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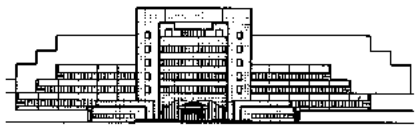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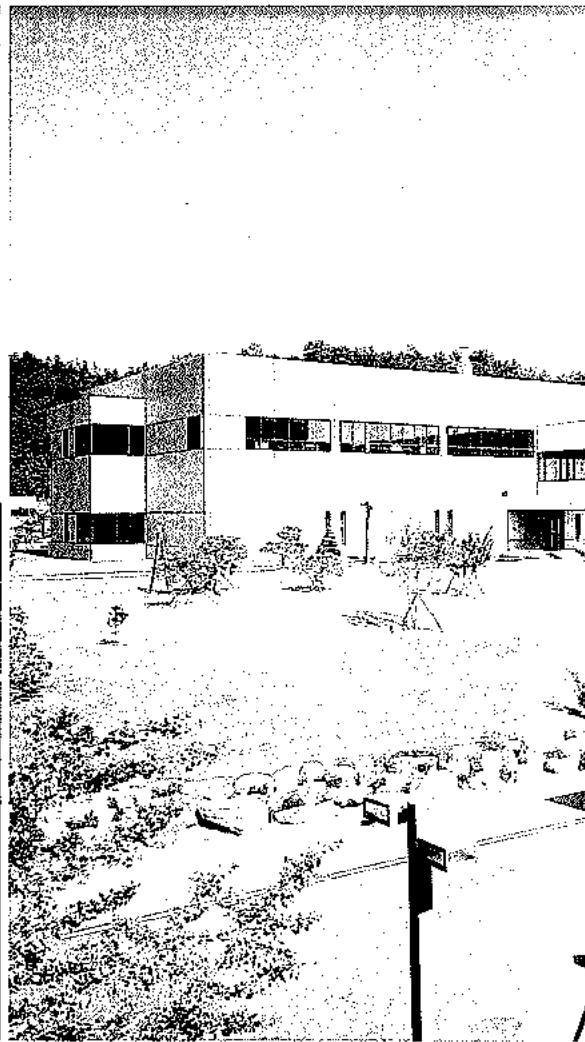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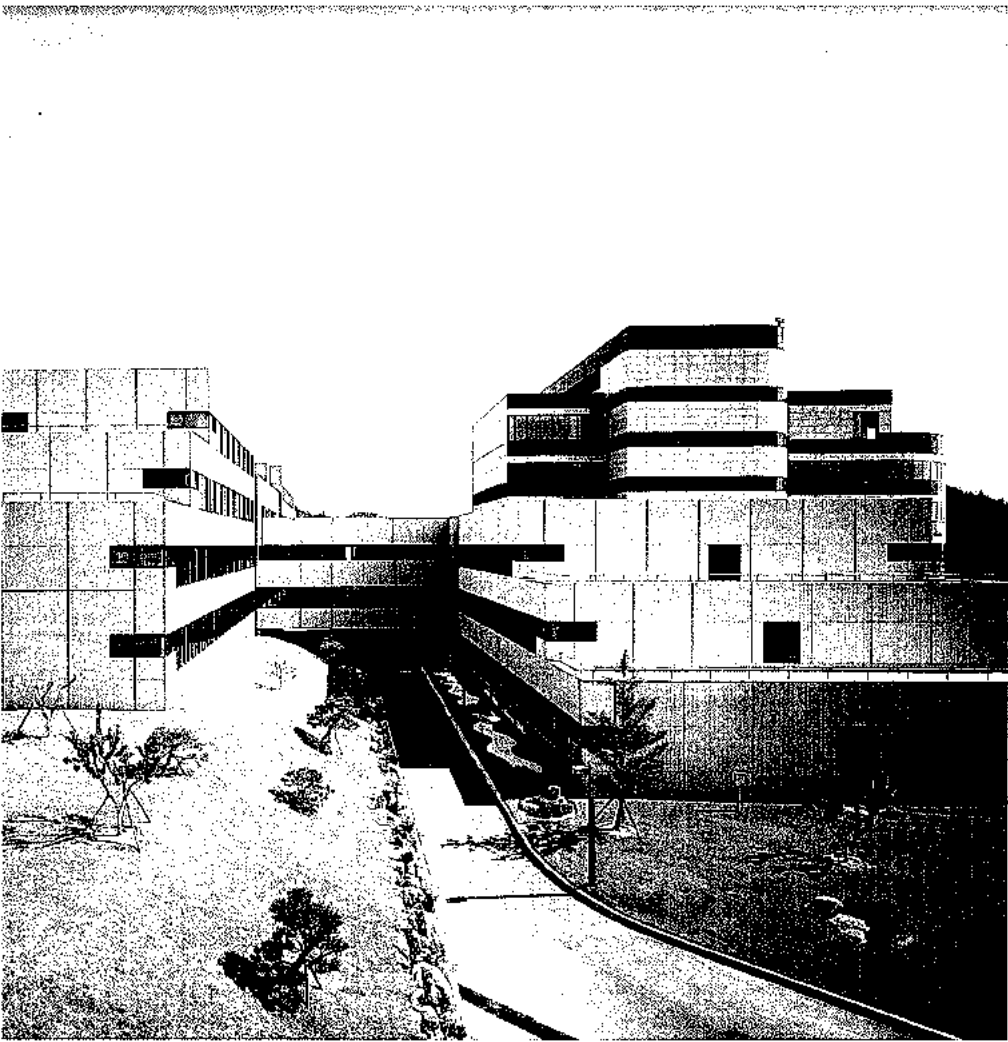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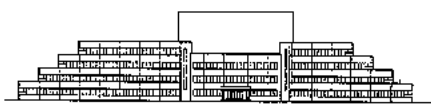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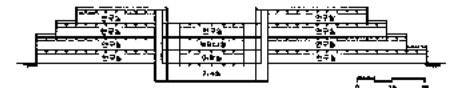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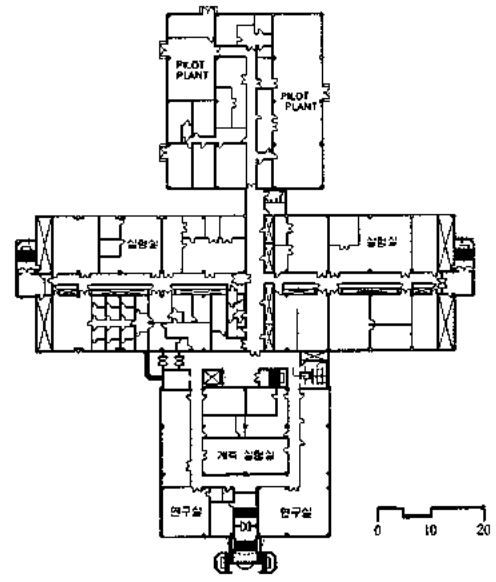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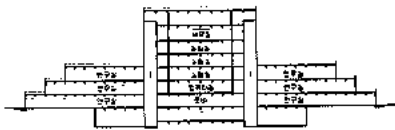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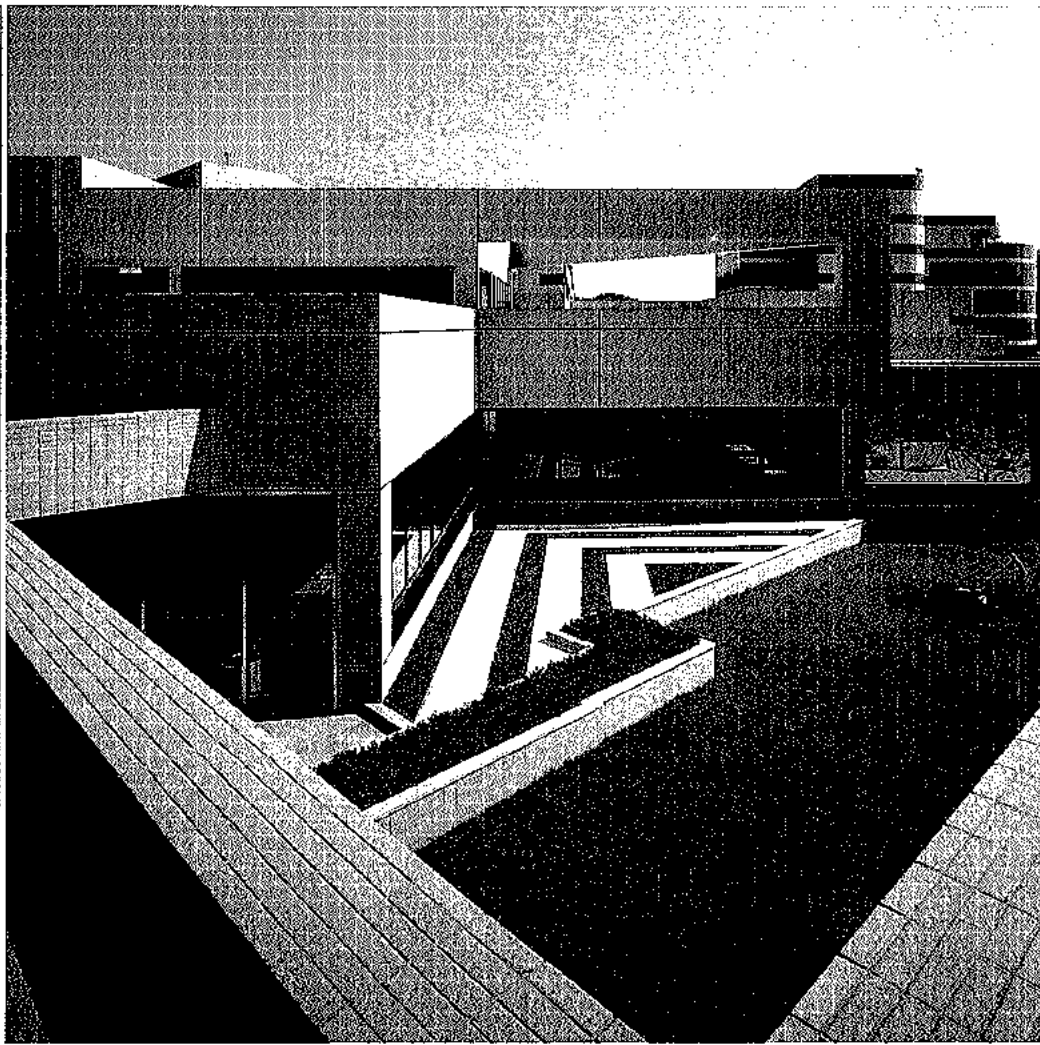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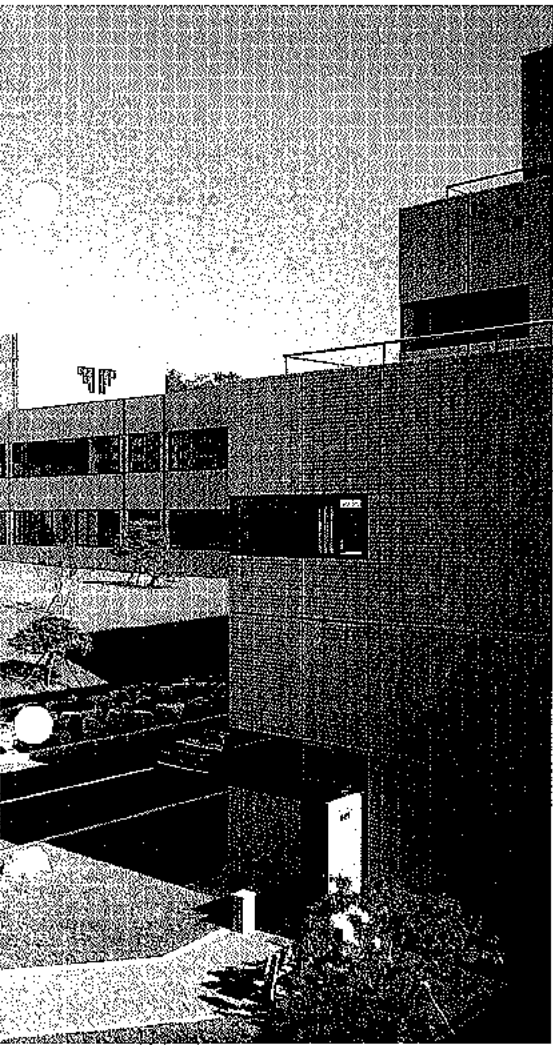
배면도



동서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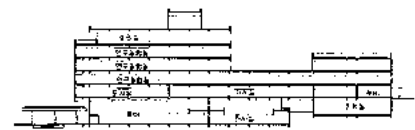
실험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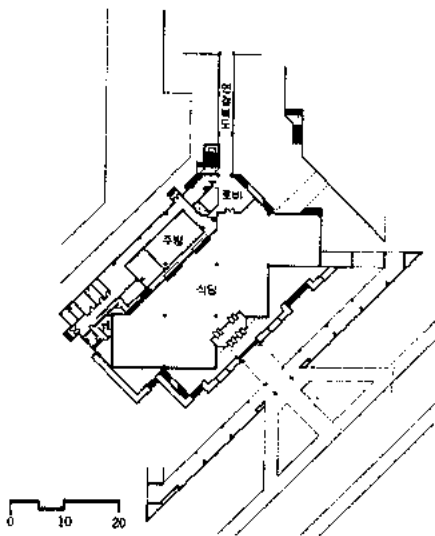
동서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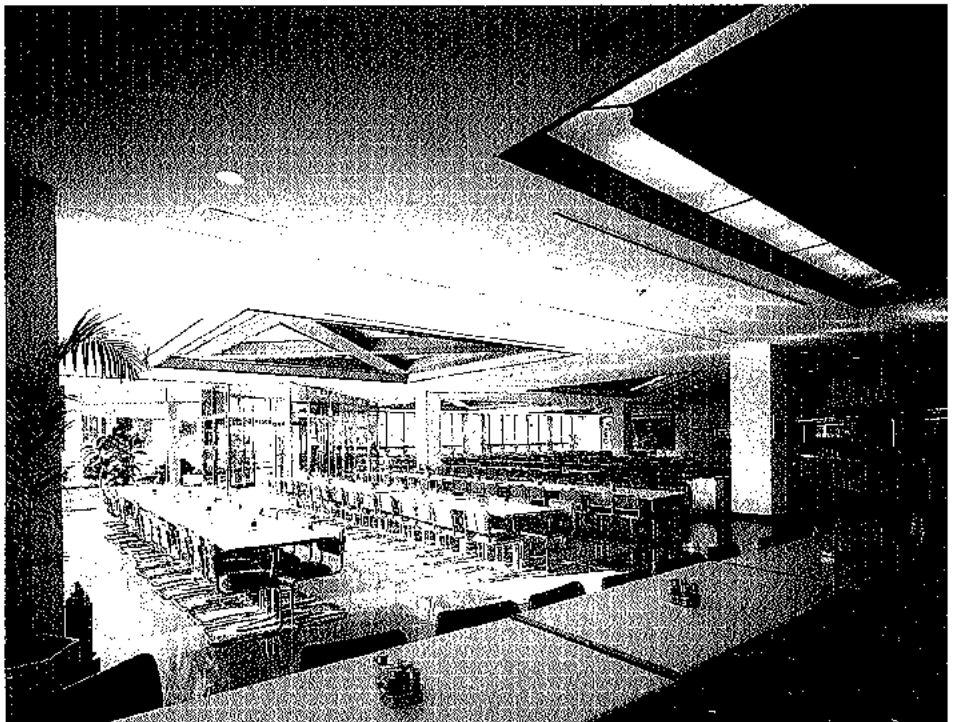
남북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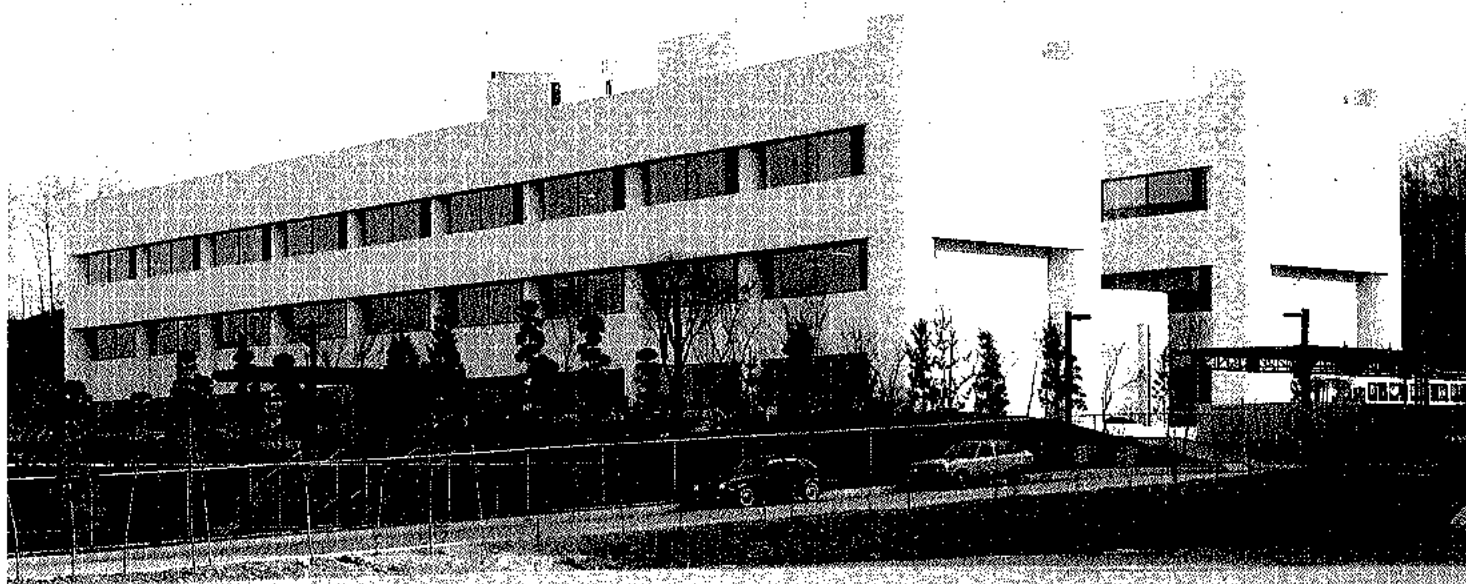


남북종단면도



식당 1층 평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Designed by Woo, Si-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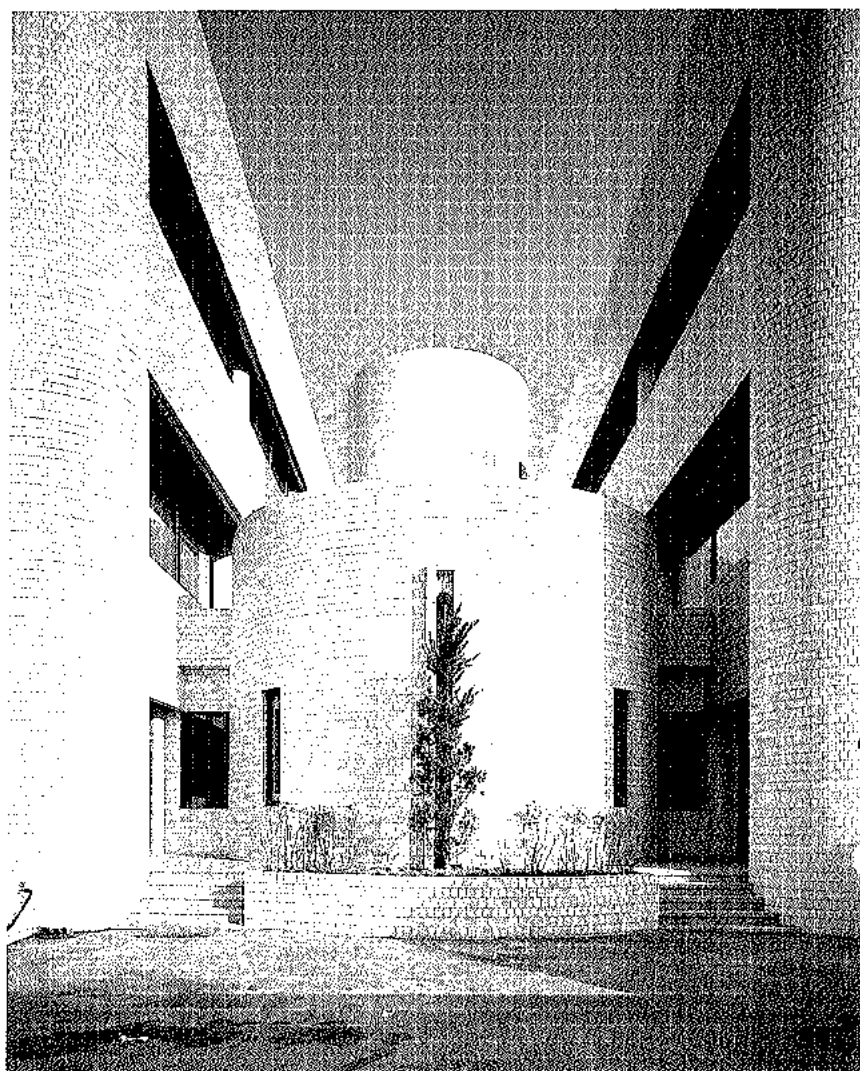
禹時庸 / 건축사사무소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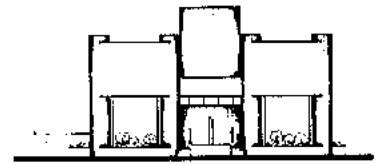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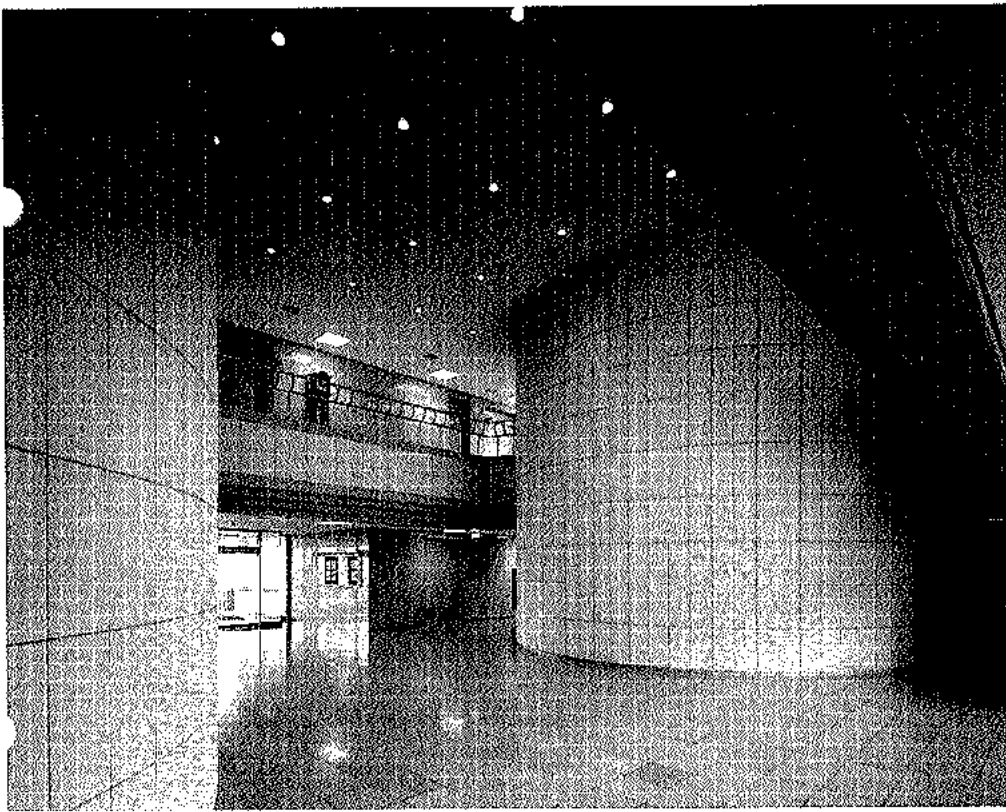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3-4 / 556-7781

-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 대지면적 / 32,096㎡
- 건축면적 / 3,526㎡
- 연면적 / 7,163㎡
- 수용시설 / 본관(연구동), 부검동, 식당동, 폐수처리동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외부마감 / 자기질타일 + 북종유리
- 설계일자 / 1985. 7
- 착공일자 / 1985. 10
- 준공일자 / 198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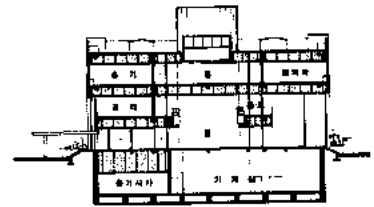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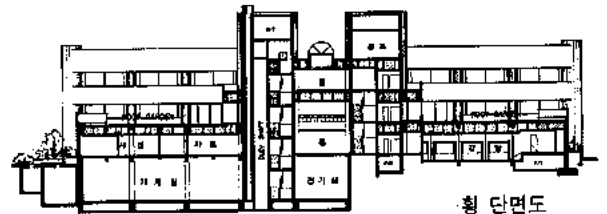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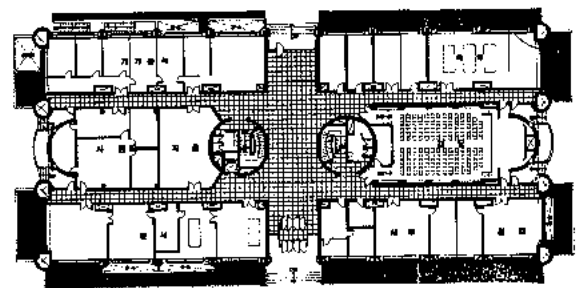
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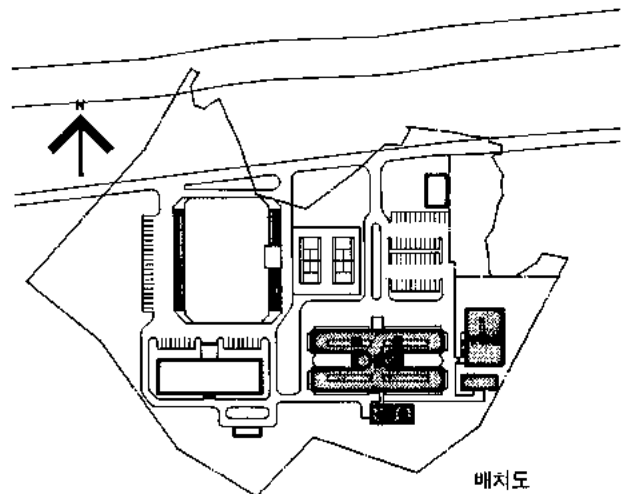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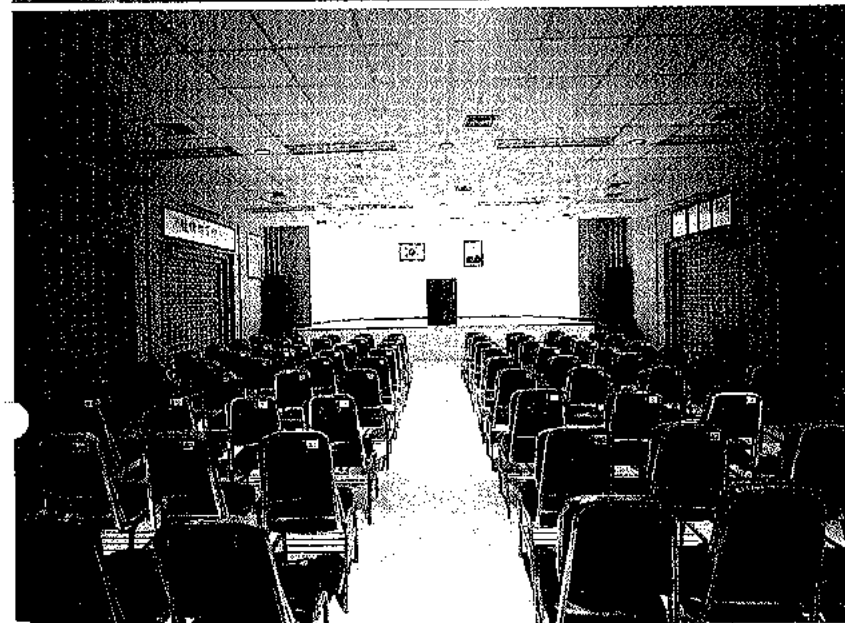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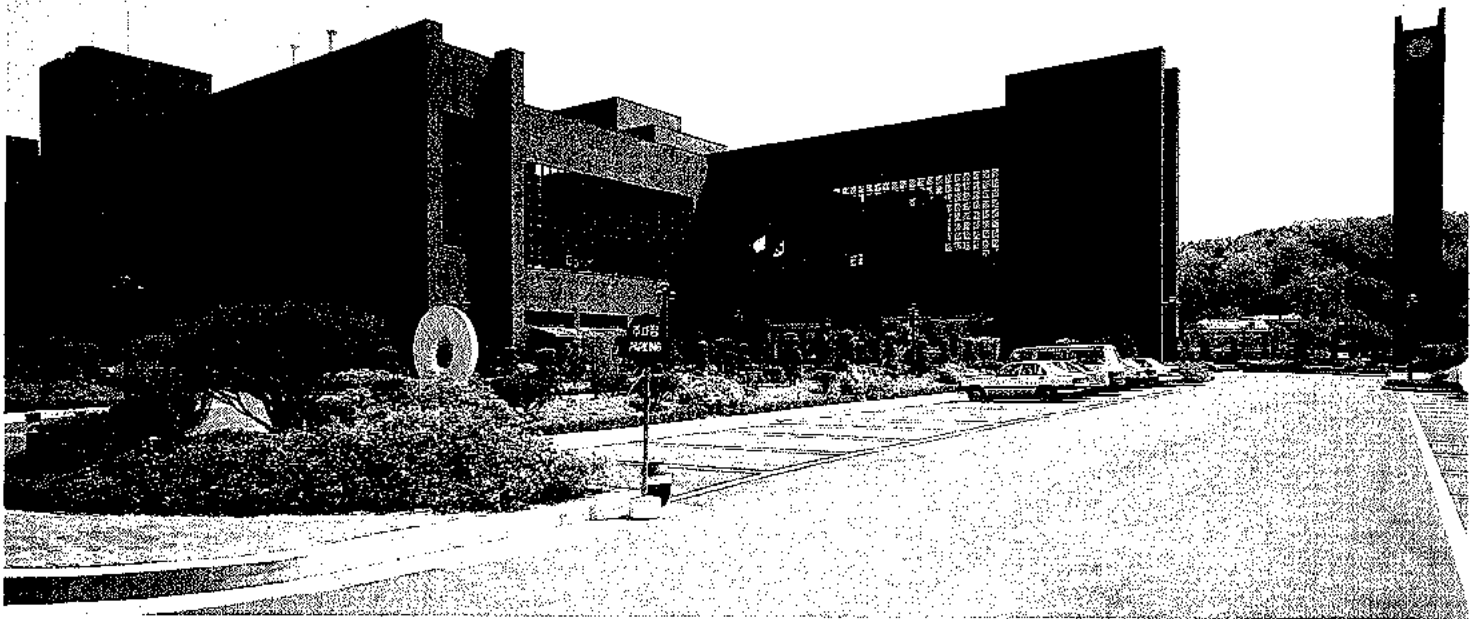
횡 단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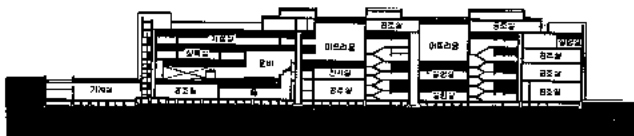
(주) 금성중앙연구소

Gold Star Central Research Laboratory
Designed by Group-3 Architects Association Inc.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 / 734-0161

- 대지면적 / 34,876㎡
- 건축면적 / 6,938.4㎡
- 연면적 / 32,421.4㎡
- 용도 / 연구소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외장 / 붉은벽돌, 열선반사 복층유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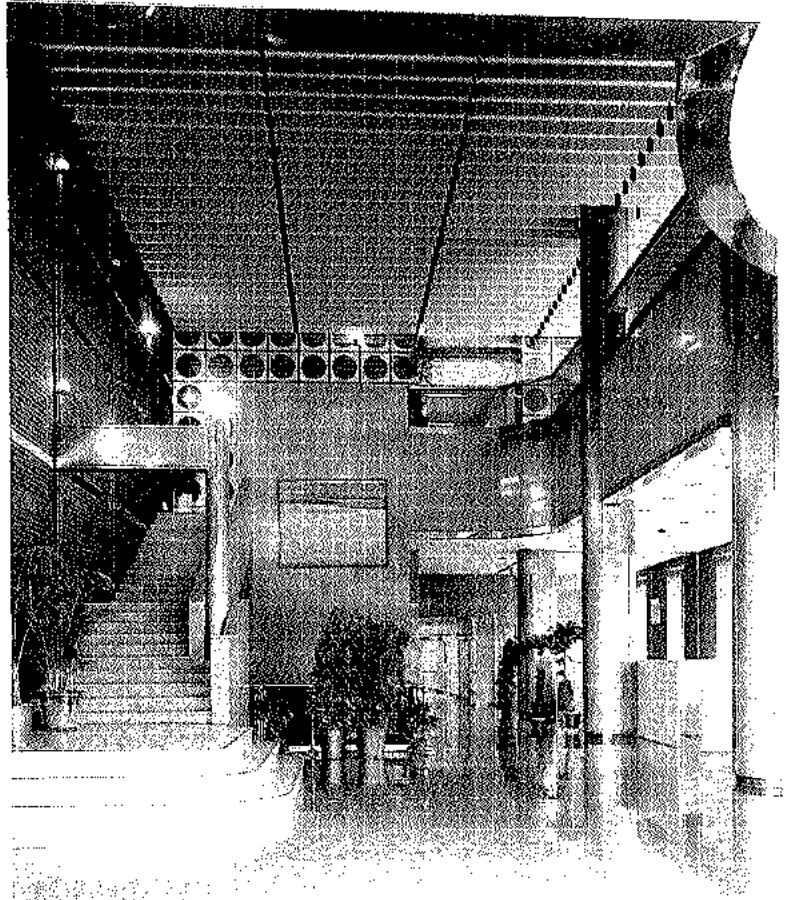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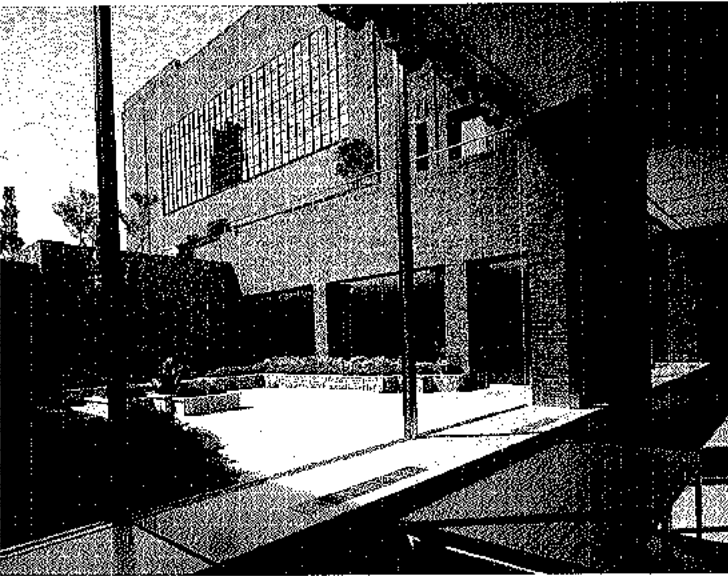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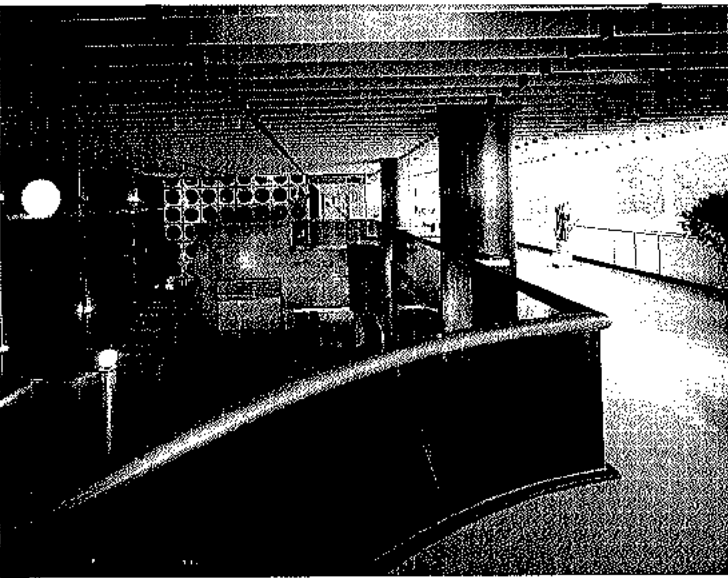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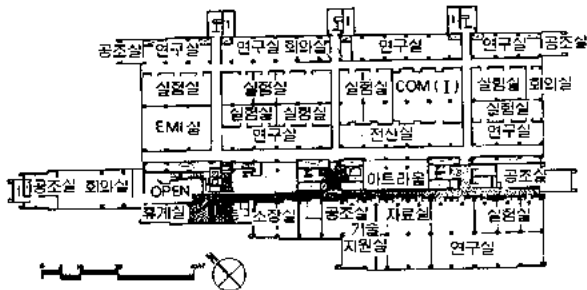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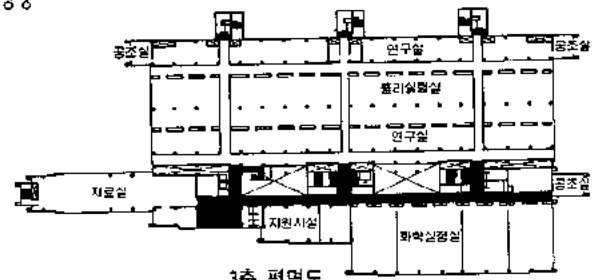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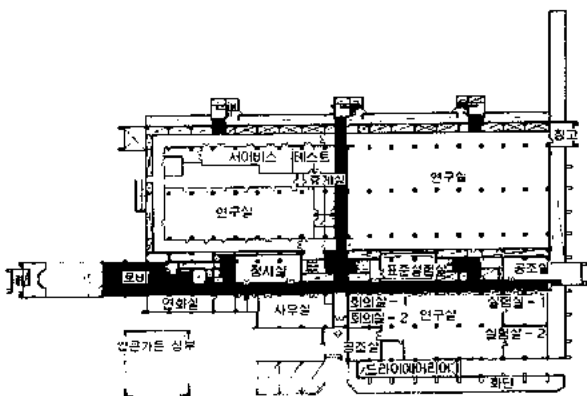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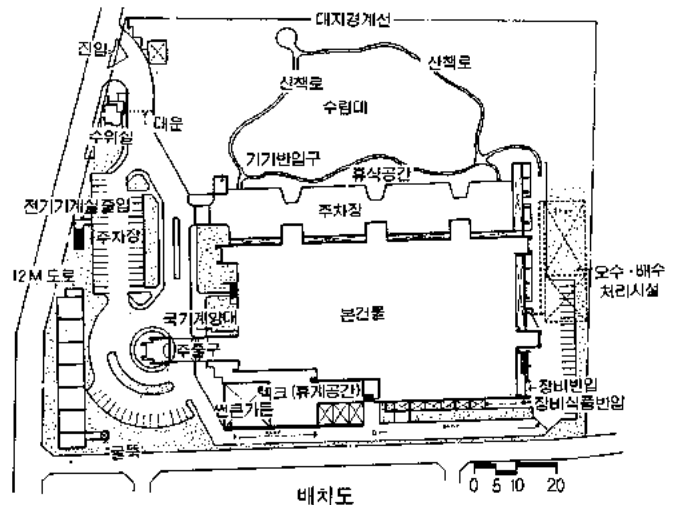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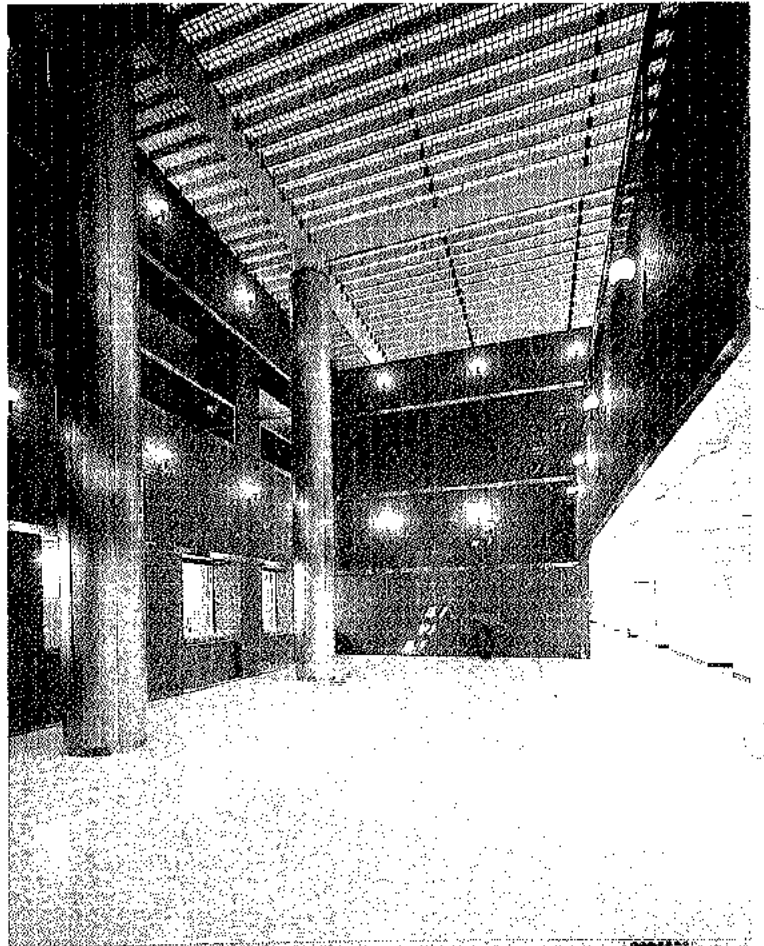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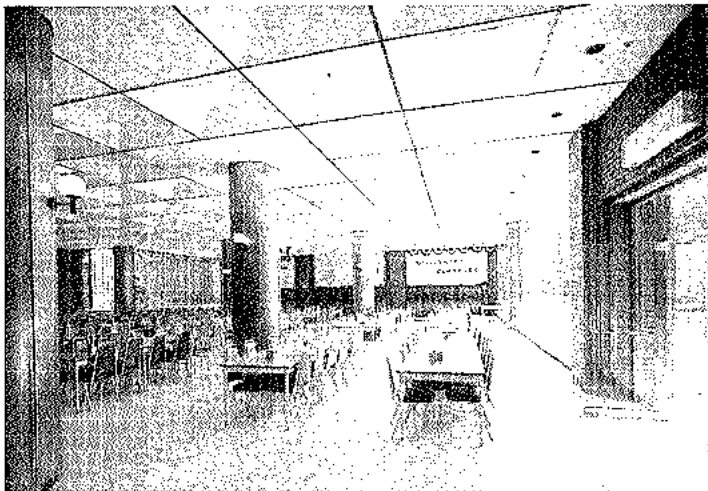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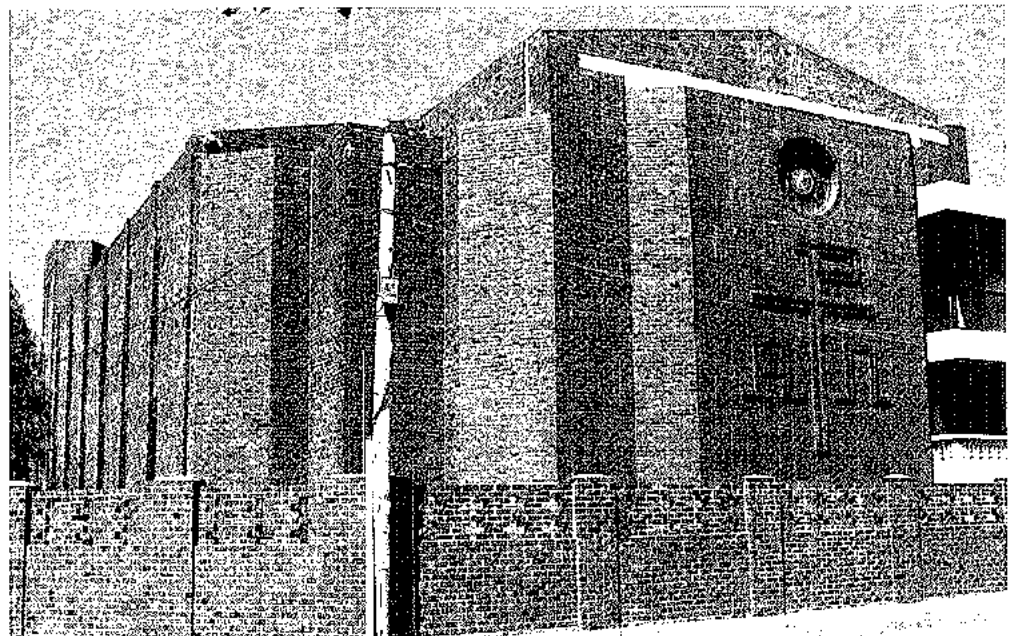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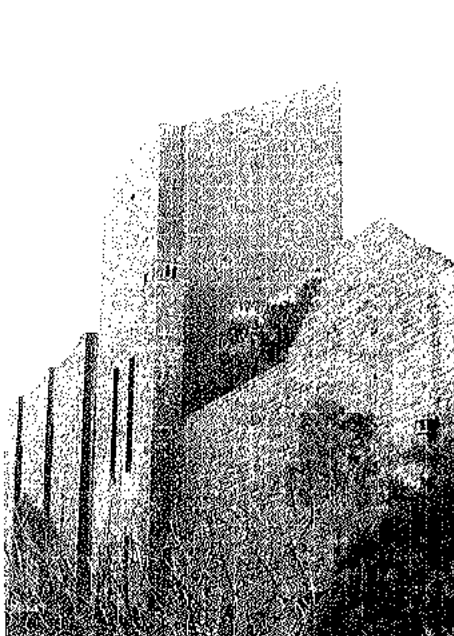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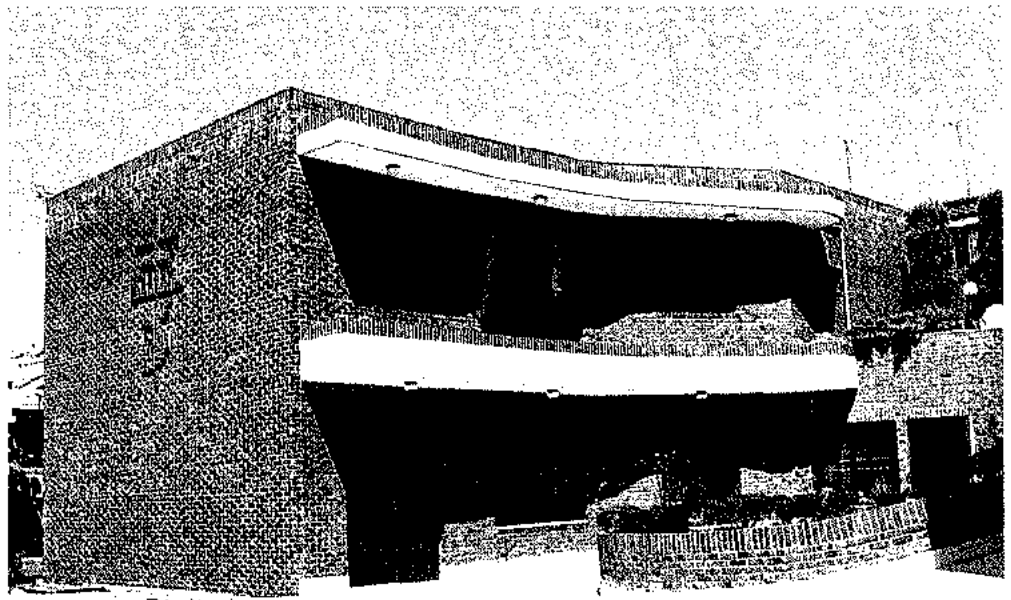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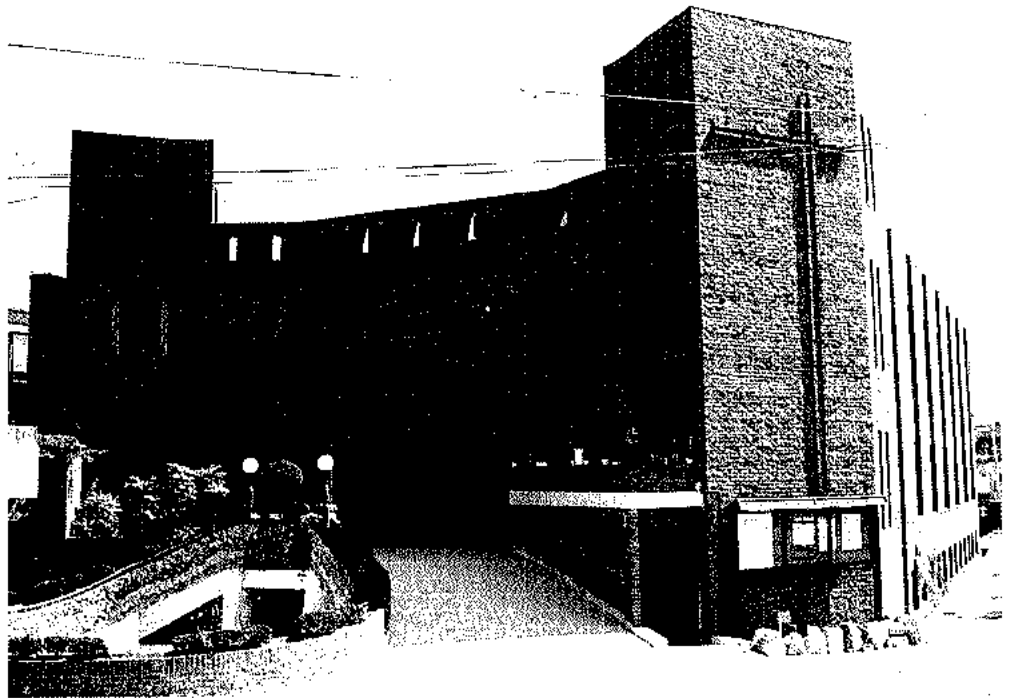
안양 석수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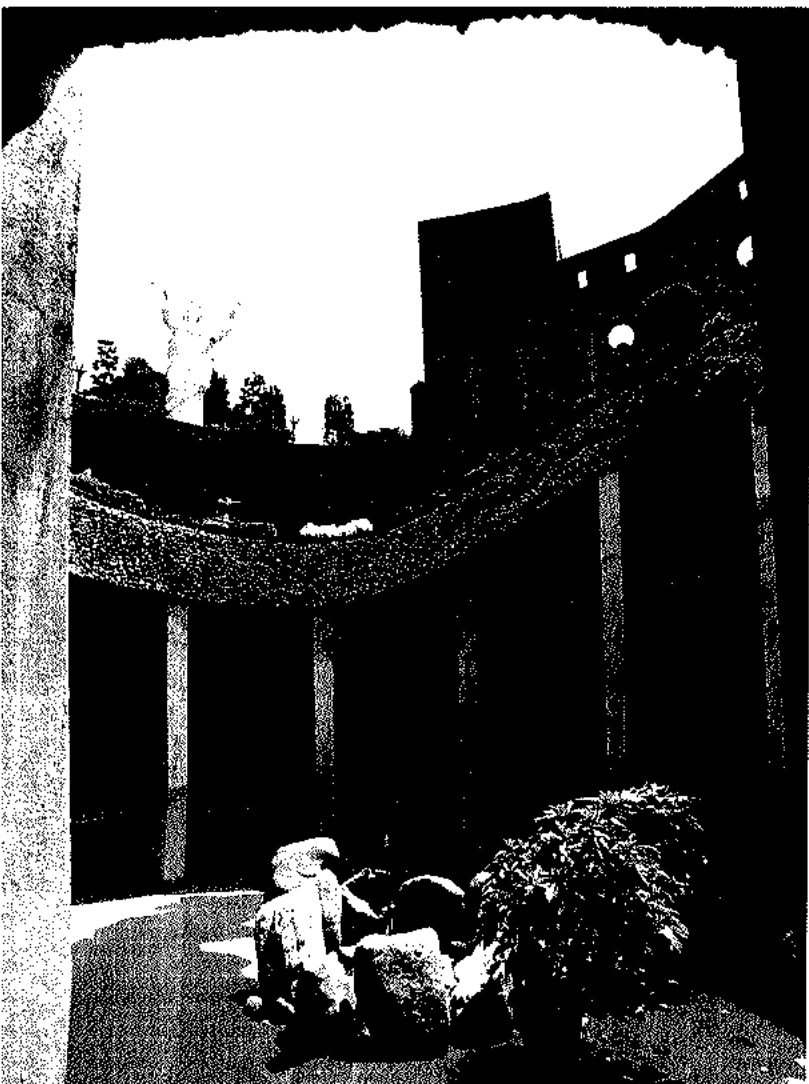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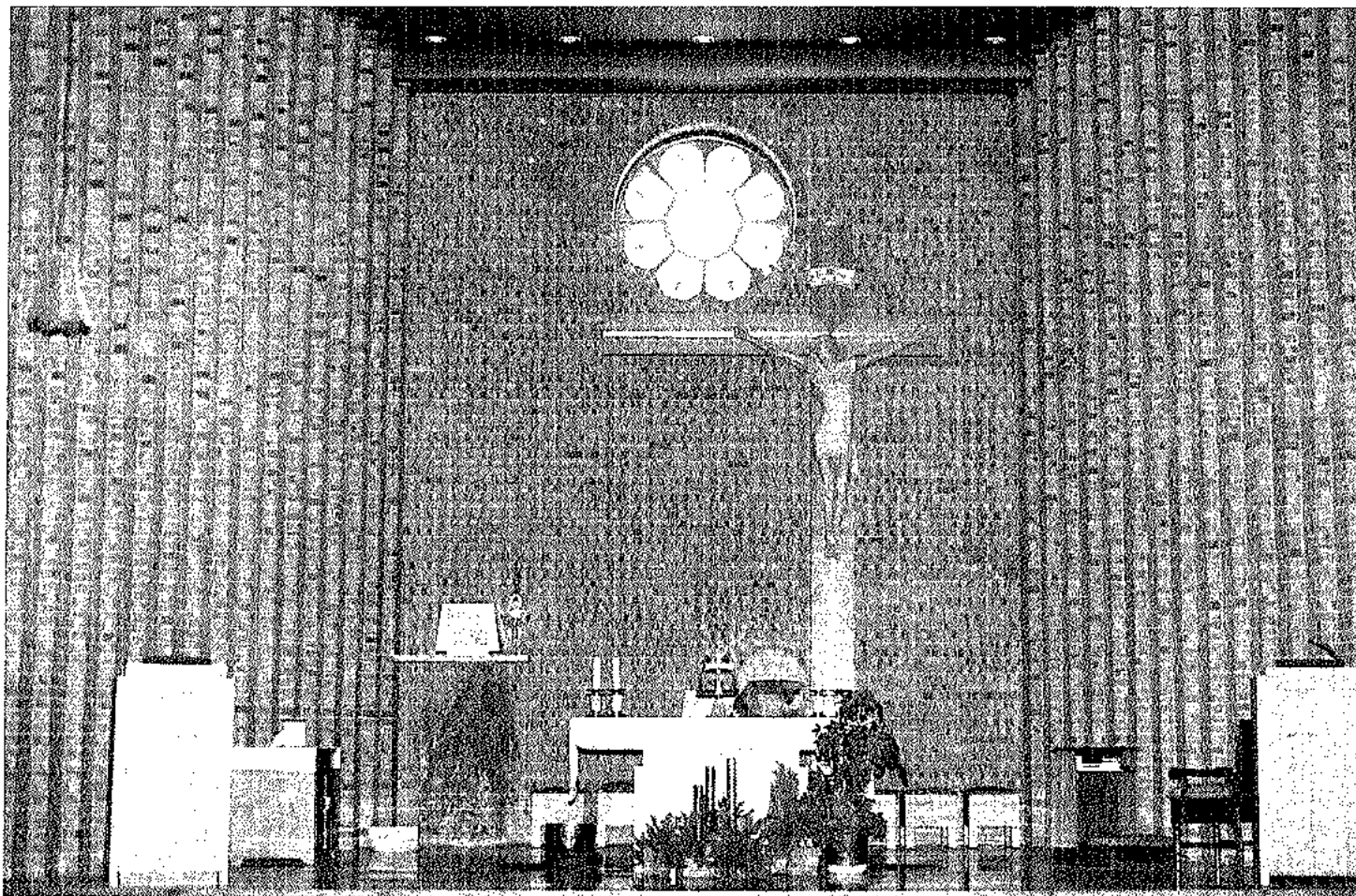
Seoksoo-Dong Church (Anyang)
Designed by Jeong, Koo-Young

鄭求榮 / 건축사무소 동성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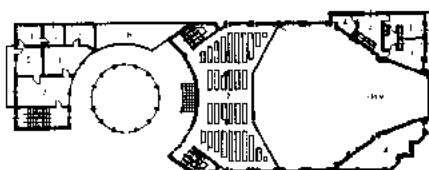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배산로 3 가 35-7 / 43-9959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대지면적 / 1,400㎡
- 건축면적 / 800㎡
- 연면적 / 2,200㎡
- 건물용도 / 성당
- 준공일 / 8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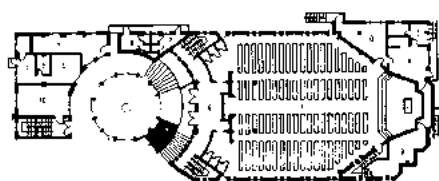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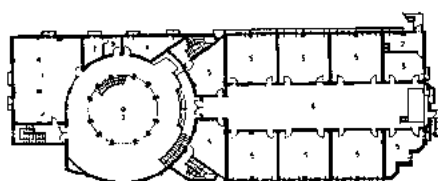
옥탑 및 지붕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층 및 층평면도

1. 침실
2. 욕실
3. 거실
4. 창고
5. 주방
6. 옥상정원
7. 회중석

1. 회중석
2. 제대
3. 제구실
4. 식당, 부엌
5. 침실
6. 욕
7. 화장실
8. 화장실
9. 성당사무실
10. 거실
11. 창고

1. 천교실
2. 보일러실
3. 창고
4. 사무실
5. 교실
6. 소성당
7. Sunken Garden

편 지

鄭浩承

그리운 사람들의
별빛이 되어

아리랑을 부르는
저녁별 되어

나 돌아갈 수 없어라
너에게로

하늘에는 비 내리고
별들도 길을 잃어

내 굳이 너를 마지막 본 날을
잊어버리자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울어 보아도

나 돌아갈 수 없어라
너에게로

□ 鄭浩承 /

1950년 1월 3일 경북 대구 출생.
1965년 대구 재성중학교 졸업.
1968년 대구 대원고등학교 졸업.
1968년 경희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입학.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畵詩「석굴암을 오르는 영화」 당선.
金耀燮선생에 의하여 《現代詩學》에 시 추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詩「침성대」 당선.
《1973》 동인지 시작.
1976년 성화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송실고등학교 교사.
《反詩》 동인지 시작.
1979년 시집「슬픔이 기쁨에게」(創批詩選19) 출간.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小說「慰靈祭」 당선.
현재 월간조선 근무.

歲暮短想

尹錫祐

(株) 綜合建築

출 퇴근 길에 접하게 되는 낮게 드리운 회색빛 보도,
잔뜩 찌푸린 하늘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나뭇잎들을
보며 어느새 또 한해가 저물고 있음을 실감한다.

금년은 특히 유난스레 복잡했던 여러가지 사회적인 격동,
연일 접히는 굵직굵직한 News, 빠르게 변하는 듯한
주변사람들, 그리고 뭔가 쫓기는 것만 같은 바쁨에
단풍을 느낄 사이도 없이 겨울을 맞게 되었다. 이맘때
쯤이면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그 누구라도 세월의 빠름을
한번쯤 인식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일말의 아쉬움과
몇가지 후회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우리 건축계의 한해도 많은 변화와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순탄하고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의 서울은 자주 다니지 않으면 길을 잃을만큼 나날이
복잡해지고 미처 알지도 못했던 고층 건물들이 순식간에
쭉쭉 생겨나고 있다. 특히 금년은 올림픽준비다,
재개발이다 하여 더 많은 건축행위가 있었고 더불어
도시건축공간이 무척 팽창하였다.

이들 모두는 제각기 이유있게 탄생될 것이고 뜯어보면
나름대로 제대로 짓고자 애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고 경솔하다는 느낌도 배제할 수
없다. 요즘의 사람살이가 모두 급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뻑뻑히 들어서는 건물들은 도시

Sky-Line, 건축선에 따라 모양이나 느낌이 너무 많이
뒹아가고 그 재료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해진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조화(Harmony)나 비례(Proportion)
때문인지 건물자체의 특징이 무시되고 좀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결여되어 가는 느낌이다.
물론 하나의 건물이 탄생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산고를
겪어야 하고 각종 제한적요소가 뒤따르다 보니 어려움도
 많다.

옥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키려니 외부공간은 손뼉
틈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의 조정시설을 또
집어 넣어야 하니 건축가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조성부분이 많이 침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주차장은 주차기능을 수용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일정한 비율을 옥외에 설치하라는 법적 기준의
의미는 외부공간의 공간감 확보를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건폐율로 제한하면 되는 것을 주차장법으로
다시 제한받아야 하니 법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만큼
그동안 수정하지 못했던 모순을 과감히 시정할 필요를
느낀다.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위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레벨업(Level-up)되긴 했지만 어울리지 않는 제도나
법칙에 의해 그 자율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십년 동안 이루어 놓은 전문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정력의 지도를 받는 것은 제도상의 비민주적
요소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건축가 자체의 잘못과
건축가의 권익과 여론을 대표하는 단체의 노력이 소홀했고
그 힘이 너무도 미약한 탓도 있을 것이다. 단체가
구성원에게 권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가지
불합리한 규칙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가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전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도 건설기술 자체를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으로 확보하지 못한 건설인 자체의 수치라고 생각되며
하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잘되는 전체를 규제하는
행정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지가 모여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제 이 해가 저물고 새로 밝는 날엔 우리 건축인에게
뭔가 새로운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모티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러기위해 우선 나부터 돌아보자.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새해엔 정들여 키워온 딸을 시집보내는 기분으로
작품에 임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주어진다면 하는게 우리 건축인의 바램이리라.

“ 요즘의 사람살이가 모두 급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뻑뻑히
들어서는 건물들은 도시 Sky-Line
건축선에 따라 모양이나 느낌이 너무 많이
뒹아가고 그 재료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해진다.”

Why와 How를 추구하는 건축어

朴研心

건축사사무소 장원

지난 여름에는 부쩍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물고문이라고도 했다. 셀마라는 여인은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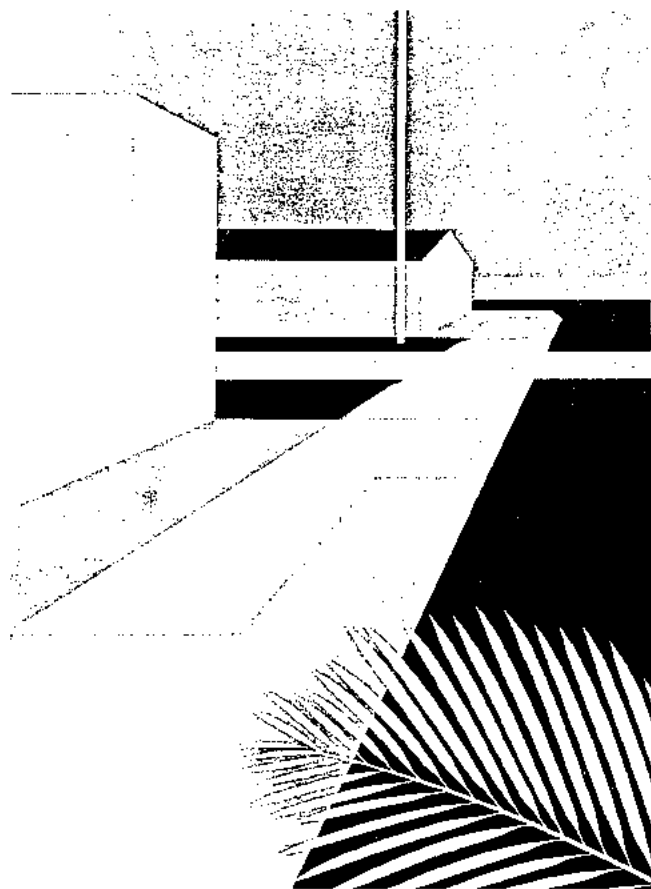
특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에 있었던 건축세미나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쯤은 「왜 건축을 하는가」 혹은 「왜 미술을, 왜 문학을 하는가」 등의 질문을,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갖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와서 왜 건축을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일관성있는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함에 또는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해서 새삼 반성하게 된다. 시간은 가속화되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다. 무용가 문일지는 객석지의 한 내담에서 춤은 그때그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왜, 어떻게 추어야 하는 타당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인간 정신의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예술들의 각 분야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수단이 같이 통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87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요세프 브로드스키(Joseph Brodsky)는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해 「신성함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이시대에 진정 신성한 것이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동기가 너무 절실하고 세계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와 게으름뱅이」라는 낙인을 찍히면서 소련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세계관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

올해는 유난히 전통의 민주화가 많은 이슈로써 눈길을 끌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외국에서 수업하고 온 음악회나 현대무용 발표회보다는 판소리발표회나 이애주의 출판으로 발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요즘의 추세다.

이런 경향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88올림픽을 앞두고 내눈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는 아닐까? 사실 전통계승의 실천적 방법(PRAXIS)은 프랑스철학자 폴·리키어의 말대로 그 사람의 「삶」속에 있는 것이지 무대위나 전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바통이란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 생활속에서 누렇지나 승냥이란 것을 잃게 했다. 편리함이란 미명아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것이 결코 한 로만티시스트의 감상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적인 것 찾기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게 될지도 모른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통찾기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면서도 실제 생활속에서는 진기하게 영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분야든지 그 동기는 「절실한 삶」에서 유추된 것이어야만 민족적 한계를 뚫고 「세계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구촌의 한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진실로 「인간적인」것의 고민을 같이 앓을 수 있는 공감대를 갖는다는 것.

외국건축의 사조나 유행보다도, 우리 옛것의 뒤적임보다는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삶」인 것이다. 보다 영원한 행복에의 염원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생의 추구일 수도 있고, 신성함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는..... 나의 내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기울이고 존재가치를 확인하면서 독특하고 직관적인 세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연말에 한번쯤은....

다신 후회스러운 글 쓰지 않길 바라며...

宋洙九

건축사사무소 한송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옛 선인의 행복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문화와 문명이라는 역사의 굴레속에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도 그만큼 성장하여 이제는 더 이상의 바램이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 빈자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며 인간 스스로 규정한 규칙속에서 초조함과 아쉬움을 안고 “이해도 이제는...” 하면서 내망의 1988이란 숫자속에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어 본다.

우리는 달과 해를 구획하여 숫자의 마력에따라 그 획이 바뀔때 바다 즐거움 보다는 고민스러워야 하고 초조함과 아쉬움 속에서 해는 뜨고 지며 사계절의 흐름은 똑같이 반복되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않으며 오늘은 누번다시 없다하여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요란스럽게 아우성치면서 또 연륜의 한켜는 복조르듯 휘둘러 감긴다.

유난히도 지루하고 어려웠던 올해였지만 순리를 따라 변하는 세대의 흐름은 지루한 산행속에서 찾은 석간수 같은 느낌을 갖게하며 아울러 발전하는 우리협회의 모임도 기대속에 새해를 맞아하겠지만 아쉬움과 우려속에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또 한해를 보내려한다.

작품이라는 말이 옛 이야기같이 돌리는 요즈음은 건축을 한다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기분이며 더우기 입버릇 처럼 이야기하던 “살아있는 생활공간, 자연과 환경과의 조화” 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 같이 무디어 지면서, 자연을 파괴하며 훗날 처치곤란의 물체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민속에서 모처럼 해방되듯 야외로 휴식을 즐길때에는 자연보호운동에 남달리 수선스러움을 떠는 것은 지나치게 소심스러운 나의 변명이 아닌 결벽성이었나 생각해 본다.

나 자신은 아직 한번도 예술가라 생각한적도 없지만 예술이라는 범주속에 건축은 다른분야의 음악, 문학, 미술과는 달리 상대적임을 새삼 실감하게된다. 특정한 애호가도 없어도 작품은 만들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훗날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게되는 이들에 비하여 건축은 캔버스(건축주) 없이는 그리지 못하는 그림이며 약기없이 연주못하는 음악과 같지 않은가/ 또한 어렵게 얻은 캔버스는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리기 보다는 질을

찾아야 하고 그리는 방법의 특수성을 찾아야하며 이렇게 어려운 산고에 시달려도 그 생명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영원불멸의 예술성이란 동화속에 이야기 같이 생각된다. 인기있는 아파트는 매년 바뀌며 고급주택가와 지명도도 그 일대에 빈터가 없어짐과 동시에 쇠퇴하여 두번째 바뀐 주인이 들어서면서 허물고, 뜯어고치며 애당초 작품이라고 떠들어 댄 것이 쑥스러워져 “라이트의 낙수장”이나 “르콜라제의 사보아 저택”은 어떠할꼬(이제는 역사적 기념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하는 생각으로 나의 능력보다는 세태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며 올해도 작품이라는 것은 무지개 같구나 하면서, 그렇다고 누구같이 경제적인 안정이라도 찾았으면 그 나름대로의 위안은 되지만 업계의 경기 불황이라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로 변명하기에는 나이테의 궤적이 부끄러울 뿐이다.

“

나의 능력보다는 세태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며 올해도 작품이라는 것은 무지개 같구나 하면서, 그렇다고 누구같이 경제적인 안정이라도 찾았으면 그 나름대로의 위안은 되지만 업계의 경기 불황이라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로 변명하기에는 나이테의 궤적이 부끄러울 뿐이다.

”

또한 설계된 내용은 법이라는 인간의 규정속에서 또 한번의 혼돈을 갖게한다. 법이란 최소의 규정을 갖게 하지만 그나마도 지킬 수 없는 각박한 세태에서, 장사꾼의 빈틈이는 예지속에서 보기 좋게 당하고 마는 기술자의 단순함을 탓하게 됨은 혼자만의 일은 아닐성 싶다. 법을 지키고저하는 이성과 양심의 사유이전에 벌칙을 무서워하고 탓하는 어리석음은 언제부터 몸속에 베어 있는지 스스로 짜증스럽고 한심스럽게 생각되어 이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삼스러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민주화(?) 되지못하는 건축주의와 관계는 아무래도 풍토병 같은 느낌을 갖게되며 발전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서 고객관리라는 어렵고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하겠다.

이러한 잠다한 생각은 한 획을 긋는 새미를 더욱 음씨년스럽게 하면서 요즈음 막바지 열기속의 유세장에서 한가한(?) 허상의 숫자를 생각하게되며 차라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개념의 항하사(恒河沙), 아승지(阿僧祇), 불가사의(不可思議), 무량수(無量數)와 같은 숫자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올해에도 약속하고
마음먹었던 일, 끝내야 할 일을 정성껏 마감하고 나자신
또 책을 그어야 할 모든일을 정리하여 노력하고 애쓴
하루하루에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이 해를
구인공휴일제(九仞功虧一簣)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대망의 무진년, 다시는
후회스러운 글을 쓰지않는 88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정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오는날 숲속에서”
말미 한 구절을 되새겨본다.

f.....

숲은 눈속에 아름답고, 어두워졌으나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쉬기 전에 가야할 곳이
꼭, 가야할 곳 있다. 」

■ 또 한 해를 보내며

和合과 解結의 길목에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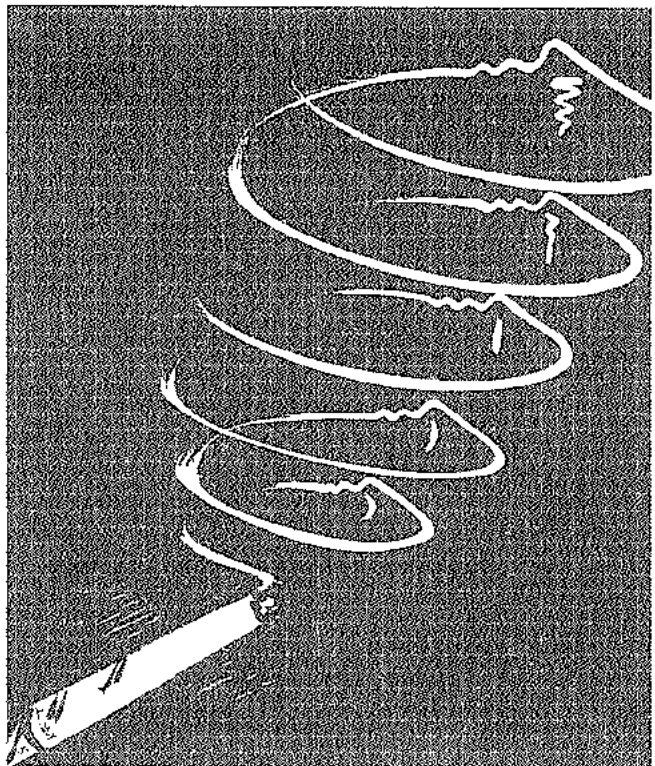
金善洋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유 별나게도 소란했던 1987년도 대통령선거와 함께
저물어가고 머지않아 새 정부와 함께 올림픽의 해가
열리려 하고 있다.

우리네들의 한해는 TV 연속극에서의 주인공처럼
낭만적이고 여유있는 연가를 하는 마당이기 보다는,
1개월후를 기약할 수 없는 각박한 현실속에서도
차분할줄 아는 다져진 인내로, 다가올 한해에 또 한번의
희망을 걸고 있으리라. 하지만 이 시점은 어느 해의
연말과는 달리 우리에게도 상쾌한 민주화 바람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시점으로써 우리의 응어리들을 한데모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나는 한해를 보내며 과거가 만들어낸 여러가지 문제들 -
우리끼리의 관계에서, 정부와의 관계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 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인과 종합사무소의 구별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종합사무소는 세명의 건축사가 각각 대표이면서
개인 사무실 체제로 운영하며, 대규모 종합사무소는
운영은 협동체제이나 건축사는 종속관계에 있어 양쪽 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볼 때 개인과
종합의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 (상주) 감리 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므로 설계자가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상주감리마를 받고 상주감리를 기피하는 건축사가
있을까?」
상주감리의무의 불이행 책임은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의 책임으로 돌려져야(상주) 감리가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
- 설계 보수는 적절한가.
「당신의 반액에 설계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
금년에 들은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중의 한토막이다.
건축주, 설계자의 질, 작품의 수준이 각각 다르므로
설계비가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최소한의 기준을
위해 「실적회비 납부용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고 협회비
요율을 낮추어 바란스를 맞추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건축사 시험은 공정한가.
언제부터인가 1급과 2급의 구별이 없어지고 7년이 5년이
된 후, 2 급 특혜, 공무원 특혜와 아울러 합격자수의
전폭이 고르지 않은 모순이 해마다 계속되었다.
요즈음 대두되는 감리업무 문제와 아울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는 모든 조건이 기술사와 동일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 협회비 납부시기는 적절한가.
협회공인 계약서대로라면 착수금, 중도금 받고 허가를



新天地에 자유롭게 우리의 꿈을 그리자

金洛中

종합건축사사무소 증원건축

겨울을 외면 한듯하던 날씨가 며칠전부터 갑자기 수온주가 떨어 지더니 첫눈까지 내렸다. 수북히 쌓인 白雪은 大地의 흔적을 감싸고 均質化시켜 새로운 新天地를 우리 앞에 펼쳐준다. 白色의 캔버스처럼... 마치 올해 안에 있었던 모든 허물을 정리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해”를 맞으려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러한 신천지에 우리는 기존의 아무세약 없이 자유롭게 우리의 꿈을 그려볼 수 있다 -길(路)도, 마을(村)도, 경작지도 그리고 집도 교회당도...

꿈많은 건축학도 시절만해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러한 백색의 신천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거리낌·주저함·부끄러움도 없었고, 유치와 세련, 현실화에 따른 우려 等도 모른채, 창작에 대한 의욕만이 가득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후 우리가 몸담게 되는 건축을 통한 현실은 건축가의 영광과 책임과 함께, 나름대로의 유치함과 세련됨에 대한 혼돈, 결과에 대한 두려움, 과정의 귀찮고 번거러움-건축주, 경제성, 제반규정등-에 얽힌 문제들...等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또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比重의 차이는 있겠지만, 人生의 한부분으로서의 건축, 가족, 친구, 돈, 명예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위에 존재하고 또 相互感應하는 수많은 因子들이 있다. 세상만사가 다 善·惡의 양면을 갖고 있듯이, 건축창작활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볼때, 우리가 처하게되는 이러한 상황도 그 긍정적인 面과 부정적인 面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面으로는, 모든 창작활동이 모방이나 기교(Technique)로부터 출발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한계-또는 상당한 경지(Level)-에 이르게 되고 결국 哲學的인 문제로서 결판(?)이 난다고 볼때, 정통적인 수련외에도 위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경험케 하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좀더 철학적으로 성숙하게되고 진지하여 지며, 분홍빛 꿈대신 건축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 같은것이 것들게 되는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다른 面으로는 차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접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이외에는 허가될한 후에 설계비를 받게되는 것이 상례인 것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혹은 일정조건 이상은 착공 신고시까지 납부토록 조정해 주면 어떨까?

●미관심의의 작품은 경범죄수인가.

도시의 미관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판단 기회를 갖는 미관심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기준이 건축주나 건축가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 「즉결재판식」판단이 야기될 수도 있다.

모두가 공정한 입장에서, 「반려」보다는 「보완」위주로 다루어지길 바란다.

●허가의 도사는 누구인가.

허가의 실력을 능력의 제일로 생각하는 건축주가 의외로 많다.

어떤 건축사가 접수를 하는지 일정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속하게 「허가필」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선(線)은 선(善)인가.

어떤 건물이나 설계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선한 일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말씀이 있긴 하나 주요건물의 준공을 알리는 신문기사에 설계자의 이름이 실리지 않는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위에서 생각한 몇가지 문제점들이 상쾌한 민주화 바람에 밀려 우리곁을 떠나 88년 새해를 맞는 우리네 모두의 마음속에 유쾌한 마음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피곤하게하고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수도 있다.

또 모험(冒險) 보다는 안일(安逸)을, 용기보다는 은둔(隱遁)을, 진지한 토론(討論) 보다는 적당한 타협(妥協)을, 白肯心 보다는 돈을, 작품보다는 처세(處世)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현실에 있고, 또 나 자신 이러한愚를 저지르고 후회하곤 한다. 建築主를 만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기 보다 그릇된 건축주의 생각도 포용하려 애쓰며, 심지어는 그것을 정당화 시켜주려 노력하기도 한다. 스스로 좋은구상(?)이 떠올랐어도, 단지 그것이 하자의 우려가 있다던지, Design Realization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수반하리라는 이유 만으로도 쉽게 포기하고만다.

“

기존관념을 일단 잊어버리고 白紙 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유행(?)으로 간단히 걸치장하여 쉽게 해결 -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 하려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창작물의 出度을 위해 진통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없이 피흘린 흔적만을 위장해보고자 하는 거짓에 찬 욕심장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

현상설계를 준비할때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그들의 취향에 자기의 의견보다 우선하여 신경을 쓰고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또 설계실무를 수행할때는 심사숙고없이 어느정도 Mould化된(?) 각자의 관념에 의해 해결하거나, 기존의 유사 Project에 준해 기계적으로 풀어 나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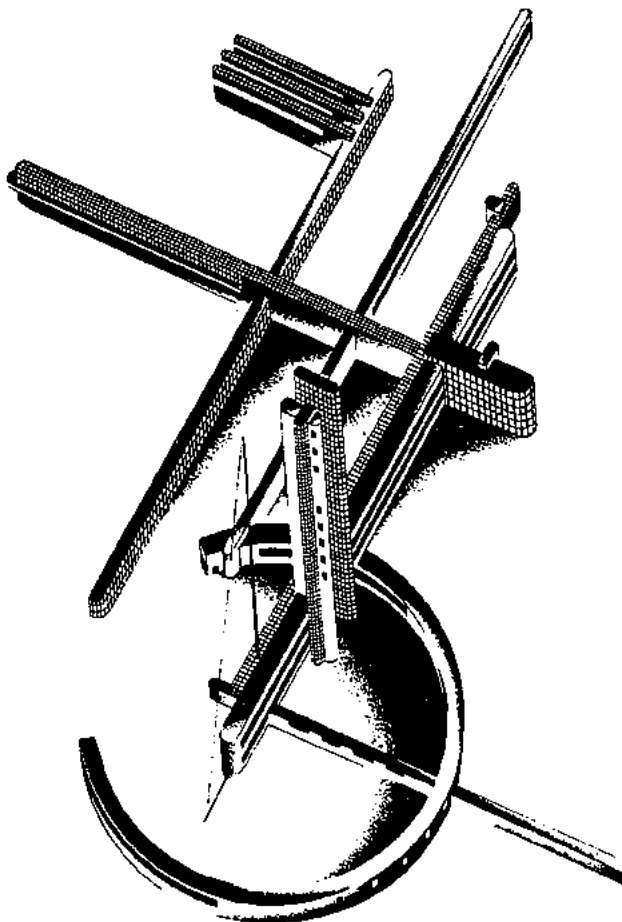
기존관념을 일단 잊어버리고 白紙 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유행(?)으로 간단히 걸치장하여 쉽게 해결 -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 하려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창작물의 出度을 위해 진통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없이 피흘린 흔적만을 위장해보고자 하는 거짓에 찬 욕심장으로 변해 가는것은 아닐까?

우리는 차츰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려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측면이 있다.

어느쪽을 취하느냐? - 아니면 어느쪽으로 빠져드느냐? - 하는것은 각자의 선택 -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무엇 - 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로써 끝이 없는 창작세계의 그어떤 경지로 한발 한발 접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쩌면 이런 푸념은 나 자신 또는 비슷한 몇몇 건축쟁이(?)만의 얘기 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부러운 정도로 건축에 没入 하여있고 또 좋은 작품을 진지하게 만들어내는 훌륭한 건축가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그렇지 않아도 歲暮가 가까와 오면 세상이 시끌 시끌 해지는데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겹쳐 더욱 시끌한것 같다.

얼마전 첫눈이 내려 大地의 모든 흔적을 덮어 新天地를 만들었듯이, 내마음 속에도 기존의 Mould를 없애고 白色의 신천지를 장만하여, 새해에는 새로 건축수업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Project 하나하나를 새롭게 원점에서 부터 접근해 나가야겠다.



建築設計는 建築士가 하는데...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우리나라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전국에 약 3천명 가까이 있다. 그외에도 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니면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2천명은 넘을 줄 안다.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현재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만도 2천6백이 넘는다. 그 많은 건축 실무자들은 경력이나 능력이나 연령이 각양각색이다. 매년일회식 국가고시가 시행되지만 응시자의 합격률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아마도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지가 20년이 이상되지만 전체의 평균(매년) 합격률은 20%내외가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 건축사후보격인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이 국가고시에 응할 예비건축사들은 몸서리 칠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불평의 ①은 합격률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전체면에서 볼 때의 대학 졸업생들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보면 80% 가까운 합격률인데도 오직 工科인 건축사는 20%내외란 너무도 차이가 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이유는 많다. 첫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객관식문제와 주관식문제의 비율이 8 대 2 정도로 객관식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 고시를 주관하는 건설부의 권위주의적인 점이라고나 할까 대개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가 工科대학의 건축과 교수들이나,

이 국가고시란 대입의 입시도 아니고 취직의 채용시험도 아니다. 매년 거의 고정된 자의 합격은 어떤 계획적인 시책같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설부가 국가의 일년만에 발생할 건축설계의 양의 예측이나 통계와 건축사의 수와의 계획균형이 정확하지 못하다든가 소수만을 합격시키면 이 고시가 다른 어떤 고시보다 권위가 서는 것인지 입학시험이나 채용시험도 아닌 이상 전원 합격할 수도 전원 불합격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가에서 하는 자격시험인 이상 또는 건축학의 특성에 비추어서 볼 때 건축설계능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소위 국가고시인데 출제자들의 채점의 편리상 객관식문제를 출제하는지는 몰라도 건축설계란 통계나 객관적인 견해로서 한다면 하나의 건축이 설계하는 그 건축사의 전인격이요, 개성이 깃드는 것일진대 건축사 국가고시에 객관식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된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에게서 오래전부터

頻笑를 받아왔다는점과 응시자들 역시 고등고시시험이 DATA나 수식을 암기해야 하는 가소로운 국가고시가 되고 있다.
건설부나 출제자나 다 권위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건축사 국가고시위원회같은 것이 있어서 매일 교대로 또는 윤번제로 또는 시험문제를 전체위원들의 합의하에 출제하는 방법이 정당한 줄로 믿는다. 벌써 몇번인가 이 시험문제에 소위 단무지식사건이 몇번인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마땅히 고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하나 가장 큰 문제로 근자에 와서 정부 건축직에 얼마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무시협건축사 면허를 부여한다는 독선이랄까 비민주적이랄까 無識輩들이라고나 할까 가소로운 案을 발표하고 건축사협회등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색이 국가고시인데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올바르게 보지않는 것이나 아닌가? 그들은 가끔 상상도 못할 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책상앞에 놓인 창외, 친절, 봉사라고 적은 牌表의 창외가 겨우 자기들에게 백번 유리한 생각을 해내라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창외는 관리행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이나 제도를 창외해 내라는 것이고 對民에게 친절하라는 것이고 對民에게 봉사하라는 뜻임엔 틀림없는데 그들은 공무원 자신들에 유리하고 편리하게 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확실히 말해서 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관리나 행정이 국민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신이나 자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민주화에 회의를 가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되는 일이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불란서처럼 정권교체나 혁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나 정권이

법앞에 特字나 特別字만 붙이면 만사형통이라면 국회의원은 왜 많은 歲費를 주면서 있어야 하는가?

바뀌어도 전반국민생명엔 어떤 미동도 없이 평상시와 같이 사회모든 일이 순리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나라도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란서의 공무원들의 정신이요, 자제인 것이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그 나라 공무원들의 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것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이고 민주화가 생활화된 사회인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시일안에 국민투표나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때의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 질, 행동, 자세를 보면 선거의 결과 이전보다도 민주화에로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오직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축의 국가적인 작업량과 필요한 인

(건축사등)의 지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기한 건축국가고시에의 실태를 이야기해본 것이다. 이런 기회에 반드시 말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것은 건축사 국가고시위원회의 구성(약20명정도)이 고시의 문제는 8:2정도로 주관식문제가 8이고 객관식문제 2정도로 해야 할 것이고 건축직 공무원에게 무시협건축사면허 고려란 가소로운 이야기는 제발 취소해야 한다. 합격률은 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의 타과의 유사한 문제와의 균형을 보아서 정한다기보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Cutline 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합격시켜야 한다. 합격한 자가 설계사무실을 내든 안내고 다른 일을 하든 그것은 국가고시와는 무관한 일인 것이다. 여기서 근자 우리 주변에 흔히들 하는 자율이란 말이 생각난다. 건축사국가고시문제를 반드시 건설부가 관장해야 하느냐 건축사협회나 또는 건축관세삼협회(건축학회, 건축가협회등)에 자율적으로 맡겨봄도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은 이 나라의 모든일은 정부나 관이나 공무원들이 하지 아니하면 당장 이나라가 멸망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권위주의라고

보이는 것이다. (아니 사실은 권위보다 권력인 것이다) 권위나 권력에 예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민주화는 막연한 것이다. 몇년전부터 지방자치제운운하면서도 요리조리 이유와 명분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그 저의는 무엇일까. 구심적인 중앙집권제가 관공서들에겐 권위나 권력이니 국물이나 다 유리하기 때문인가 아니었는가. 수도권구 소산계획이란, 말은 들은지 매우 오래됐다. 또 많은 자본의 투자나 몇가지 방법을 실천도 해보았지만 수도의 인구는 감소는 커녕 증가일로에서 일천만을 육박해 왔다.

66

여기서
근자 우리주변에
흔히들 하는 자율이란
말이 생각난다.
건축사 국가고시문제를
반드시 건설부가 관장해야 하느냐,
건축사협회나 또는 건축삼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봄도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99

그러면서 그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삼세대, 집합 주택조합, APT 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건축들은 건축사들이 하고 있다. 허나 大財閥社들은 거대한 Project는 거의 외국에서 설계를 해오는 것이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해다가 우리 건축사 누군가의 명의를 빌어서 행정상으로는 우리 건축사가 설계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설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나라의 읍도 기업가들도 건축사를 믿지 못하고 외국에다 시켜야 자량이나 권위나 안심이 된다면 이 나라의 공과대학의 건축과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건축국가고시는 또 무엇이며 건설법이나 건축사법이니 수많은 법은 무슨 용도로 제정했는가. 高位層의 주택이웃에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허가가(구청)난 소주택을 건축하는데 그 高位者宅側으로는 난 창호를 막아 없애라고 한다. 건축법 위반도 아니고 구청에서 담당관의 실사도 있었고 완공이 가까워가는 공사도중에 한쪽 창을 막으라는 것이다. 이유는 무조건이란단. 그 高位者는 국가대기업의 사장이다. 구청이니 경찰서, 건축법이고 뭐고 없다. 무조건 창을 없애라는 우기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모든 법앞에 特字나 特別者만 붙이면 만사형통이라면 국회의원은 왜 많은 歲費를 주면서 있어야 하는가? 요즈음 가슴속에 쌓였던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어이없고 말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기억해야 한다. 관리행정이란 그 실행자인 공무원이란 망각을 잘하는 사람들 같다. 제주도 기대한 굴밭이나 서산의 농장이야기가 어제 같은데 그것이 살한 것이야 못한 것이야를 국민에 묻겠다고 하며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는 묘한, 어제일은 완전히 망각하는 버릇을 가진 우리가 건축사나 건축가나 공간이니 기능이니 학생들에 목아프게 떠드는 것이 해야할 일인지 아리송한 요즈음의 심정이다. 추석이 지나고 한로가 지났는데 제법 朝夕이면 소슬바람이 불어오는데 상기사람들을 위해 표를 찍어야 한다. 안찍으면 위법이란단. 참 재미있는 세상이긴 하다. 그러하다면 각자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나는 무엇이나 건축사와 건축법과 실제의 건축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큰 손이나 치마바람이나 APT 대단지 계획이 연일 발표되는데 말이다.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 (7)

金晶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41. 京畿女高

위 치: 貞洞1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10. 8. 1 (齋洞교사)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 규모: 구조:

층별:

대지면적: 5,014평 (정동 교사)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존상 태: 貞洞 교사는 1965. 2. 9全燒

京畿女高는 純宗 皇帝의 勅令에 의해 개교 (1908년 4월1일)됐다.

처음 출발은 官立 漢城高等女學校로 시작되었다. 한성고등여학교 자라는 현재의 都染洞 근처로 校舍는 당시 工曹에서 사용하던 官衙의 한 기와집이었다.¹⁾

일반적인 開化期의 학교 교사들은 교회당이나 선교사들의 私宅들을 사용했으나, 京畿女高는 그 규모가 비교적 큰 관아 건물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 女學校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도 커져서 韓日合併 직전인 1910년 8월 1 일에는 齋洞에 新 校舍를 마련하고 이전해 갔다.

제동 교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세워졌는데 그 設計者와 施工者는 未詳이다.

이듬해 新教育令이 나오고 校名은 官立 京畿女子高等普通學校로 개칭되었다.²⁾

1945년 8. 15해방이 될 때까지

京畿女高는 제동 교사를 사용해

오다가 美軍政이 시작된 同年

10월15일 정동 1번지의 現校舍로

배움의 터전을 옮겼다.³⁾

이 시기에 京畿의 제동 교사는

昌德女學校에서 인수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9년 10월 1일 새 講堂이 貞洞

校地에 세워졌는데 그 규모는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후 각종의 교사가 貞洞 대지에

増改築을 계속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京畿의 명성에 비해 교사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불충실하며 昌德女高 校舍와 관련지을 수 밖에 없다.⁴⁾

京畿의 木造 2층 약560평의 本館

구 교사는 1965년 2월 9일 오후 3시

大火를 만나 全燒되어 버렸다.

1977년부터는 본의아니게 학교를

이전시키고 美國大使館 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건평3,300평, 지상8층의 규모로

계획중)

이에따라 京畿女高는 새 교사를 강남구

개포동 산82(개포구획정리지구 A-14

블록)에 신축중에 있으며 1988년 2월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도심의 한

유서깊은 교육사적 장소가 폐쇄된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며, 정동일대에

걸맞지 않는 또하나의 고층빌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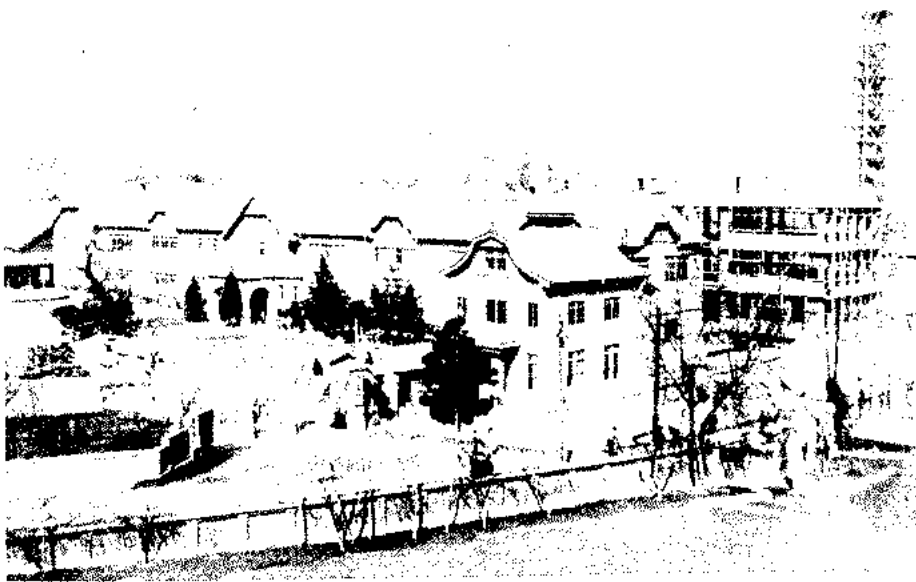
들어서므로 해서 그 장소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서울시, 미국대사관, 경기여고의

▼ 제동,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1910.
(後에 昌德女高 校舍) (서울60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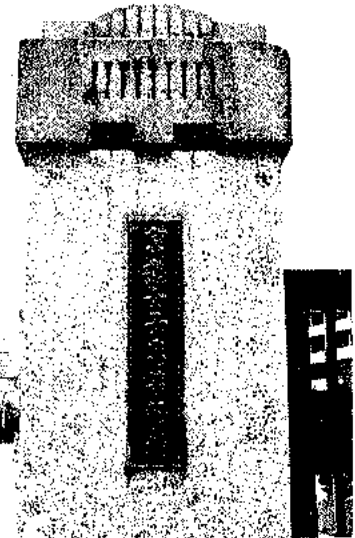
▲ 정동, 1945년 新校舍(望郷朝鮮)



▲ 1965년 全焼되는 京畿女高교사

이전계획에 재고가 요구된다.

유일한 파거의 흔적, 正門장식석 柱頭 ▶



□註□

1. 漢城高等女學校 시절의 교사는 京城西部 工曹 後洞에 있었다. 舊 宣慰廳의 別倉을 사용했다.
2. 1938년에는 다시 京畿公立高等女學校(4.1)로 1947년에는 京畿公立女子中學校(5.1)로 각각 개칭됨.
3. 京畿의 교사는 德壽宮의 興德殿址였다.
4. 齊洞 校舍와 貞洞 校舍의 자료는 「京畿女高五十年史」(1957) 참조.

▼도령동, 漢城高等女學校, 1908. 5. 23開校式 (京城府史 제 2 권)



▼ 현재의 校舍, 전경 (1987. 10)



42. 舊 京畿道廳

위 치: 세종로76-2

착공년월일: 1907. 7

준공년월일: 1910. 8

설 계 자: 度支部 建築所

시 공 자: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 령: 지상2, 옥상1

대지면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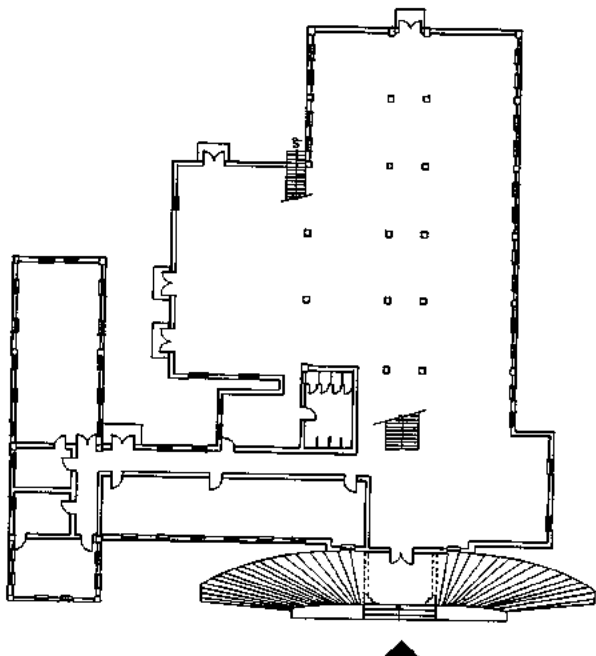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472 평

보 존 상 태: 半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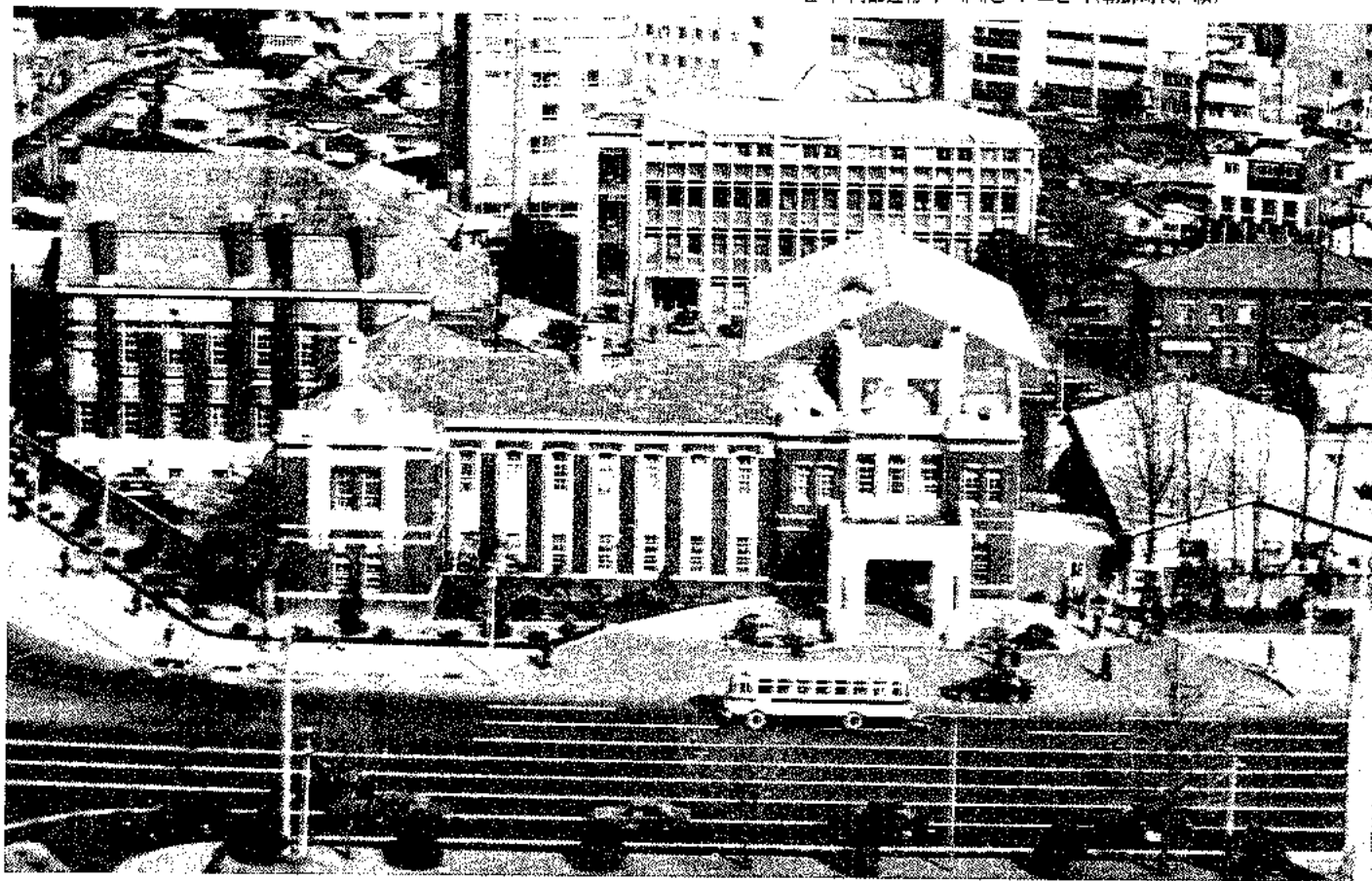
▲ 1910년 新築당시의 京畿道廳 (京城府史, 제 2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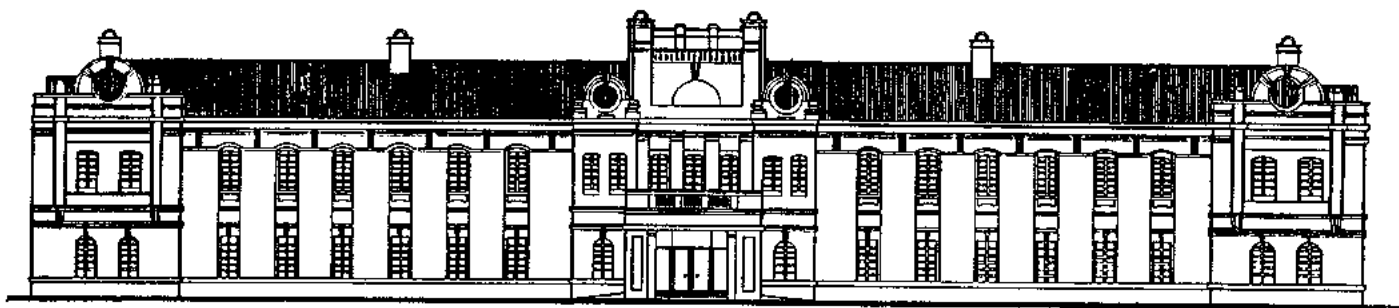
▲ 京畿道廳, 現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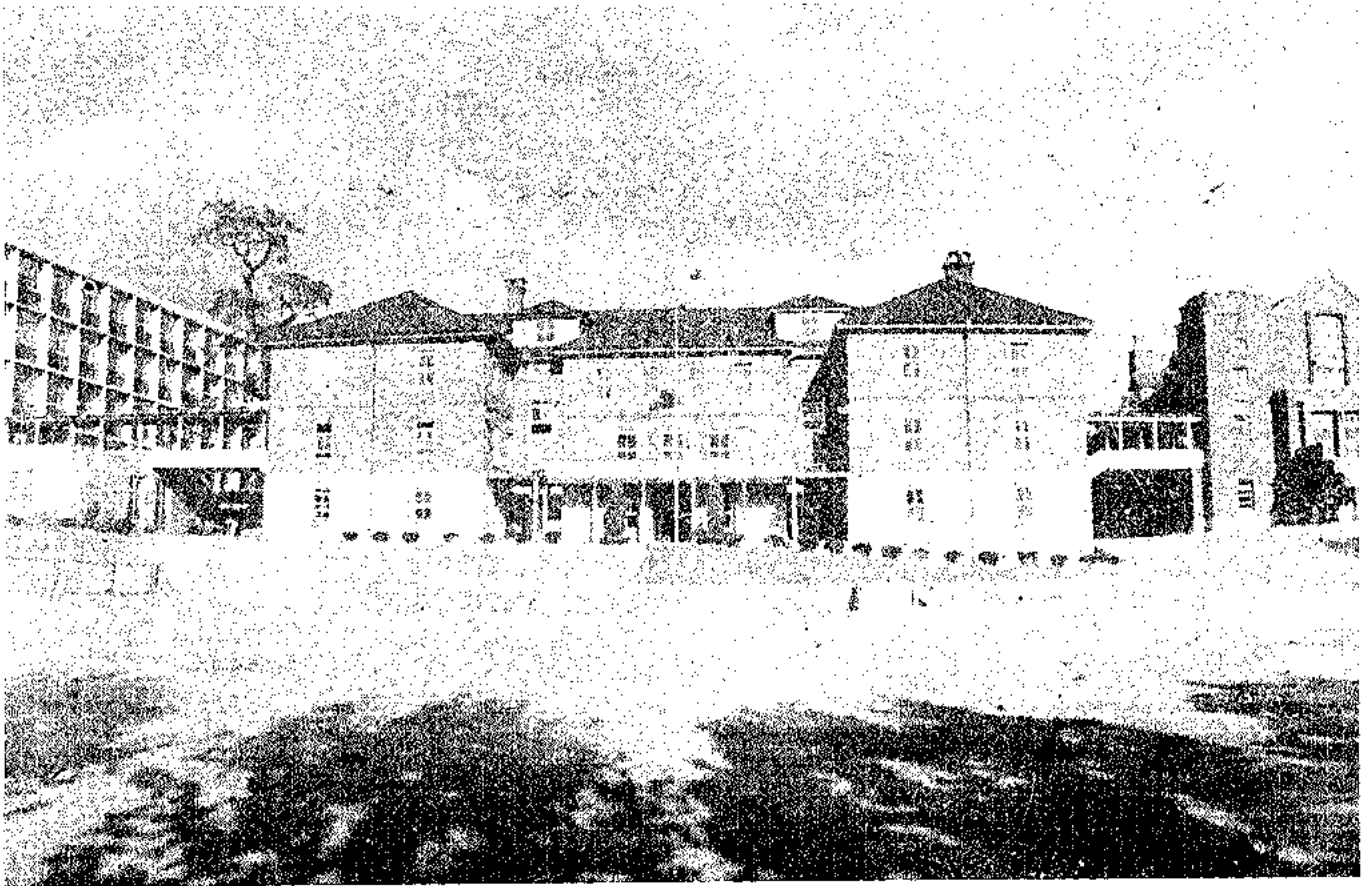
▲ 오른쪽 内部建物과 海태상이 보인다(朝鮮時代, 續)



▲ 政府綜合庁舎에서 내려다본 庁舎주변(1969)



▲ 京畿道廳, 原立面圖



▲ 1910년의 貞信本館(貞信75年史)

政府綜合廳舍에서 이 건물을 내려다 보면 “참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건물이 된 채 남아있다. 현재, 國立中央博物館(舊 中央廳)과 政府綜合廳舍와 三角을 이루며 좋은 場所性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의 건물은 H字形이었으나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파괴되어, 中央 부분과 왼쪽 부분만 남게되어 T字形이 되었다. 政府 官衙街 계획의 일환으로 이 건물의 운명도 존각을 다루고 있다. 일제와 6.25의 흔적을 몸으로 받은 이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역사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건물이 ‘内部 廳舍’로 계획될 때는 國立中央博物館도 아직 없을 때였다. 그후 京畿道廳, 治安局(1970, 12)으로 전신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서울 市 警察局 第1別館으로 사용되고 있다. 1907년 7월에 착공되어 1910년 8월에 준공되었다. 벽돌조 2층으로 英國式 Renaissance 風을 도입했다고 한다. 度支部 建築所에서 설계했다. 준공 전후의 사진을 보면(内部時代) 건물 前面 왼쪽에 海駝(헤테)像이 하나 놓여 있었다.

준공당시의 건평은 472평이었다. 左右 대칭인 平·立面을 갖고 있다. 의장적인 특징은 현관 상부 고리형 장식과 屋塔에서 찾을 수 있다. 굴뚝으로 지붕면의 단조로움을 깬다. 窓門의 윗부분에 波形 수평선 띠를 만들어 냈다. (사진 中央의 박공부분은 증축된 것임. 日字未詳) 1970年代 中期에는 이 곳에 政府第2廳舍의 건축 계획안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그와 유사한 계획이 입안되고 있다. 하루속히 그 계획은 중단시키고 오히려 原形건물로 복원시켜 문턱 낮은 정부 민원센터로 轉用되기를 기대한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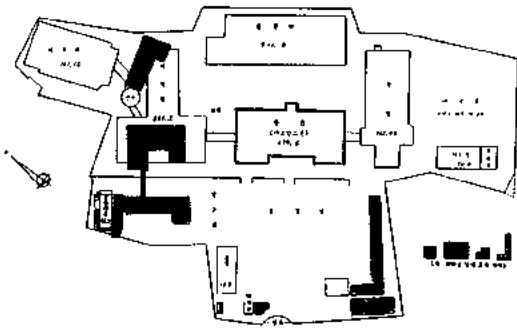
1. 「국정자문회의」 등 셋방살이 중인 정부 부처를 위해 이 자리에 고층빌딩을 신축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1987. 11 현재 연기되고 있다.

43. 貞信 校舍

위 치: 蓮洞 137
 착공년월일: 1909
 준공년월일: 1910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 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1, 지상3,
 대지면적: 4, 149.6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679.5평
 보존상태: 이전후 전용됨

1886년에 韓國에 온 Miss Annie Ellers는 濟衆院에 근무하며 이듬해 여름(1887. 6) 貞洞의 洋人村에 있는 Allen의 집에서 貞信女學校의 母體가 되는「貞洞女學堂」을 개교했다. 처음에는 孤兒院으로 출발했다. Allen의 집은 현재 美國大使館邸와 Russia 領使館 사이에 있었다. 1885년에 中國人 怡泰(이태)가 세운 이 집은¹⁾ 中國式 벽돌조 住宅이었다. 1895년 10월 20일 貞洞女學堂은 貞洞을 떠나 蓮池洞(연못골)으로 이전했다. 이름도 「蓮洞女學校」로 바꿨다. 이때 부터가 貞信의 새로운 출발기였다. 蓮洞은 미국 北長老教 서울 주재 선교사들의 居住村으로 형성된 곳이었다. 작은 동산에 숲이 우거져 아름다운



▲ 校舍配置圖 (貞信75年史)

곳이었다.

선교사들은 이 숲 속에 집터를 닦고 큰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다.²⁾ 이 숲 전체가 貞信學校의 배움터가 되었다. 현재로 보아 鍾路 5가 네거리에서 大學路 쪽으로 가다가, 蓮洞교회에서 서쪽으로 산비탈이 된 산등성이 위에 선교사들의 住宅은 들어섰다. 그 선교사들 私宅 西쪽으로 동산이 기울어지면서 (鍾路 4가에서 昌慶宮 쪽으로 가는 길가 오른쪽에서 조금 들어와) 자리잡은 貞信 교사가 그 때 선교사들이 사들인 대지였다.³⁾

처음은 큰 卍字 韓屋 기와집에서 시작했다. 이 집은 50여평에 달하는 대궐 집으로 全羅監司宅이 되기 전에는 舊韓末 三軍府 訓練廳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1905년에 벽돌조 교사가 세워졌다. 드디어 1910년에는 본관 건물이 준공되었다.⁴⁾

「Severance 紀念 病院」의 설립을 도왔던 Severance가 건축 자금 15,000 \$을 기부함으로써 세워지게 된 것이다.

「Severance 館」으로 이름지어진 이 본관 교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벽돌조 건물로서 연건평 679.5평의 규모였다.

본관은 그 당시로는 최신식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大字形의 평면은 유럽식 입면을 만들고 있다.

두 개의 지붕 다락방과 2개의 굴뚝은 건물 전체의 분위기를 1,800年代式 유럽風으로 유도하고 있다.

1층은 白色 면 처리를 하여 2~3층의 붉은 벽돌면과 적절히 어울리게 했다. 내부 시설은 모두 美國에서 들어온 器資材로 채웠다.

水道 시설, 水洗式 화장실, Gas 시설도 도입되었다. 教材, 器具 등도



▲ 原形이 남아있는 現 建物

美國式이었다.

이 후 기숙사, 50周年紀念館도 세워졌었으나 현재는 모두 헐리고 새 건물로 대체되었다.⁵⁾

내지면적: 2,878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2,446평

보존상태: 1972년 철거

東洋拓殖株式會社は 그 건물 자신이 갖고 있던 惡名으로 인해 滅失되어 버린 한 예가 된 건물이다.

그것은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拓)가 官製 자본을 앞세워 東洋 특히 어리숙한 朝鮮에 본격 진출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英國이 그의 殖民地 印度를 침략할 때 이용했던 「東印度株式會社」의 예를 흉내 낸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日本 帝國主義者들은 강압적인 합병을 이룬 직후부터 朝鮮경제 수탈의 첨병으로 東拓을 설립¹⁾ 土地經營, 殖民, 農業, 林業, 塩業, 水利事業, 金融 등 모든 분야에서 毒手를 내밀었던 것이다. (특히 土地 매수가 주임무, 土地調査업무가 끝날 무렵에는 약78,000정보이상의 토지를 수탈) 東拓은 그 설립 장소를 乙支路2가, 현 外換銀行 本店 자리로 잡았다. 이 위치는 원래 「구리개」로 불리던 거리의 노른자위 땅이었다. 그 자리에는 朝鮮朝부터 音樂을 가르치던 「掌樂院」이 있었다. (韓日合併 직후 폐쇄) 日帝는 2,878평의 터에 내려앉던 民家를 모두 헐어내고 2층 木造건물을 새우기로 했다. 그들은 日本 北海道産 木材를 들여다 日本 木手 수백명을 동원해서 이

□ 註 □

1. Allen은 中國에서 韓國으로 오면서 잘 알고 지내던 怡泰에게 住宅의 設計, 시공을 위탁했던 것이다. 위치는 貞洞 1番地. 6.25동란 때 폭격으로 모두 부서졌다. (「貞信75年史」, pp. 57-59).
2. 蓮池洞137, 佔地 4,149.6평
3. 「貞信75年史」, p.82.
4. 貞信의 設立者는 Gale, 1909年 貞信女學校로 認可받음.
5. 貞信校舍는 現在 雙龍 그룹에서 引受 使用하고 있으며, 學校는 江東區 Olympic Main Stadium 부근으로 移轉했다. 1987년 10월 20일 개교100주년을 기념했다.

제 2 편

근대건축 제 2 기 (1910~1945)

44. 東洋拓殖株式會社

위 치: 을지로 2가 195

착공년월일: 1911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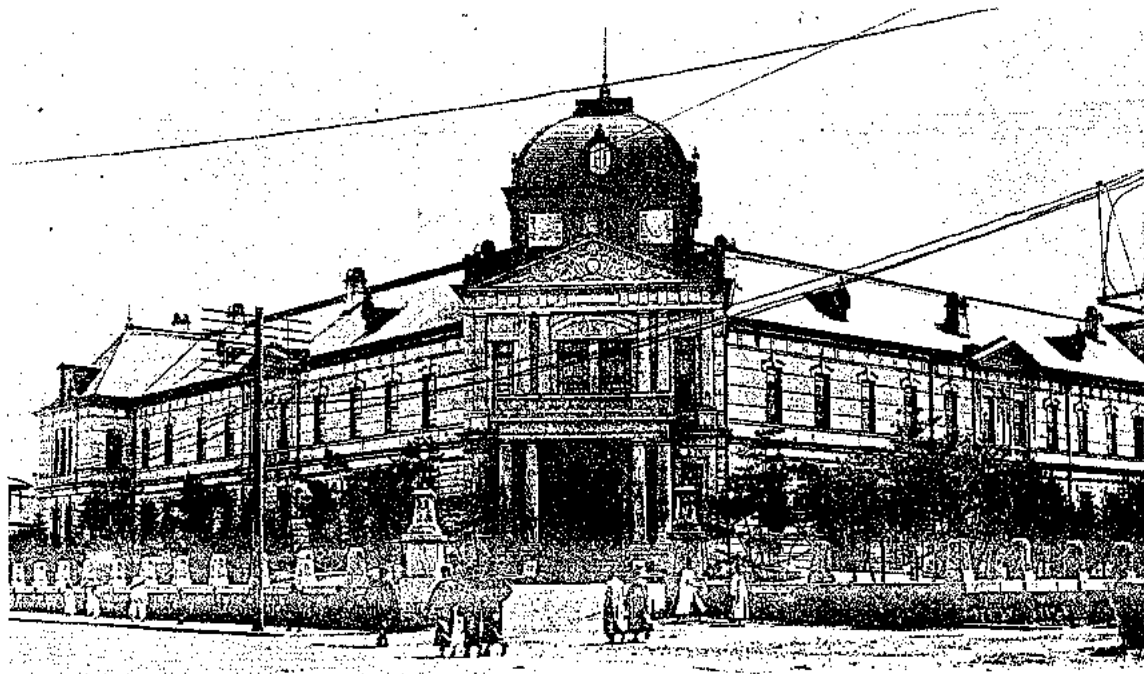
준공년월일: 1911 (가을)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규모: 구조: 목조

층별: 지상2, 옥상Dome



건물을 건축기로 한 것이다.²⁾

1911년 봄에 착공하여 그해 가을 준공했는데 매우 빠른 공정 속도를 보였던 것이다.

건물은 木造 Renaissance 스타일로 건물의 正面을 모서리 부분에 두고 그 부분을 雙柱, 박공, Dome 으로 강조시켜 진입로를 시각적으로 압도했다.

건평 2,446평의 본건물과 부속건물 30여동을 거느린 東拓은 삼나무, 잣나무와 편백나무로만 지어지게 됨으로 木手는 공예적 장식 기둥에 경합있는 日本 木手들로 구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³⁾

木造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붕과 室内 부분은 日本色이 보였으나 건축의 외관은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유럽풍을 더 띠었다.

東拓은 서울에 本店이 세워지자 그후 전국 각지에 支店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東拓에 참여했던 株主회사들은 오늘 日本의 대재벌로 성장해 있는 것이다.

즉 三井, 三菱, 住友, 安全 등이 그 그룹들이었다.

1925년 12월 28일에는 羅錫疇 義士가 이 건물에 폭탄을 던져 그들의 큰 조직에 항거했다.

「……義士는 朝鮮殖産銀行 본점에서 나와 큰 길을 건너 東拓으로 달려갔다. 2시 10분경 正門에 이르러 수위실에 있는

日本人을 권총으로 쏘아 단발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뒤따라 올라오는 日本人 사원을 향해 두발의 銃彈을 쏘고 2층 土地改良部 技術課長室로 들어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課長 次席을 쏘아 넘어뜨리고 분밖으로 달아나는 과장을 따라나가 銃을 쏘았다……」⁴⁾

1945년 8·15해방이 되고 美軍政이 시작되자 新韓公司가 이 건물을 맡았다가 다시 歸屬同志管理局으로 넘어 갔고 1948년 国軍이 창설되면서 国防部 政訓局이 사용했다.

6·25 동란 때는 이 건물이 左翼系 人民報에 점령되었으나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는 内務部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4·19를 前後하는 자유당 말기부터 内務部는 또 다시 원성의 표적이 되었다.

때문에 内務部는 廳舍가 木造 건물이라 데모대로 부터 火災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다.

그후 内務部는 이 건물에서 철수, (1970) 건물은 韓國外換銀行에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1972년 초석건설이 이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아 東拓의 殘滓를 털어 내버렸다.⁵⁾

□註□

1. 1908년 12월 28일 설립. 1909년 1월

부터 업무를 개시한 國策會社였는데 日本 東京에는 本店을 두고 京城에는 支店을 두었던 것이다. (東洋拓殖會社法은 1908.8公布)

2. 李鎬善, “朝鮮殖産會社 建物 이야기,” 「建設」, 1985. 11, pp. 62~65.
3. 李鎬善, 앞 책 pp. 62~65 (이 건물은 1910년대의 서울에서 3대건물로 칭해졌었다.)
4. 「서울 600年史」, 第4卷, p. 99.
5. 別館은 1939년에 세워졌다가 1972에 헐렸다.

45. 聖 베네딕도 修道院

위 치: 혜화동 로터리 부근

착공년월일: 1909

준공년월일: 1911

설 계 자: Chizallet 신부

시 공 자: 중국인

건축 규모: 구조:

층별: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 존 상 태: 1950~1980년대 모두 헐림

「聖 芬道會 修道會」라고도 불리웠다.

1905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信敎의 자유를 공인받게 됨으로써 獨逸 Barbaria 지방의 修士들이 1909년 入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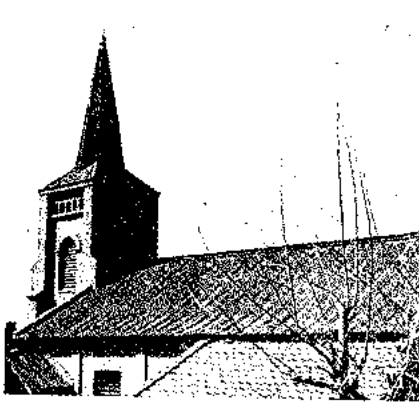
駱山の 북쪽 산줄기와 백동(柏洞)의 높은 丘陵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修道院과 學校 건물을 세움으로써



▲修道院 別館(現, 카톨릭敎理修道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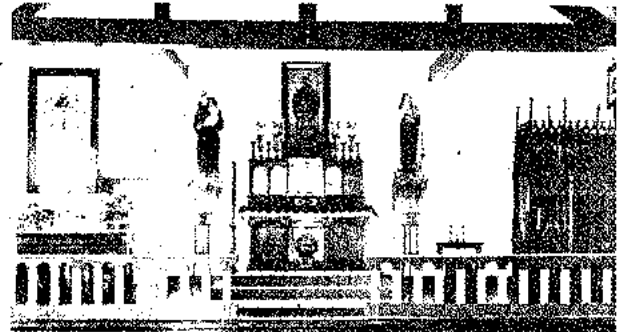


▲東星高 講堂(1986년 철거)



◀木工場(聖堂으로 改造)

木工場内部
(聖堂으로 改造)



시작되었다.

金壽煥 추기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柏洞(惠化洞)하면, 駱山 북쪽 기슭에 자리한 옛 芬道修道院의 一隅를 밟아 東小門 곁에서 50년 전에 탄생하여 藥峴(中林洞), 鍾峴(明洞)과 더불어 서울 三大 本堂의 하나라 정립하면서 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 하겠다…』²⁾

그들은 1911년 먼저 「崇德師範學校」³⁾를 개설하였다. 이는 韓國 최초의 사립 師範學校의 출발이었다. 이 學校는 聖職者 修士들이 敎育을 진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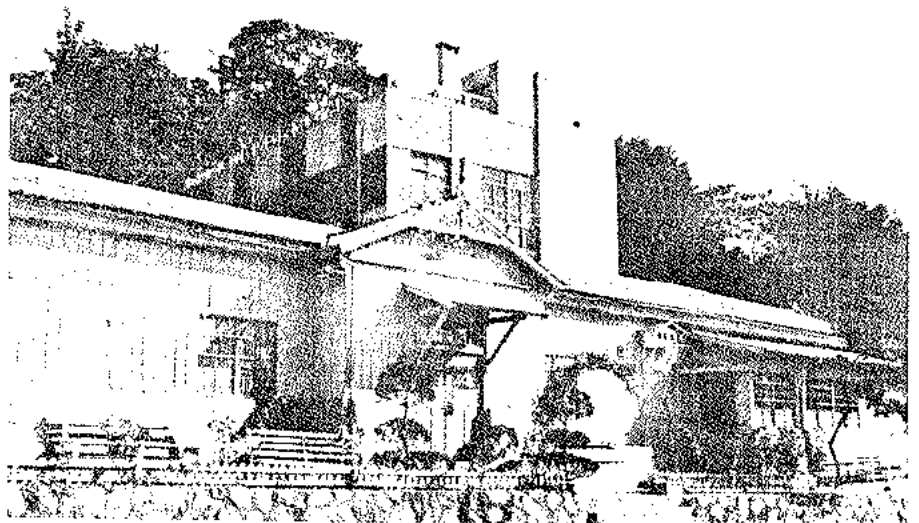
그러나 1913년 이 학교는 日帝의 탄압에 의하여 폐교되고 말았다. 그 후 이 師範學校는 敎명을 「崇工技術學校」로 바꾸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敎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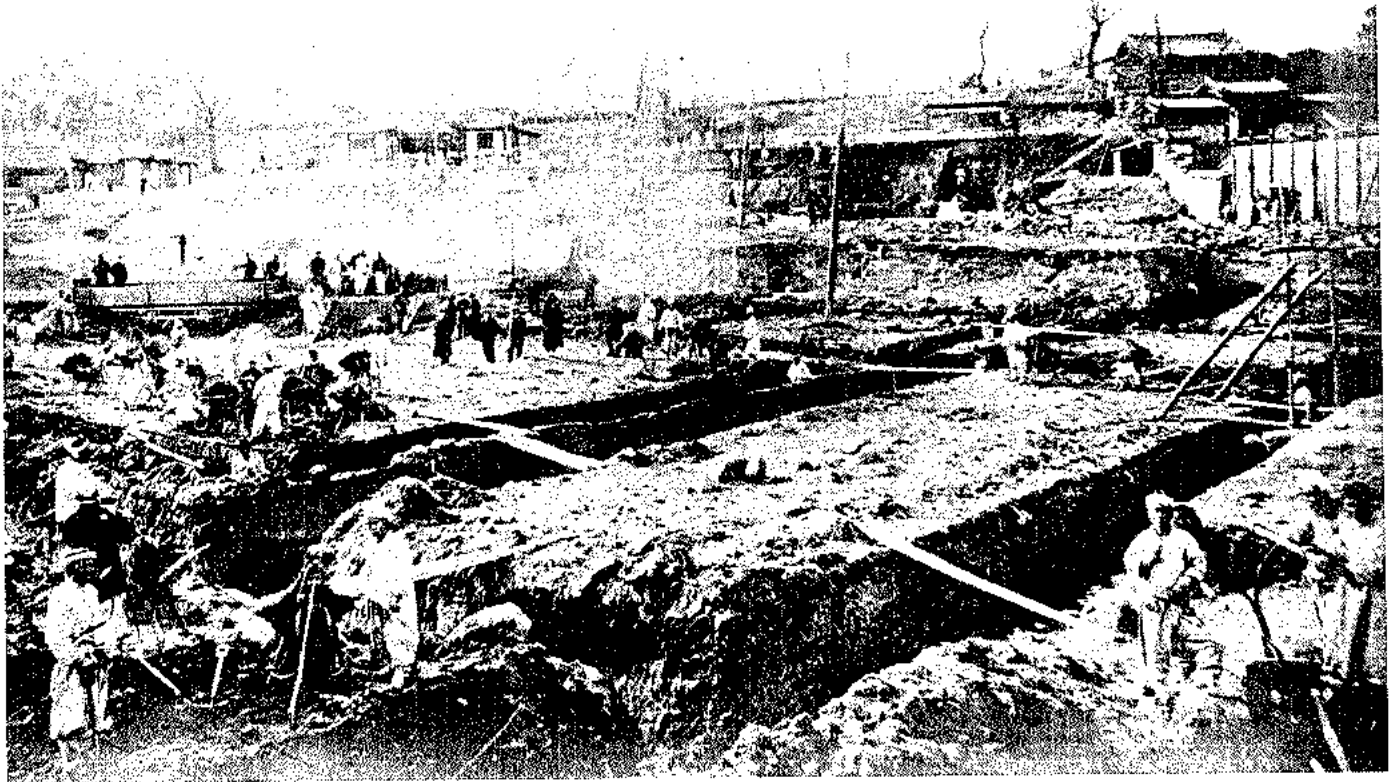
2층 洋式의 붉은 벽돌조 十字形 校舍 건물은 1914년에 준공되었다.⁴⁾ 그 외 單層의 木造 鐵工場(鐵工所)과 벽돌造 單層의 木工場(木工所)⁵⁾도 같은 해에 모두 세워졌다.



▲駱山기슭, 聖베네딕도 修道院일대(柏洞半世紀)

鐵工場 ▼





▲達城(離)宮 자리에 새 銀行을 세우고 있다(韓國銀行)

이 工場들은 모두 崇工技術學校의
실습 工場으로 세워진 것들이었다. 이
학교는 木工部, 鐵工部, 諸車部를
누어 훌륭한 개화 실업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특히 이 학교는 自動車의 제작과
수선으로 더 유명했었다.

그러나 이 학교도 1920년 역시 日帝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다.

그 후 1927년(10. 7) 惠化洞 本堂이
창설되고 같은 해(10. 18)에는
池베드로(Chizallet) 神父⁶⁾가
惠化洞 本堂의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면서 그에 의하여 건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는 1929년(9. 8) 木工所를 聖堂으로
급히 개조하고 미사를 드렸다.⁷⁾
聖堂을 신축하지 못하고 木工所에
鍾閣만 추가로 세웠던 이 聖堂 건물의
건축은 모두 中國人 기술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여기 鍾塔에 설치한 鍾은
France에서 주문하여 들여온 것이다.
神學校 건물도 새로 세워지게 되었다.
Chizallet神父는 건축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자신 이후 修道院 本 건물
左右에 修道院 別館 건물들을 세워
나갔다.⁸⁾

□ 註 □

1. St. Benedict(獨, 480~550)가
세운, 天主教 史上 가장 오래된
修道會로서 "Prayer and work"
라는 가르침으로 福音을 전파했다.
2. 「柏洞半世紀」, 1977, p. 38.
3. "崇信師範學校"라고도 함.
4. 崇信師範學校 建物は 1986년
10월경 헐렸다. (현재 東星高校
新校舍 신축중)
5. 그 후 聖堂으로 개조(註7참조),
「京郷雜誌」, 通卷23號, 1929. 9. 15,
「柏洞半世紀」, pp. 113~114
再引用.
6. 빠리 外邦 傳教會 소속 선교사.
1937년 6월 30일에 축성된 仁川
菴洞聖堂의 설계자이다.
7. 이(木工所) 聖堂은 1960년 6월
현재의 惠化洞 聖堂이 건립되기까지
31년간 聖堂으로 존속되었다.
(1957. 5. 23着工). 또한 鐵工所는
그동안 修士들이 사용해 오다가
司祭館으로 改造됐다.
8. 현재는 이 중 1개가 남아있는데
1943. 12. 25創設된 聖家 修女會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또하나의 別館
건물은 1972년 교사 신축 때
철거되었다.

46. 韓國銀行 本店

위 치: 남대문로 3가 110

착공년월일: 1907. 11

준공년월일: 1912. 1

설 계 자: 辰野金吾 + 葛西萬司

시 공 사: 清水組

건축규모: 구조: 석조 + 철골콘크리트조

층별: 지하 1, 지상 3, 옥상 D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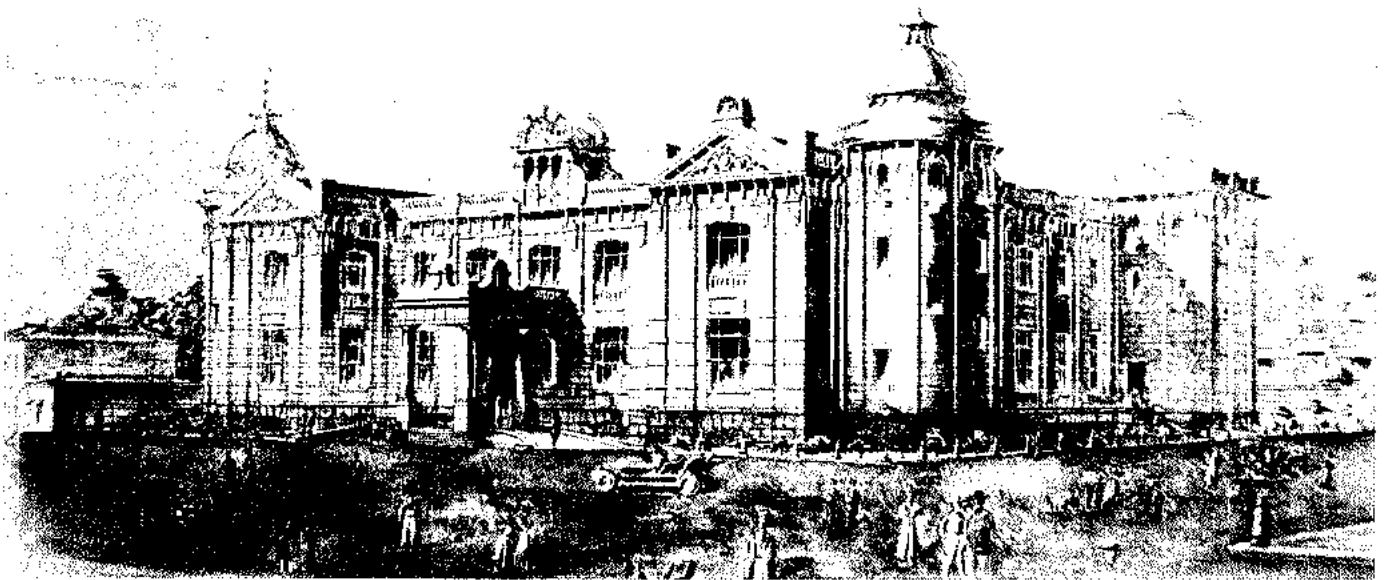
대지면적: 6806.7평

건축면적: 884.66평

연면적: 2295.46평

보존 상태: 사적 제280호

日本, 第一銀行 韓國總 支店은
日本의 본격적인 對韓 진출 정책에
따라 1905년 이후 부터 政府國庫金의
취급, 貨幣정리, 銀行券의 발행 등을
위임받았다.
1909년 朝鮮銀行條例가 公布됨으로써
韓國銀行은 創立되었고¹⁾ 本店
건물의 新築 계획도 세워져 日本의
建築家 다쓰노 강고(辰野金吾)에게
그 本店 설계가 의뢰되었다.
辰野金吾는 日本 工部大學²⁾의
제1회 졸업생(1879)으로 日本
明治期 新建築의 최고 리더였다.
그는 졸업 직후 英國에 건축유학(1880)



▲韓國銀行. 新築計劃透視圖(韓國史大系 7 권)

준공후의 本館(韓國銀行史) ▼

했고 歸日 後 東京帝國大學 建築科의 教授가 되었다(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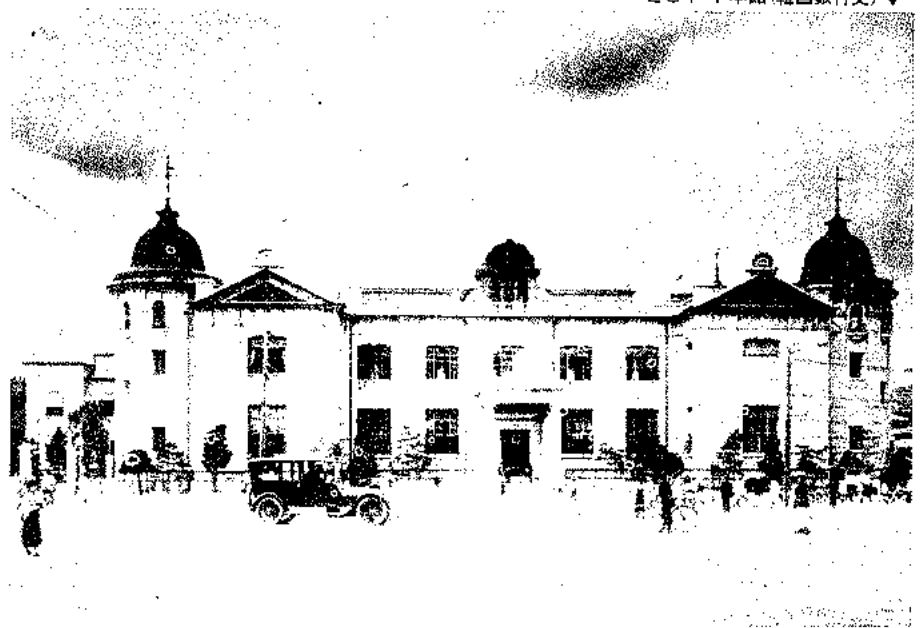
그 후 그는 日本第一銀行 本店(1888~1891)을 설계했다.

1903년 辰野는 葛西萬司(1863~1942)와 함께 「辰野·葛西 建築事務所」를 설립하고, 日本第一銀行의 京城支店(韓國銀行本店)을 공동 설계했던 것이다.³⁾ 韓國銀行의 자리에는 원래 達城(離)宮이 있었고, 큰 韓屋이 몇 채 남아 있었다.⁴⁾

日本第一銀行은 이 達城宮을 무난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新銀行舍를 세우기로 했던 것이다.

물론 日本 帝國主義者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양식있는 建築家가 그 場所性을 높이하고 다른 부지를 선택토록 유도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本館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석조와 철골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계획되었다. 辰野는 실용적인 기능 위주로 계획하기 보다는 오히려 權威的이고 勢力的인 외관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外壁은 東大門밖에서 채석한 화강석으로 마감토록 했으며 벽돌은 官立煉瓦製造所의 것을 갖다 썼다. 鐵材는 美國 카네기社제품과 英國, 日本의 것을 각각 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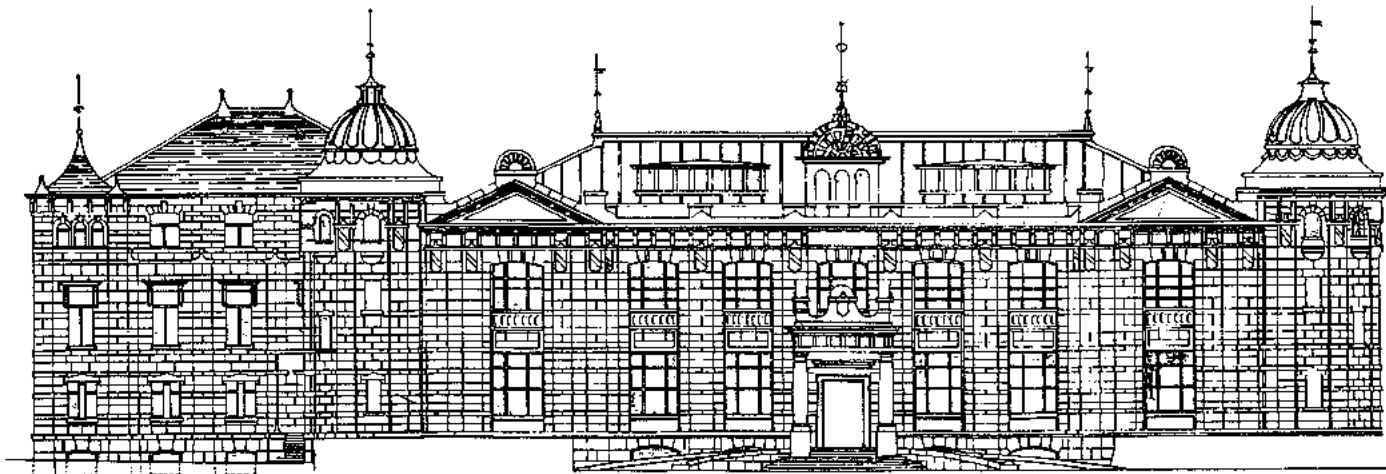


이 건물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 지붕부는 鐵骨, 鐵板으로 장식적으로 조립토록 했다. 연건평은 2,295.46평의 규모였다. 1907년 11월 착공하여 비교적 긴 5 년간에 걸쳐 시공하고 1912년 1월 준공되었다.⁵⁾ (定礎는 1909. 7. 11) 건물 자체가 花崗石의 表皮를 갖고 지붕에 Dome 류를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 공기는 길어진 것이었다. 건물은 벨기에의 城館(Chat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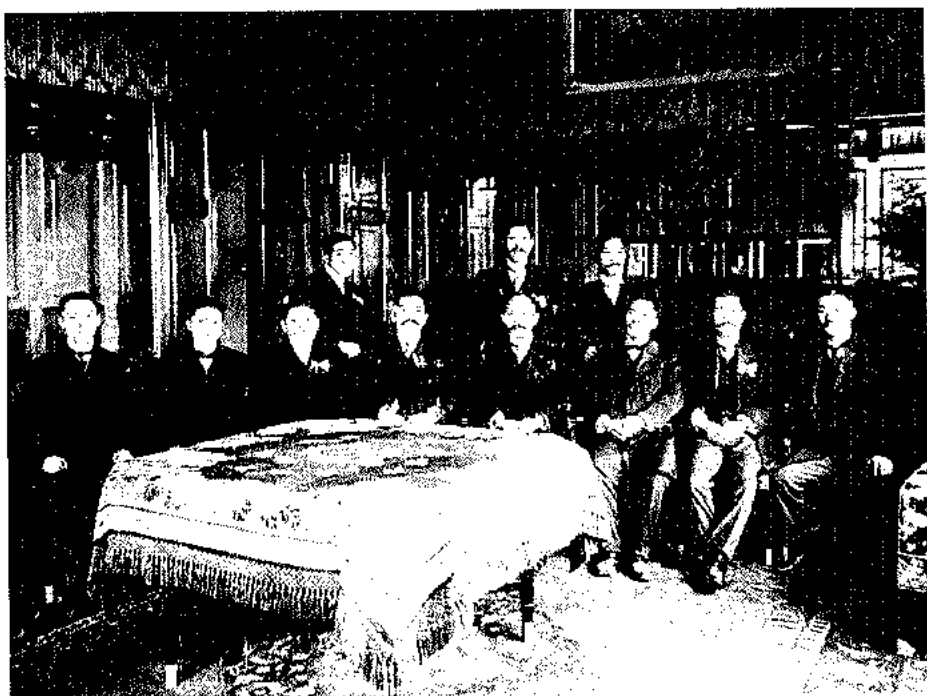
風으로 장대한 모습을 갖추고 威風堂堂하게 보이는 Renaissance 스타일을 택했다. 이 건물의 外觀 風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開化期의 물결을 타고 서투른 禮服 차림의 초라한 神士가 金時計줄을 늘어뜨리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⁶⁾ 고 했다.

어쨌든 이 本店 건물은 원래의 설계



▲正面圖(金錫模)



▲1912, 준공시의 工事關係者들(韓國銀行)

계획보다 많이 변경되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일부장식적 요소들이 생략되기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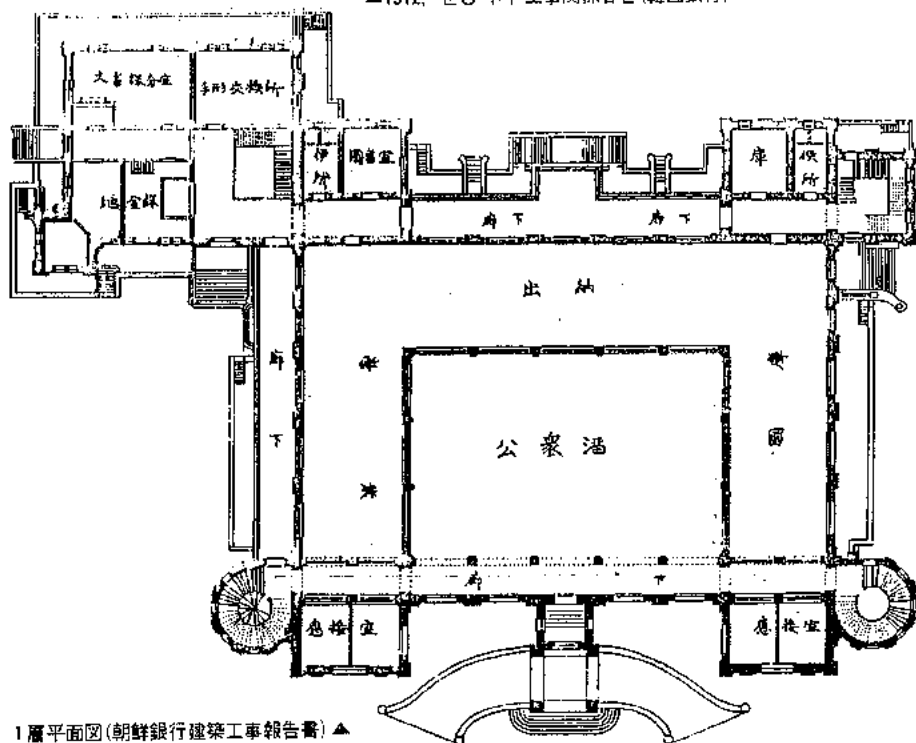
건물은 전면부가 左右대칭으로 되었는데 左右端과 측면의 모서리 3 곳에 각각 圓塔(계단실)과 Saracen風의 Dome 을 얹어는 종처럼 세워와 이 건물의 특징을 더해 주고 있다. Pediment 도 그 곳에 나란히 만들어져 中央의 Stupa 는 細工 디테일하여 屋塔 부분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假飾의 柱頭 부분은 紋章形으로 하여 설계자의 外來古風 선호적 취향을 보여주게 했다. (이때 그들은 頭飾을 하기 위하여 舊 韓國화폐들을 수거하여, 녹여 제작하는 鑄포도 서슴치 않았다) 平面은 우물 井字形으로 1층 中央 홀은 160평으로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中정으로 계획(公衆溜)되었고 地下에는 이 땅 최대의 金庫를 설치했다.

工事は 日本의 清水組에서 맡았다. 工事 기간중 임시건축부 工務長(現場 監理 및 상주 체류자)은 中村與資平이었다.⁷⁾

준공 후 韓銀 本館은 2차례의 火魔를 겪게 되었다.

첫 火災는 1945년 8.15해방 직전에 났다. 이때는 내부의 일부만 소실됐으나, 그 후 6.25동란으로 인해 폭격을 당하고 또한 불이나 지붕 부위와 지상층내부는 거의 다 파괴되었다. 表皮는 花崗石이었기에 상처를 받은 채 自立해 있을 수 있었다. 상처받은 本館은 1956년 5월부터 補修돼 1958년 10월 修築되었다.⁸⁾ 本館은 이제 주위의 舊 第一銀行 本店,



1層平面圖(朝鮮銀行建築工事報告書) ▲

新世界百貨店과 잘 어울려 一帶的
保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1981년 9월 25일, 史蹟 第280號로
지정되었다).

현재 本館 뒷편에 巨大한 新本館이
세워지고 있다. (1987. 12. 1 준공)
新本館이 준공되므로 해서 은행측은
이 건물을 原形으로 再復元, 장차
화폐박물관으로 再使用키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한다.

□ 註 □

1. 朝鮮銀行條例公布(1909. 7. 27).
創立은 11月
2.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學의 前身,
神代雄一郎, “偉人 辰野金吾”,
「建築文化(日本)」1962. 9.
3. 韓國銀行 本店의 設計圖와 建築
工事 報告書는 日本 TBC TV
職員이 所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韓國銀行측에서 本館復元을
위해 原圖面을 찾던중 當銀行
地下金庫에서 찾아내었다.)
4. 그 韓屋은 尚洞教會에서 수리
사용하였었다. (「尚洞教會史」 p.52).
5. 朝興銀行本店과 같은해 준공되었다.
6. 鄭寅國, “韓國의 現代 建築:
韓國銀行(5)”, 「서울評論」.
7. 清水組(清水滿之助) 京城出張所의
主任은 越山徹一, 藤井專之助
이었고 人事 건축부에는 谷民藏이
技士로 참여했다.
8. 本館 建物を 修築하기 위해 臨時
建築部 설치(1956. 5. 1~1959.
4. 2), 「韓國銀行史」, p.62.
이때 屋上部는 原形과 달리
復元되었다.

47. 朝興銀行 本店

위 치: 남대문로 1가 14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12. 7. 15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 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상 2, 옥상 D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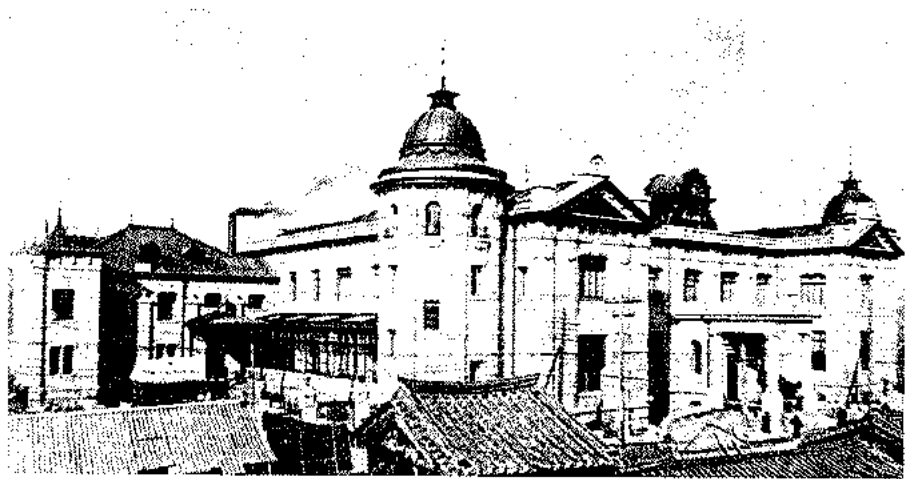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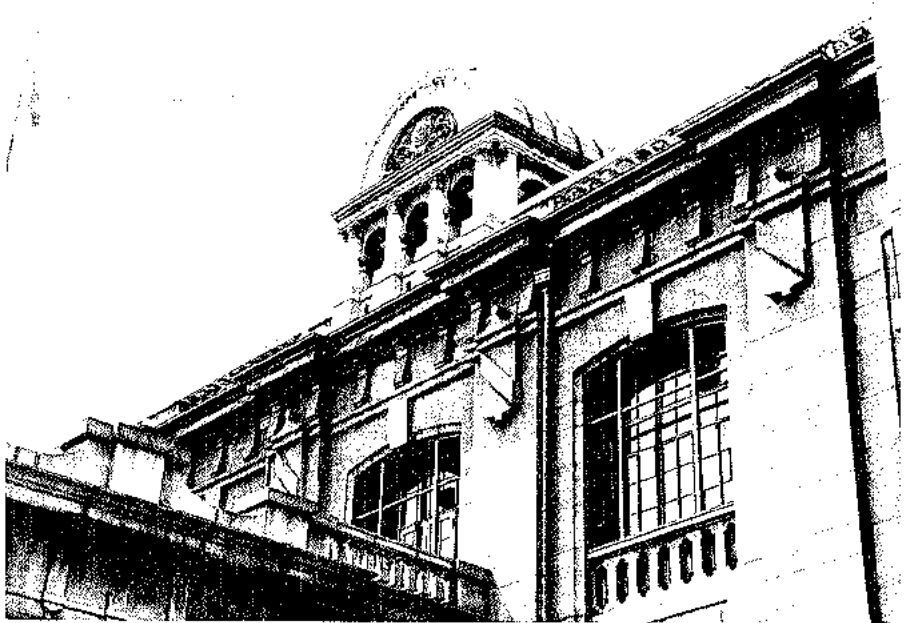
연 면 적: 750 평

보존 상태: 1963. 4. 16 전소

『...당시의 本店 건물은 지금에는 그후
聳立한 수많은 고층 건물 사이에 끼어서
기 존제조차 희미할 정도로 되어 있으나



▲南大門市場에서 본 銀行(韓國銀行)



▲Stupa部分, 保修時 原形과 다르게 되었다(무임)

당시에 있어서는 현 韓國銀行 石造
本館을 제외하고는 南大門路에 있어
최대 규모의 건물이었던 것인데 그것도
현재 營業部의 本館 건물뿐이었으며,
그후에 北隣 3층 新館을 증축하고 이어서
후면 인접 家屋들과 「食道園」跡 등 舊
건물을 추가 구입하여 基地를 확장하는
한편 여타 건물을 계속 증축하여 금일에
보는 마와 같은 廣橋 一角에 殿堂을
이루게 된 것이다...」¹⁾

朝興銀行의 출발은 1897년 설립된
漢城銀行으로 부터였다.²⁾

朝興銀行으로 합병 년전된 과정은
銀行史의인 분야이므로 여기서는
本店 건축에 관한 사항만 다루기로
한다.

朝興銀行 本店은 韓國銀行 本店과
함께 南大門路의 兩大 건물이 되었다.³⁾
이 本店은 1912년 7월 신축되어

업무를 개시 漢城銀行 本店으로
사용되었다. (着工日時는 不明)

1921년 11월 27일에는 北側에
인접하여 3층의 營業所를 증축했다.
따라서 朝興銀行을 本店과 營業所
건물이 나란히 섰던 것이다.

本店은 2층이었으나 층고가 높아
營業所의 3층 건물과 처마 높이를
같이 했다.

두 건물은 모두 벽돌조로 築造되었는데
本店 건물은 1층과 2층의 구분을
흰 띠석으로 들렀다.

그 띠석은 유난히 굵은 것이었다.

立面은 연속 Arch 窓과 작은 三角
Pediment로 조화를 주었다.

南側 모서리부분으로 몰아 올린 Dome部
는 4角形 平面 위에 Pendentive
처리했다. Lantern部分은 유럽 中世
式을 따랐다.



▲朝興銀行本店(右)과 營業所(左)(朝興銀行 60年誌)

사진의 左側에 보이는(北側) 부분이
營業所 건물이다. 本店의 前面 부분을
延長하는 線에서 3층으로 처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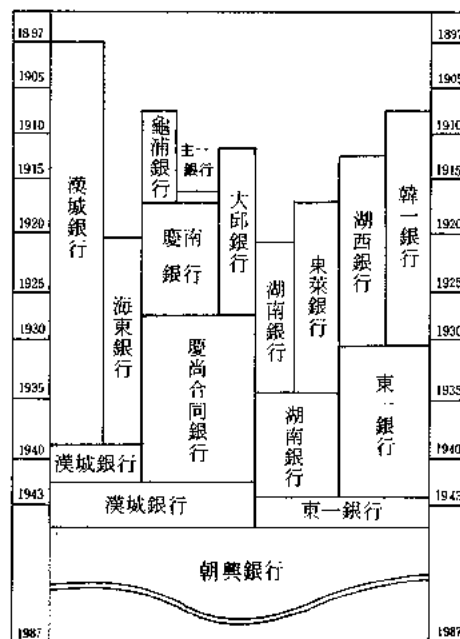
延面積 750평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아름다움은 각 부분의
디테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행히도 이 건물은 누전으로 1963년
4월 16일 全燒되었다.⁴⁾

이 난파의 韓國H報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0여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었으나
삼시간에 번진 불은 금융사상 稀有의
불상사였다.

붉은 벽돌집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 朝銀建物は 半世紀의 歷史를
안고 화염에 싸였다...』



▲朝興銀行變遷表



▲1963년 全燒되고 있는 銀行(韓國日報)

□註□

1. 「朝興銀行60年誌」p411.

2. 1897. 2. 19京城府 中部 廣橋
北川邊에서 漢城銀行本店
영업개시(표 참조).

3. 두 건물은 모두 1912년 세워졌다.
4. 그 자리에 현재의 朝興銀行 본점을
세웠다.

오디토리움의 音響設計

孫章烈

漢陽大學校教授, 工學博士

Report/ Acoustics Design of Auditorium
by Son, Jang-Ryul



일반적으로 음향설계는 잔향시간의 계산만으로 완료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본계획의 초기부터 종합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음향설계는 매우 전문화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다.

1. 머리말

하버드대학의 W. C. Sabine 이 이른바 Sabine 의 殘響理論을 발표한 것이 1895년으로 지금부터 90년 전의 일이다. 그후 건축음향학 및 건축음향 측정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室의 음향특성을 잔향시간으로 표시하는 Sabine 의 방법은 아직도 건축음향 설계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실내 음향에 관한 측정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실내 음향상태가 명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이 설계에 응용되어 음향설계 기술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측정기술의 진보결과 다음의 2가지 문제가 현재의 건축 음향학에서는 당면한 과제로 되어있다. 하나는 室의 음향특성을 잔향시간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많은 오디토리움에서의 측정결과, 같은 규모의 오디토리움에서 거의 같은 잔향시간을 갖는 경우에도 두 공간에서의 음향특성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오디토리움의 음향특성이 잔향시간 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러나라에서 잔향시간과 함께 실의 음향특성을 표시하는 척도를 찾기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척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건축음향학에서는 측정기술의 진보로 실내음향에 대한 물리적 특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음향특성에 관한 인간의 주관적 평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실의 음향특성은 사람의 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사람의 귀로 들은 결과는 개인차가 심하여 양적으로 이것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현재까지는 심리적, 통계적으로 처리한 것에 의해 실의 음향특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양적으로 표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 음향 설계기술은 크게 발전되고 있지만 前述한 것과 같이 설계의 중심은 아직 잔향설계이고 기본계획에서 잔향설계에 이르기까지 고려하여야 할 음향설계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설계과정에서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면 엄밀한 음향환경을 요구하는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음향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音響設計의 基本計劃

음향설계의 원칙은 적절한 음향환경을 기본으로하여 고려해야 한다. 음향환경은 음향설계의 기본계획, 즉 음향계획에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음향계획은 건축설계의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부지의 선정과 외부소음

오디토리움은 많은 사람에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교통소음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부지의 선정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면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부지 부근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振動源이 있는 장소는 좋지 않다. 이러한 소음원과 진동원에 대해서는 장래 이와같은 것의 예상 또는 계획의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외부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않는 부지를 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평면계획을 할때 오디토리움은 될 수 있는 한 부지안에서 소음원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고 또한 단일벽체로 오디토리움을 외부소음으로부터 격리하는것 보다도 그 중간에 복도, 로비, 매점, 화장실 등의 공간을 두어 음을 차단하는 방법 (그림1의a) 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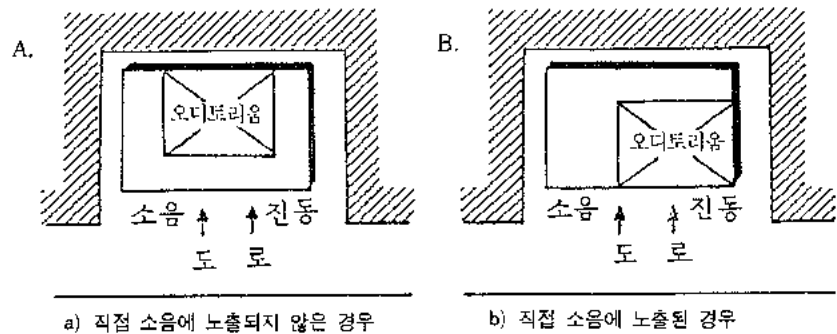
2) 換氣設備, 空調設備와 内部騒音

최근의 오디토리움에는 공기의 청정과 온습도의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 혹은 공기조화 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계실의 방음, 방진 덕트의 흡음처리 및 공기취출구, 흡입구의 발생소음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의 방음, 방진의 문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으면 완성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건물이 완성된 후에 공조설비 등의 기계류에 의한 내부소음의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때는늦은 것이며, 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는 소음문제에 대한 개수공사를 위하여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우기 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중에는 오디토리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연기가 객석에 충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악당의 천장에 배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배연구는 단면적이 크고 외부소음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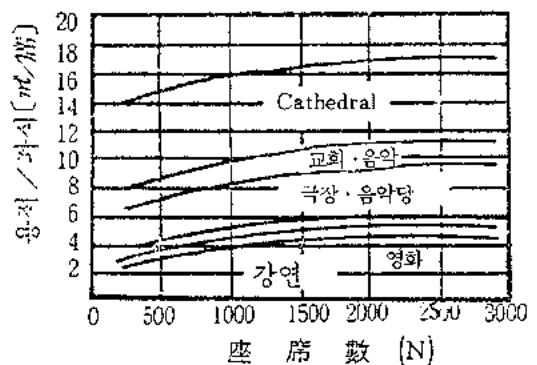
3) 오디토리움의 적절한 形態 및 容積

오디토리움이 양호한 음향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목적에 알맞는 적절한 容積과 형태가 필요하다. 평면적으로는 무대에서 관객석을 향하여 적당히 펼쳐지는 형태, 즉 음향적으로 바람직한 부채꼴 형태의 평면이 가능한 넓이가 필요하다. 장방형, 또는 정방형 평면의 경우에도 숙련된 음향기술자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오디토리움에서도 좋은 음향상태를 얻는 列가 없지는 않지만 음향설계 원칙으로서는 부채꼴形 평면을 갖는것이 좋다. 단면형에서는 천장의 형태와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필요한 높이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천장높이는 위에서 말한 容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層高는 4m이하이므로 오디토리움을 이와같은 빌딩안에 들 때에는 2 개층 만큼의 층고가 필요하게 된다. 오디토리움 용적의 기준이 되는 좌석당의 室容積을 [그림 2]에 나타낸다. 단, [그림 2]의 값은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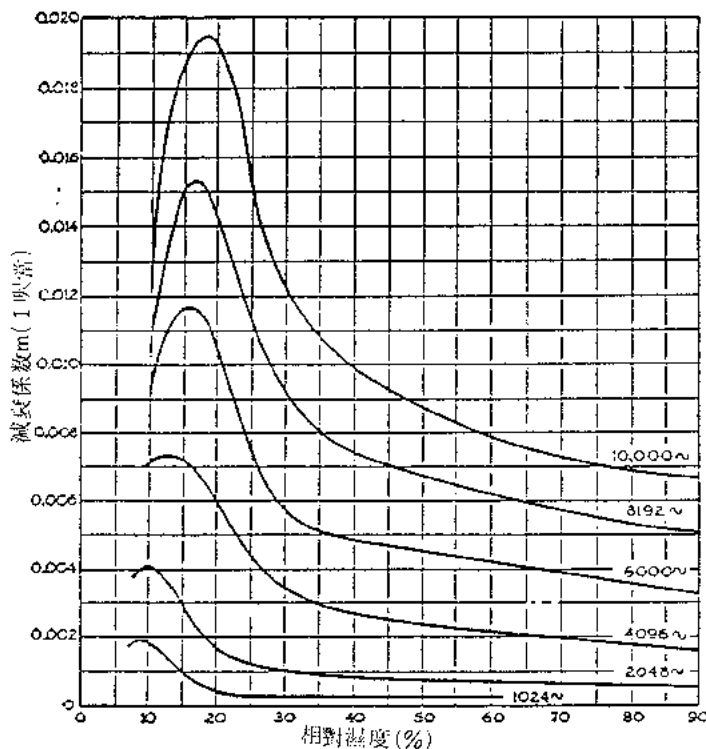
스튜디오 등과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오디토리움에 대한 값이다. 천장이 낮으면 客席後部까지 천장에 의한 반사음이 전달되기 어렵고, 용적이 작아지게 되어 짧은 잔향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벽면등에 흡음재료를 사용할 여지가 적어 결국 잔향시간은 실내에 있는 관객수에 지배되어 버린다. 반대로, 천장높이가 너무 높아 室의 용적이 [그림 2]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게 되면 殘響時間은 실용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길어지게 되고 적당한 잔향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흡음재료, 혹은 그밖의 마감재료를 넓은 벽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비경제적이다. 또한 냉난방의 부하도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비경제적이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큰실에서는 용적이 크게 되므로, 高音域(2000Hz 이상)에서 공기에 의한 吸音이 발생하여 잔향시간이 짧아진다(그림3 참조)



(그림 1) 평면계획에 의한 소음방지



(그림 2) 좌석당 室容積



(그림 3) 공기중 상대습도에 의한 음파의 감쇄계수 (20°C)

3. 室形態의 設計

室의 형태는 실내음향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하학적으로 整形인 正方形, 長方形 혹은 이차곡선의 丹, 타원, 포물선 등의 평면형과 단면형은 피해야 한다. 正方形 혹은 長方形의 平面과 斷面을 가진 4각형 室에서 높이H, 폭W, 길이L이라 하면, 그 室에서는 다음 式과 같은 고유진동수 f가 존재한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室에서는 p, q, r의 組合에 의해 무수한 고유진동수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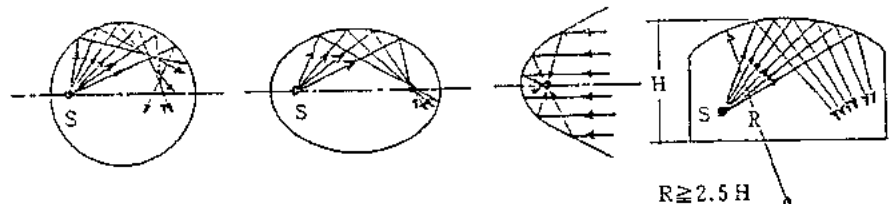
$$f = \frac{2}{C} \sqrt{\left(\frac{p}{L}\right)^2 + \left(\frac{q}{W}\right)^2 + \left(\frac{r}{H}\right)^2} \dots \dots (1)$$

단, C : 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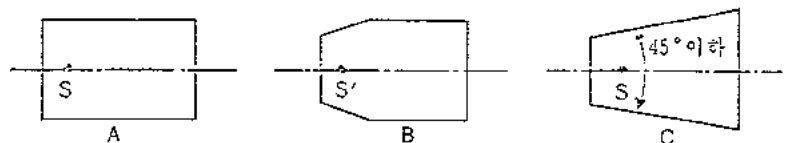
p, q, r : 자연수 0, 1, 2, \dots

고유 진동수는 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높이H, 폭W, 길이L 3변의 길이의 비가 1:1:1, 1:2:4와 같은 倍数比이면 어느 주파수 부근에 고유 진동수가 집중하기 때문에 3변의 비를 不等으로 하거나 倍数가 되지 않도록 선택하면 고유 진동수가 분산하게 된다. 고유 진동수가 존재하면 音源으로부터 나온

음 중에서 그 고유진동수 부근의 음은 서서히 진동하면서 감쇄한다. 따라서 그 주파수의 잔향시간만이 길어지게 된다. 이것은 파동이론적으로 생각하면 室中央의 공기를 空氣기둥으로 생각하여 그 空氣기둥의 진동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前述의 (1)式은 파동이론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고유 진동수의 존재에 의한 음향상태를 피하는 방법은 뒤에 서술한다. 평면이나 단면이 원, 타원, 포물선 등의 2차곡선으로 구성된 경우는 (그림 4)와 같이 焦點, 焦曲面을 만들어 음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된다. 이러한 凹曲面은 벽면의 일부일지라도 음의 집중이 일어나 좋지 않으며 반대로 凸曲面은 음의 확산에 유효하다.



(그림 4) 2차곡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焦點, 焦曲面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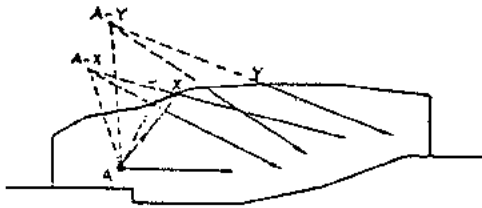
(그림 5) 오디토리움의 平面形

3. 1 平面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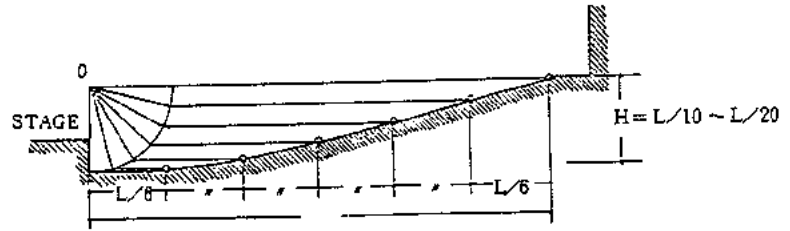
오디토리움의 平面形으로서 그림 5의 (a), (b), (c)와 같은 형이 많이 쓰인다. (a)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음향적으로 좋은 형은 아니지만,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며 사용되는 빈도가 가장 많다. 평행한 벽면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진동수의 문제도 있고, 음향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後述하는 바와같은 확산벽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b)는 (a)를 음향적으로 개선한 형이기는 하나 아직도 평행면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있다. (c)는 가장 바람직한 형이나 부채꼴의 퍼짐이 너무 커지면 음이 확산하기 때문에 45° 정도 이내로 한다. 어느 경우에도 마주보고 있는 正面壁과 後壁의 형태와 처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2 斷面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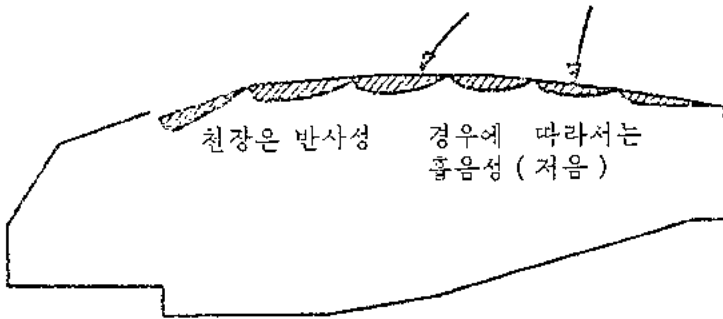
단면형이나 평면형은 모두 무대에서 발생한 음이 객석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단면형으로서 무대주변, 천장등의 반사면에 의해서 객석후방에 1회 반사음이 전달되어 직접음의 부족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단면의 결정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면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은 빛과같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고 벽면에 대한 虛音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기하광학의 수법을 이용한 자도에 의해서 음의 분포가 균일하도록 검토하여 단면형태를 정한다. (그림 6) (그림 4)도 음이 빛과 같다고 생각해서 작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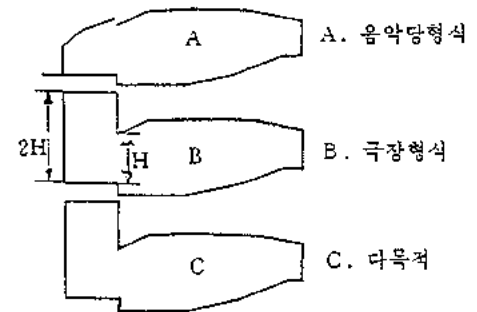
[그림 6] 기하학적 작도에 의한 반사음선도



[그림 7] 좌석곡선의 간이작도예(可視線의 경우)



[그림 8] 천장면의 확산체의 부착방법



[그림 9] 形式에 따른 무대부분

단, 이 경우 반사면의 크기는 음의 파장이상이 아니면 반사면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또한, 가능하면 2회 이상의 반사음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3. 3 各部의 設計

1) 바닥면(좌석곡선)의 결정

객석에 도달하는 직접음의 강도는 객석에서의 음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서도 직접음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좌석곡선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음에 대해서 요구되는 좌석곡선과 시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좌석곡선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시선에 관한 좌석곡선을 구하는 방법은 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부대의 인물과 물체가 앞사람의 머리로 인하여 시각적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좌석의 구배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는 簡便法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림 7]에 이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음의 경우 聽衆面은 상당히 높은 吸音面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청중면을 따라 음파가 전달될 때에는 高音域에서 감쇄가 크므로 시선으로 구하여진 좌석곡선은 음향적으로 최저의 구배로 생각하고 될수 있는한 그보다 급한 구배로 하는 것이 좋다.

2) 天 障

천장의 형태는 이미 설명한바와 같으나 무대 부근에는 가능한한 반사성으로

하고, 후방은 잔향시간의 계산결과 차이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흡음성으로 하여도 좋으며, 가능한한 저음역을 흡음시키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확산성을 지니도록 한다.

또 천장의 형태로서는 파형 등의 확산성으로 한 경우에 좋은 결과가 얻어지나, 이 경우는 기하학적 반사음선도의 作圖에 의한 천장의 형태를 흉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무대 주위

무대는 음원이 있는 장소로서 무대 전체를 음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무대는 가능한한 반사성으로 하여 객석에 충분히 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산체를 배치한다. 그러나 음악연주자는 자기의 음, 혹은 다른 연주자의 음을 들으면서 연주하므로 무대상부 또는 무대 옆벽의 반사를 이용하여 어느정도 무대에도 음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극등을 위하여 흡음성의 막을 많이 사용하면 객석에서의 음압은 저하된다. 또 연극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는 무대상부에 [그림 9]와 같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반사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객석에서의 음압저하는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극장의 음향설계는 이러한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음악과 연극병용의 홀은

음향적으로 어중간하여 쌍방에 좋은 음향상태를 얻기 위하여는 가동반사판과 가변 흡음장치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 무대의 前端에서 무대벽까지의 깊이는 8m 정도로 하지 않으면, 객석내에서 에코우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잔향시간을 計算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무대부분의 용적은 제외하고 무대와 객석사이의 면(프로세니엄 아취부분)에 대한 흡음률을 가정한다.

4) 側 壁

측벽은 무대로부터의 음을 반사하는 무대근처 부분, 後壁에 근접한 흡음성의 부분과 양자의 중간에 있는 중간 정도의 흡음성을 가진 부분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측벽은 평탄하게 넓은 면적을 가진 간단한 부분이며, 또한 後部를 제외하고는 흡음성도 낮으므로, 비록 측벽이 서로 평행하지 않은 부채꼴 형태인 평면의 경우에도 확산벽으로 하는 편이 좋다. 또 객석 後部에서는 고음역의 음압이 저하하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음역은 흡음과다가 되기 쉬우므로, 측벽에서는 저음역을 흡수하고 고음역을 반사하는 유공판과 슬릿(Slit) 또는 관진동 등에 의한 공명형의 흡음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 흡음성은 다음에 서술할 잔향시간의 계산결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後壁

후벽은 무대의 반대편에 있어 에코우 발생의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고도의 흡음성으로 하고, 잔향시간의 계산결과 흡음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림10과 같이 경사벽으로 하든가 확산벽으로 하여 에코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전체의 형태로서 凹곡면은 피하도록 한다. 이는 무대측이 반사성 재료이고 후벽을 凹곡면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曲率의 중심이 무대보다 훨씬 후방으로 가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플러티에코우(多重反響)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6) 발코니

발코니는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음향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2층 객석 후방에서는 시각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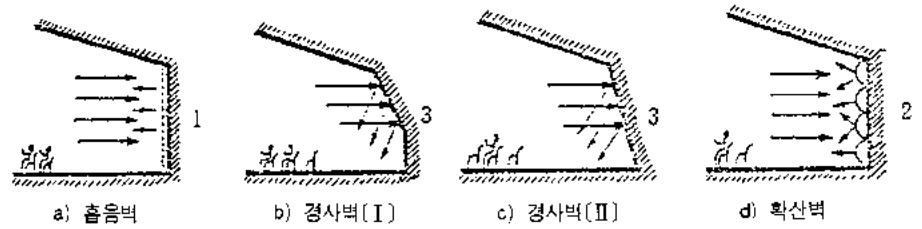
또 2층객석의 아래부분은 음향적으로는 조건이 가장 불량한 장소로 되기 쉽다.

따라서 1층 관람석 하부천정은 반사성으로 하여 음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이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돌출부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발코니 하부는 홀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개구부에서 흡음률을 가정하여 홀 전체의 잔향시간을 계산하거나 이 부분만 별개로 잔향시간 계산을 한다. 발코니 하부의 후벽부분의 처리도 앞에서 설명한 후벽에 준하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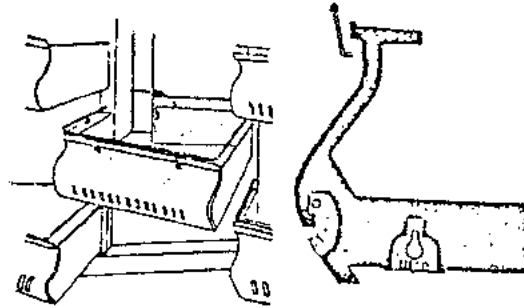
7) 擴散體 效果와 配置

확산체는 고유 진동수의 분산과 에코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서로 평행한 2개의 벽면, 흡음성이 낮은 큰 벽면등에 사용되며 무대주변, 측벽, 천장, 후벽과 그밖의 모든면에 적당히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음을 확산시키면 오디트리움의 객석내에서 음의 방향감이 없어지게 되므로 확산면, 흡음면, 반사면과 각각의 배치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확산체의 형태와 크기는 원통형, 山형, 돌니형, 球형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흡음재의 작은 조각을 뿌려서 붙이는 방식도 있다. 또는 벽면에 조각을 하여 설치하기도 하며, Box席(캐노피)을 뒤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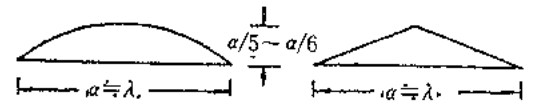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이 형태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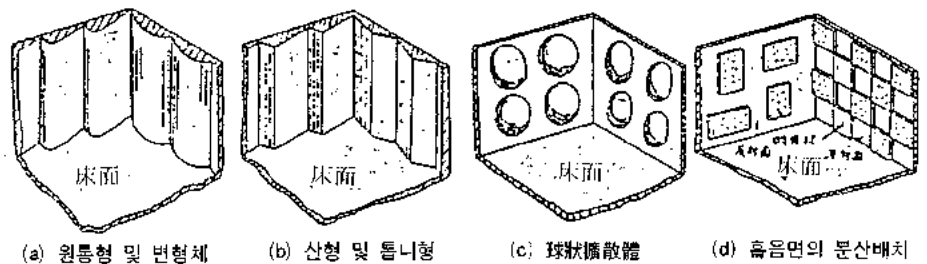
(그림10) 後壁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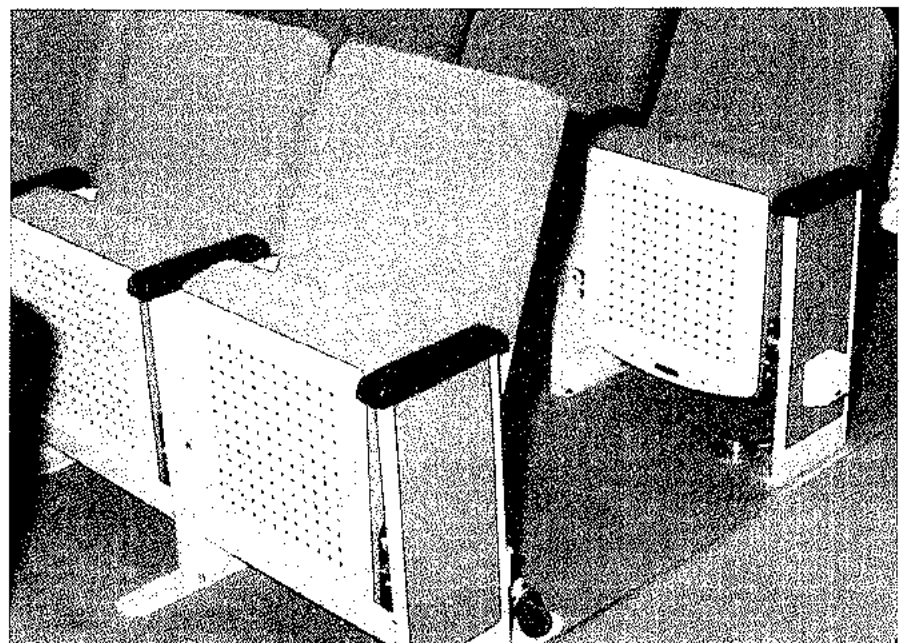
(그림11) 로열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의 박스(Box)席



(그림12) 확산체의 크기



(그림13) 擴散體의 종류와 그 배치



(그림14) 흡음재 위 유공판으로 마감한 객석외자

확산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크기는 [그림 12]와 같이 확산체의 기본크기를 확산하는 최저주파수의 파장정도로 하고 그 높이는 기본크기의 1/5~1/6정도로 한다. [그림 13]은 확산체의 종류와 배치 예를 나타낸다.

8) 의 자

객석용 의자는 오디토리움의 음향상태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 의자가 목재로서 흡음성이 낮으면 청중의 증감에 의하여 室의 잔향시간이 변화하여 모처럼 잔향시간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다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의자를 사람의 흡음력에 맞추어서 설계하면, 실내의 잔향시간은 사람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앉지않은 상태에서 의자의 座席이 세워져 있을때 좌석의 밑판에 유공판을 설치하고 가운데에 흡음재를 넣어 사람의 흡음력에 맞추는 것이 보통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림 14참조] 두꺼운 천으로 감싸은 의자는 흡음성이 있으나, 레자로 감싸은 의자는 흡음력이 작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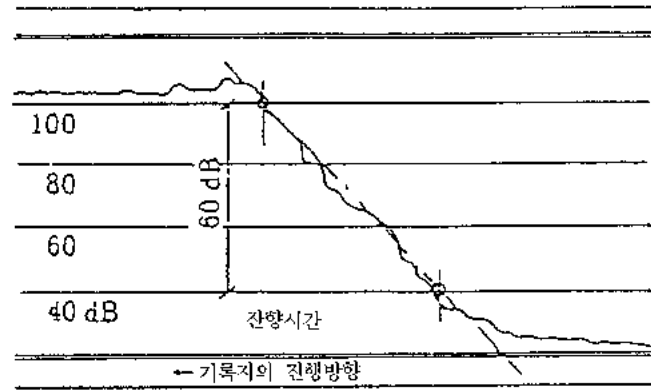
이상에서 형태 및 기타 各部의 설계법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형태에 관하여는 기하광학적 작도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검토하지만 리플탱크(Ripple Tank) 등의 2차원적인 모형실험이나 3차원의 모형실험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殘響設計

건물 내외의 소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음향적으로 양호한 오디토리움의 형태가 결정되면 잔향시간을 계산하고 흡음재료의 배치를 고려하여 음향설계를 완료한다.

1) 殘響時間

극장에서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악기에서 나온음이 벽에 몇번씩이나 반사하여 연주가 끝난후에도 실내에 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음원에서 발성이 중지된 후에도 음이 실내에 남는 현상을 잔향(Reverberation)이라 하고,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잔향시간(Reverberation Time)을 사용한다. 잔향시간이란, 실내의 음원으로부터



[그림 15] 잔향시간의 정의

소리가 끝난후, 실내에 음의 에너지 밀도가 그 백만분의 일이 될때까지의 시간, 즉 실내의 평균 에너지 밀도가 초기치보다 60dB 감소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이것은 실의 용적과 벽면의 흡음력에 따라 결정되며 실험상태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주파수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하고, 일반적으로 500Hz를 기준으로 한다. 실의 사용목적 및 용적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잔향시간을 최적잔향시간 또는 설계목표 잔향시간이라고 하며 용도에 따른 최적잔향시간과 실용적과의 관계는 Knudsen-Harris, Beranek, Ingerslev Brüel 등에 의해 여러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2) 殘響設計의 順序

- ① 설계도로부터 오디토리움의 표면적과 室容積을 구한다.
단, 이때에 무대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며, 무대와 객석부 사이의 경계면, 즉 프로세니움부분의 면적을 객석에서 본 무대의 면적으로 한다.
- ② 용적 V를 정원수 N으로 나누어 V/N이 [그림 2]에서 구하여진 값에 비례하여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다.
- ③ [그림 16]은 500Hz에서 各室容積과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최적잔향시간을 나타낸다. 이것을 사용하여 이미 구한 용적 V와 주어진 사용목적으로부터 최적잔향시간 T_0 를 구한다.

또 최적잔향시간의 주파수 특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16]에서 500Hz에서의 T_0 를 1로 한 잔향시간 비율(또는 殘響時係數)을 주파수마다 구하여 이것에 T_0 를 곱하여 구한다.

[그림 17]에는 최적잔향시간의 주파수 특성은 500Hz 이상에서는 평탄하며, 500Hz 이하에서는 긴 것과 평탄한 것과의 폭을 갖고있다. 이것은 음악을 주로하는 경우는 저음역을 길게하고 강연등과 같이 회화를 주로 할 때는 평균적인 특성을 갖도록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강당과 같이 다목적인 경우는 500Hz 이하에서 중간값을 취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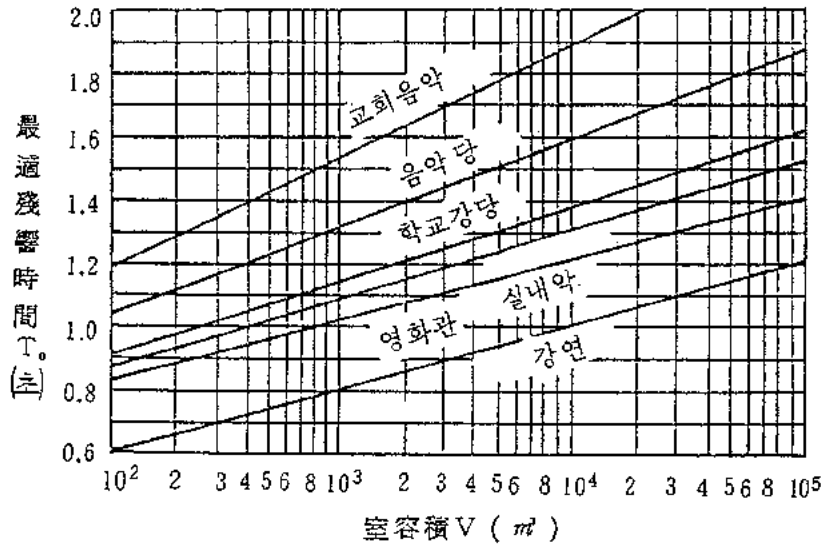
- ④ 최적 잔향시간에 필요한 흡음력
최적잔향시간을 얻는데 필요한 흡음력은 Eyring의 式에서 평균 흡음률을 구하고 이것에 표면적 S를 곱하여 구한다.
Eyring의 式은 다음과 같다.

$$T = \frac{0.161\bar{V}}{-2.3S \log_{10}(1-\bar{\alpha})} \dots\dot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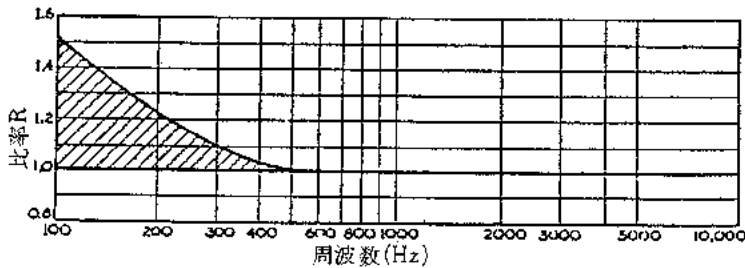
단, S = 실내표면적 = 실내 각 마감면의 합 [m^2] ($S = \sum S_i = S_1 + S_2 + S_3 + \dots + S_i$)
V = 실내 진용적 (무대부분 제외) [m^3]
 $\bar{\alpha}$ = 평균 흡음률

$$\bar{\alpha} = \frac{\sum S_i \alpha_i + \sum a_j}{\sum S_i} = \frac{1}{S} [(S_1 \alpha_1 + S_2 \alpha_2 + \dots + S_i \alpha_i) + (a_1 + a_2 + \dots + a_j)] \dots\dots(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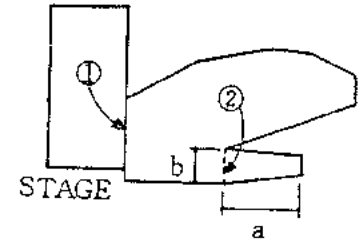
α_i = 면적 S_i 인 마감면의 흡음률
 a_j = 실내在室者, 의자등의 흡음력 (m^2)



(그림16) 500Hz 음에 대한 최적잔향시간과 실용적



(그림17) 최적잔향시간의 주파수특성



①무대개구부 ②발코니하부 개구부

(그림18) 무대 및 발코니하부 개구부

(표 2) 흡음률·흡음력 일람표

No.	場所 材料	면적 S, m^2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a	Sa	a	Sa	a	Sa	a	Sa	a	Sa	a	Sa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計		$\sum Si$	$\sum Sa$		$\sum Sa$		$\sum Sa$		$\sum Sa$		$\sum Sa$		$\sum Sa$	

(표 3) 흡음력·평균흡음률 일람표

청 중 (%)	125Hz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Sa+Na	$\bar{\alpha}$	Sa+Na	$\bar{\alpha}$	Sa+Na	$\bar{\alpha}$	Sa+Na	$\bar{\alpha}$	Sa+Na	$\bar{\alpha}$	Sa+Na	$\bar{\alpha}$
0												
66												
100												

(표 4) 무대 개구부의 흡음률

f (주파수)	125	500	2000
a	0.30	0.40	0.50

(표 5) 발코니하부 개구부의 흡음률

a/b	f (주파수)		
	125	500	2000
2 1/2	0.30	0.50	0.60
3	0.40	0.65	0.50

최적 잔향시간 T_0 와 S 및 V 를
(2)式에 대입하여 구한 $\bar{a}$ 와 S 의
곱을 A 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 S\bar{a}$$

단, A 는 벽면만으로서 a_j 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 ⑤ 의자 및 청중의 흡음력
수용정원을 N 으로 하면 滿員인
때의 청중수는 의자의 수와 일치한다.
 a_1 및 a_2 를 각각 청중 1人 및 의자
1 개당의 흡음력으로 하고, 또
청중이 의자에 앉은때는 의자의
흡음력은 청중의 흡음력으로 바뀌어
생각한다.
따라서 청중의 변화에 따라 청중과
의자의 흡음력은 <표 1> 과 같이
변화한다.

(표 1) 청중과 의자의 흡음력

	청중의 흡음력	의자의 흡음력
청중 0%	0	Na_2
청중 66%	$0.66Na_1$	$0.34Na_2$
청중 100%	Na_1	0

N : 좌석수

a_1 : 청중의 흡음력

a_2 : 의자의 흡음력

즉, 청중과 의자에 의한 흡음력은
<표 1>의 흡음력의 합으로 된다.
이 합을 Na 로 나타내면,
 $\sum a_i = Na$ 로 된다.

- ⑥ 벽면에 필요한 흡음력
최적잔향시간 T_0 를 구하기 위하여
벽면에 필요한 흡음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left[\begin{array}{c} \text{최적 잔향시간에} \\ \text{필요한 흡음력}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청중 66\%인 때의} \\ \text{흡음력} \end{array} \right] \\ = \text{벽면에 필요한 흡음력}$$

따라서 최적잔향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벽면에 필요한 재료의 평균
흡음률은 다음과 같다.

$$\left[\begin{array}{c} \text{벽면에 필요한} \\ \text{평균 흡음률} \end{array} \right] = \frac{[\text{벽면에 필요한 흡음력}]}{[\text{전표면적}]}$$

- ⑦ 사용하는 흡음재료의 흡음률
위와같이 벽면에 필요한 평균
흡음률이 구해졌으나 이것은 바닥과
기둥, 혹은 반사면등의 경질
마감재료의 흡음률도 포함되어 있으며,

$$(\text{흡음재료의 흡음률}) = \frac{[\text{벽면에 필요한 흡음력}] - [\text{고정된 흡음력}]}{[\text{전 표면적}] - [\text{고정재료의 면적}]}$$

이들 재료의 흡음률은 대체로
일정하고 매우 작은 값이므로,
면적에 다소의 변동이 있어도 흡음력
자체로서 큰 변화는 없다.
따라서 실내마감의 면에서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재료의 고정된
흡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잔향시간을 최적잔향시간으로
근사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흡음재료의
흡음률은 위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⑧ 흡음재료의 결정과 계산
이 단계까지 계산이 진행되면 꽤
구체적으로 사용재료의 흡음률을
알게 된다. 이 흡음률과 재료
면적으로부터 사용재료와 그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표 2> 와 같이
계산한다. 물론 <표 2> 의 계산은
실내의 전 마감면에 관한 것으로
 $\sum Si = S$ 로 된다.
<표 2> 에서 벽면에 의한 전 흡음력이
구해지므로 이것에 <표 1> 의
 Na 를 더하여 양자의 합을 전표면적
 S 로 나누어 $\bar{a}$ 를 구한다.
이 계산은 <표 3> 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 ⑨ 잔향시간의 계산
<표 3> 에서 구한 $\bar{a}$ 에 의하여
Eyring의 式으로 잔향시간을
계산한다. 계산결과를 최적잔향시간과
비교하여 차가 클 때는 일치하도록
재료 혹은 재료의 면적을 변화시켜
<표 2> 이하의 계산을 반복한다.
또 室의 용적이 클 경우는 공기에
의한 고음역 (200Hz 이상) 의 흡수를
검토한다.

$$T = \frac{0.161V}{-2.3S \log_{10} (1 - \bar{a}) + 4mv} \dots\dots(4)$$

(4)식은 Kundsens의 잔향식으로
(2)式과 다른점은 분모에 $4mV$ 가
있는 것이며, m 은 공기에 의한
1m 당 감쇄계수로 실내의
상대습도를 알아서 [그림 3] 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 ⑩ 흡음재료의 배치 및 기타

흡음재료는 앞에 서술한 바와같이
무대주변에는 반사성의 것을, 後壁
부근에는 흡음성의 재료를 배치하도록
한다. 무대 개구부 및 발코니하부
개구부의 흡음률은 [그림 18] 에
나타낸 위치에서 <표 4> 와 <표 5> 의
값을 사용한다. 중간 주파수는
직선적으로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설계 도중에서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설비관계 및 구조관계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방송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기관계의
기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도중에 음향설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또 음향설계에 큰
오류는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음향실험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관계자와도 충분히 연락할 필요가
있다.

5. 맺 음

오디토리움의 음향설계는,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같은 방법이나 순서로
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음향설계는
잔향시간의 계산만으로 완료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본계획의 초기부터
종합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음향설계는 매우 전문화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술한
사항을 충실히 지키면서 꾸준히 순서에
따라 실수없이 진행하여 가면, 특히
엄밀한 음향특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변칙적인 방식의 채용은
피하도록 하며 음향적으로 그 효과가
불명확한 형태와 재료를 선택하고
싶을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風水地理說과 住宅 設計(2)

朴時翼

工學博士, 日新종합건축사사무소

Report / Feng-Shui Theory and Architectural Design
by Park, Se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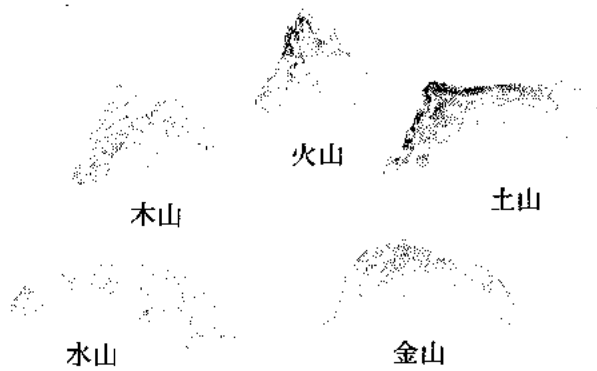
1. 陰宅과 陽宅

풍수지리설은 오랜기간을 걸쳐서 현재까지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수지리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은 크게 陰宅과 陽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陰宅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땅에 묻는 자리 즉, 墓地를 말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설이 墓地의 선정과정의 기본이론으로 적용되는 원인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땅에는 각각의 지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墓地는 그 地勢에 따라서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곳과 또는 生氣가 부족한 곳으로 분류되어, 가급적이면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상적인 墓地가 된다. 그리하여 가령 地下에 물이 흐르거나 또는 그속에 물이 고여있는 묘지는 전혀 生氣가 없는 곳으로 이러한 땅은 墓地로서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다. 墓地로서 生氣가 없는 땅은 비단 위에서와 같이 물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가 시신을 감싸고 있게 되는 곳이나, 뱀 기타 여러가지 生物들이 들어가는 곳, 또는 바람이 통행하는 곳 등 매우 여러가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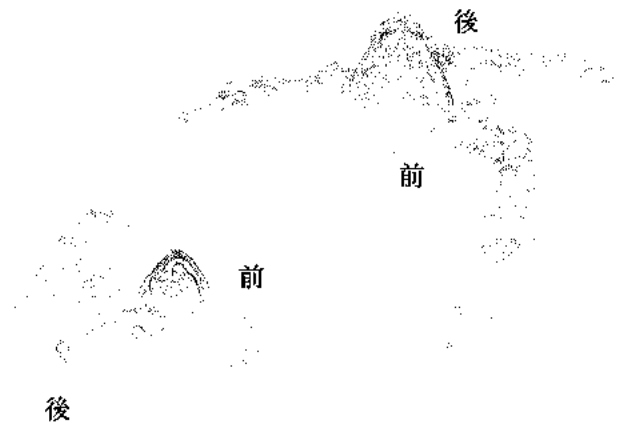
좋지않은 현상이 발생하여 시신의 부패과정이 까맣게되거나 추악하게 변화되는 곳이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에서 明堂 또는 穴이라고 말하는 이상적인 墓地는 그 속에 물이 고이거나 또는 전혀 흐르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나 뱀 등의 生物은 물론 바람도 없는 곳으로 그 내부가 매우 안정되고 따뜻한 기운이 항상 시신을 감싸고 있어서 시신의 부패과정도 매우 깨끗하며 노랗게 변화되는 위치를 말한다.

그런데 땅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내부의 성격이 이와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地中の 生氣 有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누구나 죽게 마련이어서, 죽은 사람의 앞에서는 故人の 德을 칭송하고 경배하며 그의 시신이 편안하게 잠들어 쉴수 있게 하는 마음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故人을 장사지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故人이 묻힐 장소에도 신경을 쓰게 마련이며, 따라서 가급적이면 좋은 터를 구하여 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故人이 편안하게 쉬는 곳 즉, 墓地는 바로 죽은 者의 집(宅)이 되어 이곳을 일반적으로 陰宅이라 하며 이 陰宅의 위치선정에는



〈그림Ⅱ-1〉山の五行



〈그림Ⅱ-2〉山の前後

풍수지리설의 이론을 적용하게 된다.
(陰宅에 대한 자세한 이론해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와같이 풍수지리설은 墓地 즉
陰宅의 위치선정에 적용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택이나
건물 즉 陽宅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그 이론을 면밀히
분석하면 현대의 주택설계에도 많은
응용이 가능하여 이상적인 건축공간
창조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것은 풍수지리설의 이론이
비단 땅 속에 흐르는 기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표면에 흐르는
空氣에 대하여서도 역시 生氣의
理論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생활은 모두가 地表面
위에서 이루어 지게 되는 까닭으로 그
생활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地上에
분포되어 있는 자연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까닭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生氣도 역시 地中보다는 地上에서
직접적으로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활이 평화롭고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환경에 있어서
生氣가 많이 모여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이 곳을 주거공간으로 정하여 생활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된 生氣를 보다 많이
취득할 수 있어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生氣가 많은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는 地勢를 살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크게 地勢의
해석에 대한 이론과 음양오행설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地勢에 대한 이론은 地勢를 구성하는
지리적인 조건으로서 山, 水 및 이들의
方位로 구별하게 되는데 이들 山, 水
및 方位를 지세를 구성하는
三要素라고 말한다.

2. 山의 형태와 영향

풍수지리설에 「山清人秀 山濁人遇
自然之理」 즉 「山이 좋으면 우수한
인재가 나고 山이 나쁘면 우매한
인간이 나는 것은 自然의 이치다」라고
말하여 山과 인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地勢와 人間과의
관계는 마치 인간의 출생이 그의
父母와 祖宗들의 영향으로 태어나게
되고 성장되는 것과 같이 自然의
生氣가 인간을 낳고 성장시키는
과정과 같은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서
지세를 살피는 과정은 그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山, 水 및 방위등의
각각의 형태와 이들 상호 조화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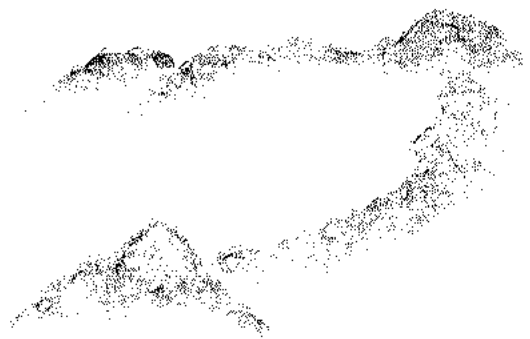
이들 지세의 三要素중에서 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세의 분석은 山의
성격과악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여기에 山이라고 함은 一般的으로
부르는 높은 산을 말함은 물론이지만
높은 山이 없는 평탄한 대지에서는
평지보다 조금만 높아도(약 3cm)
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地上에는 각 지역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山이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山이 서로 모양이나 크기 및 土質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山의 영향도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들
많은 山들의 공통적인 형태를 분류하여
이에 따르는 성격을 분석한다.

3. 五行山の 구별과吉凶

풍수지리설의 이론으로 각 山의 특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五行山에 의한 분류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 할수 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도 이 五行山에 관한 이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五行山은 山의
형태를 음양오행설의
五行(水火木金土)으로 분류한
水山, 火山, 木山, 金山 및 土山을



〈그림 II - 3〉 龍의 동배



〈그림 II - 4〉 山의 進行 · 龍

말하며 冊에 따라서는 水星, 火星, 木星, 金星 및 土星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天上의 五星으로부터 그 형상이 地上에 나타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五行山의 각각의 설명은 여러 冊子들의 내용에도 거의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이들의 내용을 종합해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가. 水山 : 山의 능선의 진행이 마치 물이 굽이쳐 흐르는 형태를 이룬 山을 水山이라고 부른다.

나. 火山 : 山의 형태가 마치 불꽃과 같이 뽕뽕뽕뽕한 山을 火山이라고 한다.

다. 木山 : 山의 형태가 붓의 끝과 같이 뽕뽕한 山을 木山이라고 말한다.

라. 金山 : 山의 형태가 둥근 모양의 山을 말한다.

마. 土山 : 山의 정상부가 평탄한 모양을 이룬 山을 土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山의 형태에 의한 五行의 분류의 대표적인 例로서 서울의 관악산을 말할수 있다. 즉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火山인 까닭에 한양에 빈번한 화재를 유발시키게 됨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火氣를 억제하는 물의 동물인 해태의 석상을 광화문에 설치하여 관악산의 火氣를 제압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山의 형태를 五行으로 분류한 목적은 그 山의 형태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 그의 吉凶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山의 吉凶의 구별은 山의 형태가 밝고 아름답고 균형이 있으면 吉하고 이와 반면에 그 형태가 추하고 균형이 잡히지 못한것은 凶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冊子에 따라서는 五行山의 각각의 山의 형태에 따른 吉凶을 별도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길흉의 판단 기준은 山의 형태상의 美醜 또는 살짐의 정도 등의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實例는 「韓國의 風水思想」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五行山의 형태에 따르는 吉凶의 구별을 「五星의 淸 · 濁 · 凶의 三格에 의하여 그 吉凶을 論하는 바 淸이란 星辰이 수려하고 광채가 나는 것이요, 濁이란 星辰이 살찌고 두텁고 단정하고 무거운 것이며, 凶이란 星辰이 추악하고 거칠고 殺을 띤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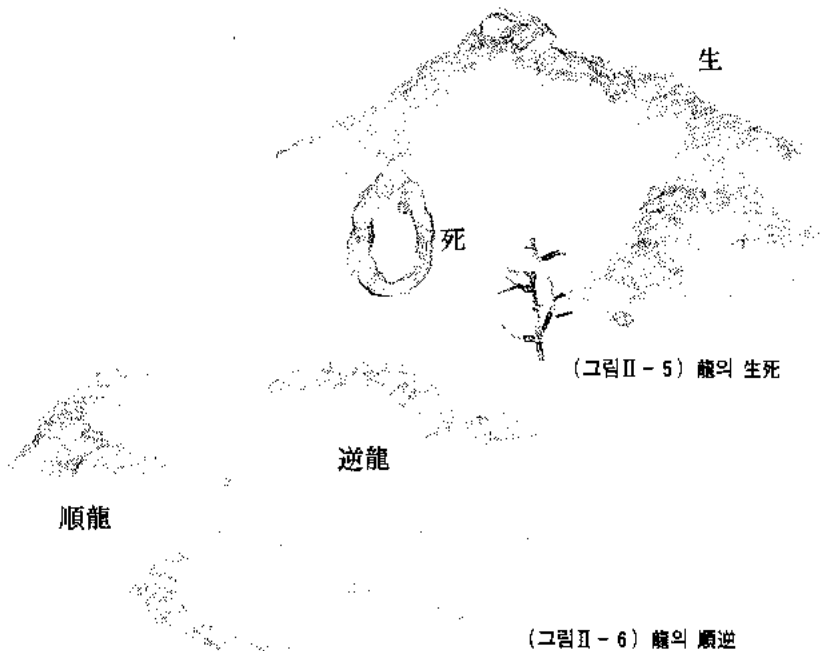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五星의 淸 · 濁 · 凶의 三格에 의한 吉凶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산의 형태에 따른 吉凶의 판단은 어떤 물리적인 수치의 기준보다는 관측자의 경험에 의한 판단에 좌우되는 관계로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현지 답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상에 언급된 山의 형태에 따르는 五行의 구별의 이론들을 참조하여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山들의 형태와 그 의미를 분석 해 본다.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은 그 정상부가 뽕뽕뽕뽕하여 그 형태가 마치 불꽃과 같으므로 火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며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은 그 형태가 단정하게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어서 五行으로 분석하면 木山에 해당된다. 이러한 木山은 그 형태로서는 마치 붓의 뽕뽕한 끝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풍수지리설의 이론으로는 「文筆峰」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의 진산인 북악산은 木山인 동시에 그 형태나 규모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文筆峰인 것이다. 이러한 文筆峰인 북악산의 영향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學者와 文人이 배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곳에서 배출된 文人이나 지식인들이 서울로



모여들게되어 文化의 中心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많은 學校가 오래전부터 설립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밀집하게 되는것도 모두 이 북악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 文筆峰의 영향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文筆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되어 각종의 언론인, 관료, 지식인, 종교인들이 득세를 하게된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높은것도 그 원인은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되는 山이 이 文筆峰인 것에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진산이며 문필봉인 북악산은 그 형태나 규모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그 형태는 세계적으로 어느 山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지식인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두뇌를 소유한 인물로서 그 자질이 훌륭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외국에 진출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에서도 그 實例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부족한 원인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가 갖은 당파싸움과 질투나 시기심으로 우수한 자질을 소유한

인재가 그 뜻을 펴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지나친 사대주의 사상에 의하여 자신의 독특한 천부의 재질을 발견, 개발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문화를 뒤따라가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고질적인 취약점만 수정된다면 한국의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북악산의 형태와 같이 뚜렷할 것이 확실된다.

서울의 북악산과 비슷한 형태의 文筆峰은 그 이외에 여러곳에 있으나 그중에 하나로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文筆峰도 대표적인 木山의 하나라 하겠다.

강릉시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한 이 文筆峰은 강릉시내에서는 매우 가깝게 보이고 있는데 이 文筆峰의 영향에 의하여 강릉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文人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옛적에 이곳에 부임은 한금이라는 원님은 이 지방의 많은 文人들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서지 않게되자 이 文筆峰을 사람을 동원하여 3尺를 깎아내려서 이곳에 文人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던 기록도 있다.

경북궁의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이 木山인 반면에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는데 이 인왕산은 대표적인 金山의 형태를 갖고있다. 이 인왕산은

등근형태가 우람하고 힘차서 예로부터 王氣가 서려 있다고 하였으며 이 인왕산 밑에서는 세종대왕을 비롯한 여러명의 왕이 태어났다. 최초로 무학대사가 한양터를 고를 때에 이 인왕산을 진산으로 왕궁을 배치할 것을 주장한 것도 모두 이 산의 王氣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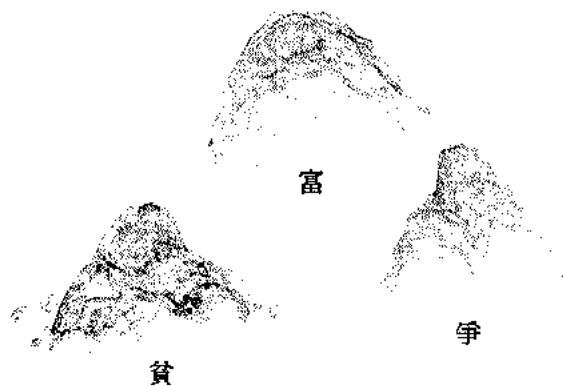
이상에 열거한 몇가지의 예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山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그곳의 지세를 살펴서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山의 형태를 五行에 의하여 분류하는 목적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산의 전후와 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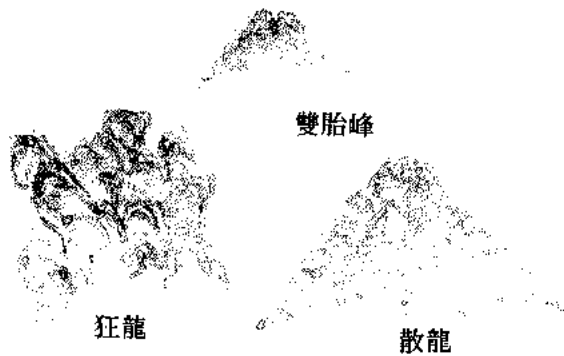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에서는 山을 龍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韓松溪의 말과 같이 山의 變態는, 千形萬象으로 혹은 크고 작고(大小) 일어나고(起), 엎드리고(伏), 거슬리고(逆), 順하며, 혹은 숨고(隱), 나타나(現出) 있어 支龍의 體段이 平常치 않아 지척간이라도 옮김에 따라 判異한 고로 이러한 形態를 龍의 變化와 흡사하다고 해서 龍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龍이라고 함은 山을 포함하여 山의 능선과 줄기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일정한 단독의 산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主山」, 「案山」等 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山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山”이라고 부르며 능선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龍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山은 그 형태의 변화가 많은 까닭에 동일한 山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다르다. 그러므로 무릇 크고작은 山嶺과 山은 다 등(背)과 배(面)가 있듯이 땅에도 그러하니 모름지기 자상하게 알아야 땅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크고작은 山嶺과 山은 다 背, 面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背, 面이라는 말은 山 또는 龍의 前面과 後面 즉 背의 兩面的 구별을 말한다. 그런데 山에 있어서 이러한



(그림II-7) 山の 貧・富・爭



(그림II-8) 狂龍, 散龍, 雙胎峰

前・後面의 구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창조 씨는 「地形上 龍의 止處란 바로 山の 連峯이 그 흐름을 다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바로 山地와 平野部의 접촉지점이 될 수 있어 해석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眞穴・明堂이란 山脈이 한창 세력을 펼치는 行龍 中에 있는 것이 아니라 山勢가 다하여 그치는 곳, 바로 平野에 접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으로 聚落의 立地중 긍정적 측면에 들 수 있는 用例이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山の 面에 따라서 明堂이 구성의 가능성이 작우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山の 이러한 구별에 대하여 「人子須知」에 「背・面은 山龍의 有情과 無情의 區分인 것이다. 面이 열린 곳은 自然히 光彩가 나고 齊整하며 빼어나고 아름다워 보기가 좋으니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情이 있으니 이러한 곳에서는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서 山の 등(背) 또는 배(面)에 따르는 형태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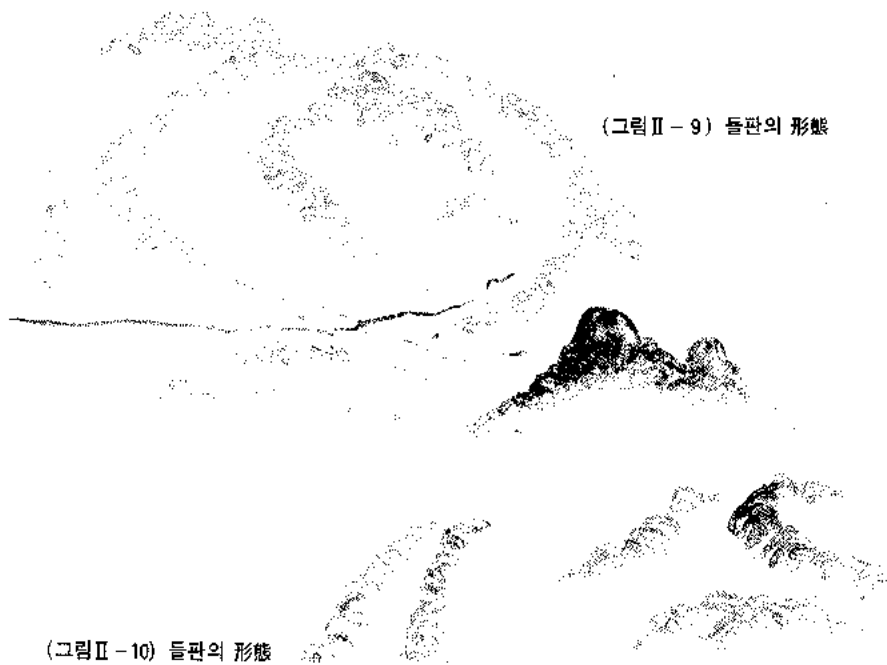
이와같이 山の 前後 또는 등, 배(背, 面)를 구별하는 목적은 역시 生氣를 찾기 위함이다. 즉 生氣는 山の 前面에 모여서 後面에는 결코 生氣가 부족한 위치가 되어 생기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山の 前面을 선택하여야 되는 까닭에 지세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山の 前・後面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山の 등과 배의 구별은 祖山에도 있고 평지용에도 있고, 혈에도 있어서 거의 모든 山은 이 등과 배의 형태적 구별을 갖고 있으므로 지세를 구성하는 主山 뿐만 아니라 主山의 주위에 있는 靑龍・白虎 및 案山等의 모든 山에도 구별되기 때문에 지세를 분석하는데 이들 주변 山들의 동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의 生氣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지세의 조건은 主山과 주변의 山들이 모두 明堂을 향하여 面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明堂寶鑑」에도 「지리는 人事와 비슷하므로 나를 향하는 자는 서로 사귀는 뜻이 있고 나를 등지는 자는 반드시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상대방이 君臣과 같고, 사랑함이 부부와 같고, 우애함이 형제와 같은 것은 나를 향하는 情이지만 서로 중오하고 시기하는 것은 나를 등지고 돌아보지 않으니 無情이다」라고 하여서 山の 면하고 등진 관계가 人事와 같음을 지적하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山の 등 또는 배의 구별이 지세의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실제의 답사에서 山の 등 또는 배의 구별은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의 등과 배의 이론등이 풍수지리설의 실체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龍의 구별

풍수지리설의 목적은 生氣의 취득에 있는데 生氣는 生龍에서만 흐르며 死龍에서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死龍은 풍수지리설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龍의 生死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朝鮮의 風水」에 龍의 生死에 대하여 「山은 그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生氣가 흐르는 脈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도 마른가지가 있어서 열핏 보기에는 생가지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그 가지는 절대로 꽃이나 과일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산에 있어서도 형태는 갖추고 있어도 生氣가 없어서 人生에 發福 시키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山을 死龍 또는 僞龍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龍의 生 또는 死에



(그림II-9) 돌판의 形態

(그림II-10) 들판의 形態

依하여 生龍과 死龍의 구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生氣를 찾기 위한 地勢의 분석에 있어서 龍의 生·死의 구별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龍의 生死에 대하여 「朝鮮의 風水」에는 「모든 萬物의 生死는 陰陽五行의 생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生氣가 充溢할 때에는 生하며 生氣 衰減한 때에는 死한다. 그러므로 生한 것은 伸縮·屈曲 및 活動하며 조금도 쉬지 않아서 항상 움직임을(動) 그의 本質로 한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전혀 硬直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屈曲活動이 없이 絶對의 靜을 本質로 하고 있다」라고 하여 山의 형태와 動과 靜의 구별로서 龍의 生·死를 구별함과 동시에 生氣의 有無도 구별하게 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다. 이와같이 龍은 生氣의 有無에 의하여 生龍과 死龍이 구별되어 이러한 구별 이외에도 生氣의 強弱이나 善惡 등의 구별이 있어서 이러한 용들의 형태를 12가지의 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龍의 분류를 冊에 따라서는 「龍勢12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生龍·死龍·強龍·弱龍·順龍·逆龍·進龍·退龍·福龍·怯龍·病龍 및 殺龍 등을 말한다. 이들 12格 중에서 생룡·강룡·순룡·진룡·복룡의

五格은 吉하지만 사룡·약룡·역룡·퇴룡·접룡·병룡·살룡 등의 七格은 흉한 것이다」라고 하여 용의 형태를 구별하였고 冊字에 따라서는 이와는 다르게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의 차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村山智順」은 生龍은 子孫이 長壽하며 死龍은 死喪이 不絶이라고 하여 吉·凶의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陰宅에 있어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임에 비하여 陽宅地로서의 이러한 山의 生死에 의한 영향의 결과는 음택의 경우에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吉凶의 근본적인 방향은 같다. 이와같이 이유는 陽宅은 地上의 形勢에 따르는 氣를 陰宅 보다도 오히려 더욱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山의 형태의 파악에 있어서 이러한 生·死·病·強·弱·順·逆· 등의 정확한 구별의 능력은 高度의 수양과 수련의 연마 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분야의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6. 산의 형태적 구분

풍수지리설의 목적이 生氣의 취득에

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이 生氣는 自然의 山의 형태에 따라서 그종류가 다르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山에는 生氣가 흐르는 山도 있으며 흐르지 않는 산도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各個人에 따라서 그 天賦의 性品이 善惡과 多少에 依한 것과 같이 山에 있어서도 그 賦性은 千差萬別이어서 或은 福을 전달하기도 하며 或은 禍를 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山의 賦性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山의 형태를 구별하는데 앞에서의 五行의 분류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구분이 있다. 「조선의 풍수」에는 山의 형태를 九星正體 즉 貪狼星·巨文星·祿存星·文曲星·廉貞星·武曲星·破軍星·左輔星 및 右弼星 등의 北斗七星의 명칭을 위주로 구분한 방법과 그 이외에도 五星의 類形으로써

貴人·太陽·將軍·仙人舞袖·武士·仙人·金匱·天馬·王帶 등 수많은 명칭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山이 위치한 方位에 따라서 八卦의 명칭을 붙여서 坎山·艮山·震山·巽山·離山·坤山·兌山 및 乾山 등으로 구별한 것도 있다.

이와같이 山의 형태에 따르는 구분은 冊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있어서 일반인이나 이 계통의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최창조 著 「한국의 풍수사상」에도 「五星은 正格이고 九星은 그의 결가지인 變格이기 때문에 衛士에 따라서는 九曜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여 명칭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의 분류 방법은 현지에서 지세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종합하면 산의 형태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의 정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가. 山의 主從

山의 형태에 따르는 성격의 분류에 대한 방법은 이분야의 冊子들에 따라서도 多樣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분류방법을



(그림II-11) 明山圖

현지답사의 경험을 통하여 분석하면 그중에서 몇가지의 대표적인 성격을 추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山의 主·從에 의한 형태의 분류가 山의 대표적인 성격 해석 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山의 主 또는 從에 관한 분류 방법은 기존의 문헌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기록이 몇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문헌은 白雲起·大韓曆法研究所 編著 明堂寶鑑에 龍의 형태에 관한 설명중에 이를 뒷받침하는 開帳과 穿心 正龍과 傍龍 전호(纏護) 賓主 및 奴從 등의 구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나타난 설명으로 山의 主從을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開帳과 穿心: 「開帳이란 장막을 연다는 뜻으로 새가 날개를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산이 좌우로 펼쳐 나간 모양을 말하며 穿心の 山勢에서 開帳은 穿心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穿心은 主가 되며 開帳은 從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正龍과 傍龍: 「正龍은 脈이 正氣를 받아 나가고 그 곁으로 여러 山이 朝貢하되 에워싸서 포위하고, 용이 중앙에 위치한 용을 말하며 傍龍은

맥이 편벽되게 기울어진 것으로 정봉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正龍은 무리 닭 중에 있는 봉황과 같이 자연히 우리 가운데 빼어나고 뛰어난 山을 말한다.」 이와 같이 正龍과 傍龍의 구별에서 正龍은 主, 傍龍은 從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호(纏護): 「전호는 엮어 보호한다는 뜻으로 용을 옹위하고 보호하는 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호의 山은 從의 山으로 구별할 수 있다.

賓主: 「빈주란 주인과 손이라는 뜻으로 龍에도 主人과 賓客이 있는 것이다」라고 山에 賓主를 구별하게 되는 것과 같이 主從으로도 구별하게 된다.

奴從: 「노종이란 종처럼 쫓는다는 뜻으로 즉 주종을 엮어 보호하고, 맞이하고 보내고 조종하는 모든 山을 말한다」라고 구별한 바와 같이 이러한 山은 역시 從으로 구별하게 된다.

이와같이 山에 대한 여러종류의 구별 방법을 종합하면 主人山과 從山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두종류의 산들의 형태와 특성을 山의 ①방향성 ②평면적형태 ③중심성 ④안정성 ⑤위계성 ⑥상호성 등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山의 方向性

山의 진행 방향은 명당을 기준할 때 명당을 向하여 직접 내려오는 수직적인 山과 이 명당과 主山을 보호하기 위하여 좌우로 진행하는 수평적인 山으로 구별된다. 앞에서 山의 開帳과 穿心の 구별에서 開帳은 水平的 방향이며 穿心은 垂直的 방향의 서로 상대적인 방향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山의 수평 혹은 수직의 형태는 從山과 主人山의 구별의 기준이 된다.

②山의 평면적 형태와 중심성 山의 형태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면 山의 길이가 폭에 비하여 길게 발전된 장방형 비율의 山과, 길이와 폭이 같은 정방형 비율의 山의 두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산의 형태적 구별에서 장방형의 山은 그 脈이 늘어져 있는 상태로서 정방형의 山은 脈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山으로서 從과 主의 구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장방형의 山은 脈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서 中心性이 弱하며 정방형의 山은 힘이 뭉쳐있는 관계로 中心性이 强하다.

③山의 安定性 主人山과 從山의 형태적 구별을 이들 山의 安定性으로 판단하면 主人山은 安定性이 强하며 從山은 弱하다. 이와같은 구별은 앞의 正龍과 傍龍의 구별에 있어서 正龍은 龍이 중앙에 위치하여 여러산의 호위를 받는 산이며 傍龍은 脈이 편벽되게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安定性이 작아서 安定性이 强한 正龍과 구별하게 된다.

④主從 산의 형태의 구별에도 賓主와 奴從이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여러산을 위계적으로 분석하면 主와 從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主·從의 각 山은 그 상호성에 있어서도 主人山은 자주적인 기상이 있고 從山은 종속적인 氣를 갖는 山으로 각각 구별된다.

(山의 형태에 의한 성격의 분류는 위에 설명한 山의 主從 이외에도 山의 貧富, 山의 清濁, 山의 順狂, 雙胎峰 등의 여러가지로 구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88 서울올림픽과 老人역할

白昌鉉

서울 永東 老人大學長

인류의 영원한 번영과 전진을 다짐하는 서울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못하였다. 온 세계인의 숭고한 평화이념을 담아 시작된 올림픽은 어느덧 24회째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으로는 우리의 국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올림픽개최국민으로서의 높은 자부심은 물론 밖으로는 지구촌 곳곳에 평화를 애호하는 한국의 기상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림픽을 남북한 관계에서 비추어 볼때도 그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현재 남북한간의 국력은 6대1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올림픽이 끝나는 2~3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엄청나게 벌어지는 국력과 우리의 줄기찬 평화통일 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마침내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듯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실로 엄청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에 30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일본을 제치고 중공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으로써 체육강국의 실상을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아시안게임때 우리가 보여준 善戰못지 않게 국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응원, 관전태도등이 매우 훌륭하였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 성숙된 우리의 국민의식은 내년의 서울올림픽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올림픽 개최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공중질서를 지키는 일에 까지 모두 솔선하여 참여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시설을 비롯하여 선수촌아파트, 경기장시설, 통신장비등등, 어느부문이건 세부적인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올림픽성공에 대한 열기가 더욱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대회보다도 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참여의지를 드높이고 스스로 奉仕해 나간다는 자세를 확고히 갖추어야 하겠다. 올림픽은 올림픽자체가 지니는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다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자세가 없다면 올림픽의 모습은 어떻게될까...? 5천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계승한 우리 한민족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세계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올림픽개최라는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모아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민족 전체의 안정과 활기가 넘치는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대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온세계에 한국민의 수준높은 의식을 과시하고 올림픽 역사상 길이 모범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젊은세대 못지않게 우리 기성세대중 특히 노인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노인사회도 마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올림픽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 일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지난 아시안게임때 어느 老夫婦가 자원봉사요원의 직을 맡아 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실례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연령에만 쫓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봉사자적인 정신을 스스로 몸에 베이도록 해야한다. 너와 나 그리고 老少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올림픽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우리가 개최하게 될 올림픽의 성공은 반드시 약속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노인사회가 주축이되어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살리고 우리 전래의 고유풍속과 생활습관을 외국인들에게 이를 소개할 수 있는 역할, 이밖에도 통역요원으로 봉사한다든지 老人社會가 담당해나갈 수 있는 역할수행에 스스로 찾아 봉사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 나가야할 것이다. 앞으로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훌륭히 치루어 내어 선진과번영,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오늘에 살았던 역사의 주인공의 하나로서 우리 노인세대가 올림픽에 적극참여하고 기여하였다는 美談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하겠다.

吐含山石窟庵小考 (後)

崔富得

建築士事務所 空間構成

Report/A Study of Seokuram Grotto on Mountain Toham
by Choi, Bu-Deuk



우리는 석굴암에서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완전한 典型으로서 공간과 그 공간에 합치되는 내용물의 이상적인 결합을 보게되는 바, 그러한 理想的 空間이 인간들의 娑婆世界가 아닌 神들의 世界 즉 極樂淨土임은 합당한 일이다. 필자는 여기서 제작자가 단지 시공방법만을 고분에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死後의 공간인 고분의 이미지와 역시 死後의 기대 공간인 극락정토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결합하고자 시도한 것이라 짐작한다.

2. 美學的 接近

美的 對像은 “우리에 대한 대상” 일진대, 우리안에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物 自體가 아닌 우리에게 의식된 대상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대상에 대해 인식하려하여도 주관과 관계하는 현상을 인식할 뿐이지 “對像自體”를 인식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현상”의 완전한 인식만으로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않을 또한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비록 무관심속에 “美”를 판정한다¹⁾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비록 “美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라”²⁾ 하더라도 共通感을 갖게하는 “美의 原理”의 表徵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美의 原理”의 表徵이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美”에 대한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 규준이념의 현시를 보게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낀다.³⁾ 그러나 이 미감적 이념들을 현시하는 능력은 그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정신에 있는 것이다. 미감적 이념들을 현시하는 능력으로서의 주체의 정신은 그 시대의 시대적·지역적 환경과 사상에 영향받았음을 인식할 때 신라불교가 가장 꽃피고 있을 때의 주요 불교사원인 석굴암 창건당시의 불교사상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

○ 石窟庵 創建時의 新羅佛教思想

669년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뒤 917년 고려왕조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근 250년이란 긴 수명을 유지하지만 이 시기에는 대개 전 100년과 후 150년으로 구분되는 두개의 思想史的 特長을 보인다. 전기는 불교사상이 아직 전전한 발전을 계속한 시기이고, 후기는 그 사상내용이 점차 쇠퇴의 길을 달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석굴암 창건당시는 그 전기중 가장 화려했던 시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기에 禪學을 위주로 했다면 전기에는 단적으로 敎學을 위주로 했다. 우리 佛教史上 經論에 대한 註疏의 대부분이 이 시기의 산물이라는 것은 당시의 불교사상에 대한 심도가 대단했음을 암시한다. 이 시기의 선도자라 할 수 있는 원효(617~686)는 한국불교철학의 개척자요, 대성자이다. 일찌기 육당 최남선은 이 시기에 “불교의 眞生命을 부활히 발양하여, 불교의 구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론과 실행이 원만히 융화된 조선불교의 독특한 전립을 성취”⁴⁾하였다고 하고, 우리 불교가 이때 “인도 및 서역의 諸論의 불교, 중국의 各論의 불교에 대하여 最後의 結論적 불교를 전립” 하였다고 하여, 그 공로를 원효에 돌린 바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는 철학적으로는 화엄경의 一乘圓融思想을 基調로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서의 般若經, 특히 般若理趣經과 金剛般若經을 중시했고, 因明·唯識·瑜伽의 이론을 응용했음이 분명하였다. 法華·涅槃 두 大乘經의 정신은 가장 華嚴에 밀착하는 大經인 만큼, 역시 이 시기의 모든 불교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중시하였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彌勒三部經·無量壽經·阿彌陀經을 중시,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삼았고, 국가안태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일찌기 중국에서 유행한 金光明勝王經과 仁王護國般若經이 매우 중시되어 여러차례 百高座講會나 八關會에서 講說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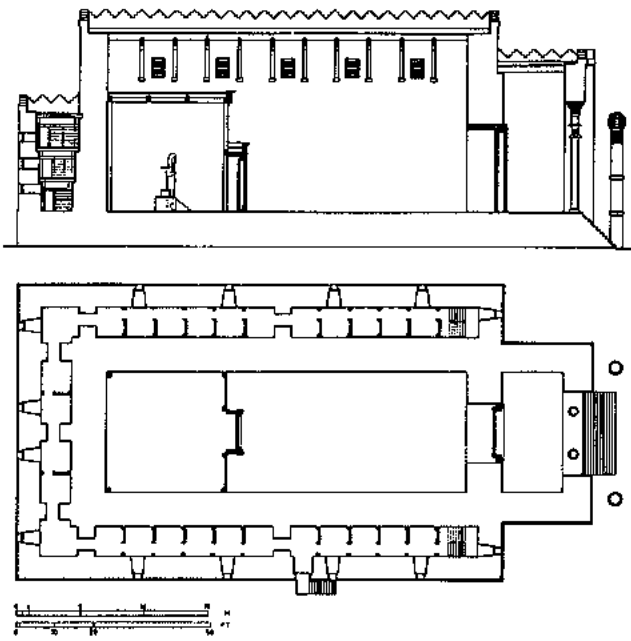
664년에는 문무왕이 함부로 財貨田土를 佛寺에 바치는 것을 금할 정도로 신라영토안에 사찰이 많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문무왕은 죽은 뒤에도 호국의 염원을 달성하고자 자기 유해를 불태워 碎骨한 후 海中에 장사지내기를 바랬다. 용왕이 되어 倭寇의 侵掠을 막고 국민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높은 뜻이었다. 이래로 護國龍王의 신앙은 신라에 매우 典型的인 한 고유신앙이 되다시피 하였다. 동해변에 감은사를 세운 것은 聖考 문무왕을 위한 뜻에서였다. 또한 감은사는 利見臺와 같이 萬波息笛의 전설¹¹⁾로 알 수 있듯이 왕들의 정치사상이 불교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의 종합하에 선명히 표명되었다고 보인다.¹²⁾ 석굴암이 창건된 해가 751년이라면 그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기는 그 몇년전부터 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기간까지도 경덕왕代(742~764)임에는 틀림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경덕왕은 그 이전의 50년간을 다스린 다른 왕들에 비하면 훨씬 탁월하게 불교발전을 이룩하게 한 좋은 지도자이었다. 長春에 대한 전설¹³⁾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지녔던 애국심·불교신심이 놀라운 정도로 두터웠고, 나라를 그리는 마음이 불·보살을 섬기는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여기에 신라불교가 이미 완전히 민족사상내지는 민족신앙으로 토착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원성취를 비는 他力信仰의 대상은 결코 어느 한 부처님이나 보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 개인이 여러 불·보살을 한꺼번에 신앙하고 섬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원효의 고원한 和淨圓融의 이치를 미처 충분히 모른다면 할지라도 막연하게나마 그 도리를 알고있었던 것이 신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때로는 彌陀를, 때로는 藥師如來를, 또 때로는 彌勒이나 地藏菩薩이나 觀音菩薩을 자유롭게 원하는데로 선택하여 섬기는 것이 신라시대의 일반적 풍조였다. 하여간 遺事에 실린 경덕왕대의 불교관계기사를 보면 거개가 이

불·보살에 대한 타력신앙에 얽힌 靈驗이야기가 많아 점차 불교가 타력신앙으로 기울어져 가고있음을 알게 해 준다.¹⁴⁾ 이런 흐름으로 석굴암의 창건과 깊이 관여하는 중심사상은 주로 來世의인 淨土信仰으로 발전한 변화다. 이에대해 八百谷考保는 선덕왕대의 고승 자장이 「阿彌陀經疏」를 저술했다는 기록과, 또 같은 선덕왕대에 홍륜사에 彌陀三尊像이 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太宗武烈王代에 金良圖가 西方淨土를 신앙하여 두 딸을 홍륜사의 노비로 삼았다고 전해오는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원효이전에 이미 정토신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토신앙이 민간에 널리 퍼져가는 문무왕대(661~681)에 원효의 포교에 의해서라고 보인다. 따라서 진평왕대(579~632)의 惠宿이 彌陀寺를 창건한 것을 신라정토신앙의 기원으로 본다. 초기의 정토신앙은 사회적인 분화작용으로 인하여 지배집단으로 부터 이탈되어 가는 王京人들 속에서 싹터 갔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정토신앙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念佛에 의한 現身往生信仰은 평민·노비인 사람들 특히 평민중에서 사회적으로 몰락해가는 층으로 구성된 일종의 민중의 신앙이었으며, 또한 追善에 의한 死者往生信仰은 되도록 현세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죽은 뒤에도 정토에 가는 것을 최선의 길로 생각한 신라 최고의 귀족 특히 진골계급의 신앙이었다. 석굴암 창건의 배경신앙이 후자의 死者往生信仰의 한 형태인 것을 석굴암의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창건배경에 대한 遺事의 기록¹⁶⁾으로 알 수 있으며, 결국 정토신앙이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신앙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석굴암 창건당시의 불교사상은 아미타불 숭배의 아미타정토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전부터 자리잡아온 호국적 불교신앙과 미륵신앙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굴암은 김대성이 현재의 부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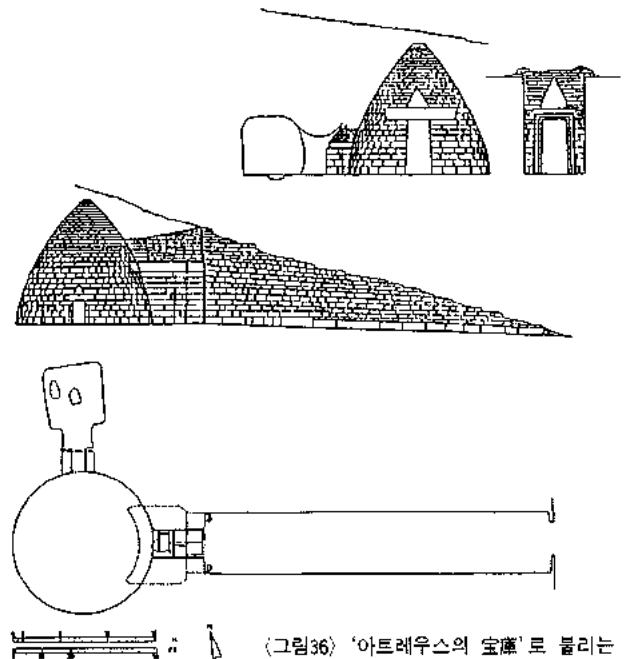
위한 불국사와 함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축조한 것이기는 하나 김대성이 단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신라 왕족 김씨 일가로서 그의 조상이란 바로 신라왕족의 조상과 동일한 것이므로 전국가적 대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이와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필자는 본장에서 석굴암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석굴암 각 조상들의 배치와 잘 짜여진 구성으로 볼 때 본 석굴암 축조는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며, 또한 彫像을 포함한 각 요소 하나하나와 그들의 배치, 공간의 구성, 위치의 선정까지 각각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 地理的 位置

왜 하필 왕성에서부터 멀고 험난한 이곳에 前재상 김대성은 석굴암을 축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것은 석굴암의 창건목적이 이곳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에 별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일본인학자도 있고, 계절과 冬安居시기와의 관계로 간단히 설명하기도¹⁸⁾ 하지만, 꼭 이곳이 아니라도 그러한 이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동해 대왕암 및 감은사와의 연계설을(황수영)을 주목하게 된다. 토함산은 신라 5악의 하나로서 석탈해왕의 설화¹⁹⁾가 어려있는 곳이기도 하며, 신라의 동편에서 특히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형적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즉 불국사와 함께 석굴암이 토함산에 축조됨은 신라불교의 호국적 성격에 그 바탕을 두고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무왕의 해중릉인 대왕암이 있고, 실질적 석굴암창건자 경덕왕의 선왕인 효성왕의 散骨地이며, 신라주요 설화지인 이견대²⁰⁾등이 있는 동해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죽어서도 왜구의 침략을 앞장서 막겠다는 문무왕이나 다른 선왕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혹은 그들 선왕들 편에서는 서방이 되는 이곳에 극락정토의 상징을 함축성있게 축조한 것이리라는



〈그림34〉 예루살렘 솔로몬 신전의 복원 평면·단면도(기원전 95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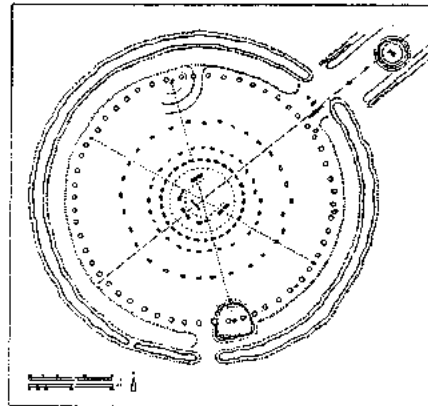
〈그림36〉 '아르테우스의 宝庫'로 불리는
- 뤼케네의 아르테우스 궁륭묘(기원전 1325년경)

추측도 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 位階・完全성과 創造性

공간의 형성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위계의 창출인 바 이러한 위계형성을
위한 방법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의 정전이나
불교사원의 主殿입구의 계단에
구름무늬의 조각을 하여 천상계를
구분하듯이, 기독교에서는 재단을
높이거나 다른 경계표시의 구획으로
성소를 구분한다. 문이나 벽으로
완전히 구획하지 않고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흔히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석굴암에서는
주실입구 양쪽의 인왕상, 두개의
팔각기둥, 아치형 출입구등으로
사바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엄숙한
신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입구의
팔각기둥은 인도 산치의
Stupa 입구의 기둥(그림 27), 일반
불교사원입구의 일주문, 능입구의
홍살문, 솔로몬 신전입구의 기둥(그림
34)에서와 같이 위계설정의 강력한
상징으로 고대로부터 자주 이용되는
바이며, 이러한 중첩된 상징적 처리로
인해 예배공간에 있는 참배객들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숭고한 극락정토의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고하게 설정된
천상위계에서의 주실의 평면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은



〈그림35〉 영국의 거석기념물 복합체. Stonehenge.
(기원전 2,500년경)

본원적 공간, 즉 일차적 공간으로서
원시주거형태나 거석문화의 유적(그림
35)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기본형인
것이다. 그러나 그 원속에는 심오한
우주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 만일
정방형이 인간과 인간이 만드는 것,
건축, 조화된 구조, 문자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원은 신과의
관계에 있다. 단순한 원은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도,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은
수학자에게는 변수가 무한한
다각형으로 생각되듯이 그 원주상에
표시된 일점은 원주자체의 시작이며
끝을 나타내며 그 영원성의 개념을
제거하기도 한다.”

그 원형 평면위의 천성은
불교사원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돔으로 되어있다. 공간은 의식의
실체, 사물 그 자체이다. 인간은 이
실체를 표현하고자, 그것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은
생활에 의한 경험에 의해 발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지각과 표현의
평행적 진화였다. 그것의 최종적인
미술적 성취는 돔과 둥근 천정과 같은
공간의 건설이었으며, 수많은 기독교
사원의 중심공간은 이 돔으로 덮혀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간이
건축으로서 포용되기 오래전에 그것은
인간이 알고 있듯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육체없는 신비로서
인간의식속에 존재해 왔다. 그것은
친숙한 정신이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의
자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출현할 수 있는 無였다. 돔은
아마 최초의 지붕형식이었을 것이며,
천둥과 번개, 비와 햇빛, 별과 그
밖의 다른 모든 우주적 사건들이
하늘의 지붕에 있고, 그 돔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힘을
부여 받았다. 그것을 승거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집이란 뜻의
'Domus'를 받아들여 그것을
하느님의 집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형상, 그 다음에는 사상,
그리고는 사상의 상상력적 성상을
받아들인 형상의 확산 혹은 정교화로
형상이 발전되듯이 상징적 가치도
거기에 증식되어 돔은 우주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성자들이 살고있는 하늘나라 바로 그 穹窿이 되었던 것이다.²⁵⁾

마찬가지로 석굴암에 있어서도 돔의 공간은 우주를 상징하는 정점의 연꽃무늬²⁶⁾와 구조적 필요에 따라 整然하게 돌출된 버팀돌로 구성되어 日月星辰을 상징²⁷⁾하는 천정으로 덮혀진 하늘나라 바로 極樂淨土인 것이다.

이와같은 신앙적 돔은 일찌기 튀케네의 '아트레우스의 궁륭묘'(그림 36)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전체적 이미지가 석굴암과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돔은 그 原型的 이미지에서 그 신성함을 표현하고 있으나 '아트레우스의 궁륭묘'나 기독교사원은 텅빈 공간으로서 그것이 천상의 빛이거나, 알 수 없는 힘으로서 하늘을 향한 믿을 안에서만 존재하지만, 석굴암의 原型的 공간은 그 속에 바로 하늘나라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담고있는 바, 본존불인 阿彌陀佛과 그를 둘러싼 菩薩, 十大弟子, 梵天, 帝釋天 등의 23상²⁸⁾의 불상들이 四大天王, 仁王과 八部神衆등이 겹겹히 호위하는 중에 본존불을 중심으로 둥글게 서거나 앉아서 설법을 듣거나 토의하는 곳, 즉 극락정도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배치는 집회의 원초적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실에서 본존불과 다른 불상들이 제삼의 객체가 자리할만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되는데, 이 주실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 빠져버리면 전체가 모두 부서질 것같은 신비로운 완전성을 석굴암은 가지고 있다.

인도에 있어 석굴사원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 즉 데칸 지방은 주로 암산이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목재건축이 불가능하였고 다행히 암질이 굴착하기에 용이했으므로 이처럼 웅대한 석굴사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목재 건축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며, 석질 또한

대부분이 굴착하기 어려운 화강암으로서 석굴사원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으나 대신에 석굴암과 같은 축조형 석굴사원을 남겼다. 이와같이 지역적 특성은 새로운 창조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특성을 적절히 잘 수용한 모범이 바로 석굴암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보다 완전한 인공적 석굴사원이 가능했다고 본다. 석굴암에서 간파할 수 없는 주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분리된 頭光으로 대변되는 제작자의 치밀한 視覺的思考이다. 이와같이 시각을 고려하면서 완벽하게 분리된 두광 또한 불상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렵고, 석굴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림 40에서 도면상으로는 외부에서 본존불이 가려지게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바, 석굴암의 규모, 각 불상의 크기 및 배치등이 시각적 사고가 아닌 단순한 도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정될 수 없었음을 증거한다. 제작자가 참배객의 시각을 시점으로하는, 다분히 대상중심이 아니고 주관적인 사고로서 석굴암을 계획하고 완성했다는 것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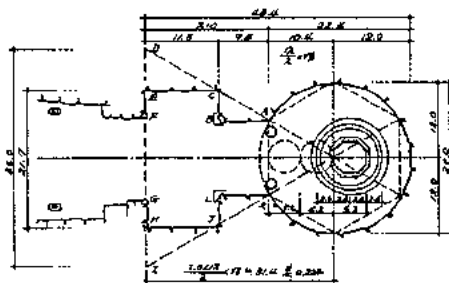
○ 比例

A. Dürer 는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비례없이 어떤 도상도 완전하지 않다²⁹⁾”고 말했다. 석굴암의 그 긴장된 완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이와같은 완전성은 우리에게 시각적·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우리는 이의 전형적 논리로서 비례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美的”으로 파악되는 요소로서의 적합성은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감지되고 심리적으로 주관화 되기 때문에 각 요소들간의 관계설정은 서로간의 시각적·심리적 비례체계로서 느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굴암에 대한 비례론은 米田美代治³⁰⁾ 이후 몇몇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각 안들을 비교하고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전체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성이란 의미가 정확한 치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 완전성은 수치적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과 인식의 구조는 유사한 것의 완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정확히 판단하면 완전한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찌그러진 원까지도 그것을 아주 완전히 둥근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를 논의하는데 있어 치수의 미세한 오차는 전체의 개념인식에 별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한 수치상 차이는 개의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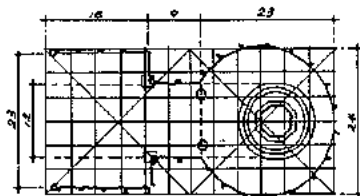
● 米田美代治 案³²⁾

주실은 반경이 12唐尺의 완전한 원이며, 扉道の 폭도 12唐尺으로서 12唐尺이 基本 Module 로 사용되고, 基本 정삼각형의 높이인 10.4唐尺이 副 Module 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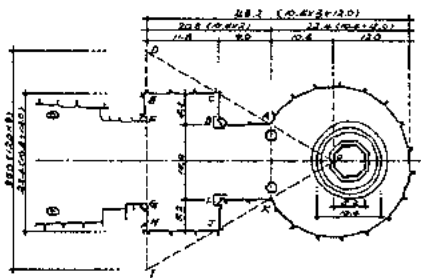
● 申榮勳 案³³⁾

4唐尺을 基本 Module 로 하는 Grid 를 그 기본으로 하고 24×24唐尺의 두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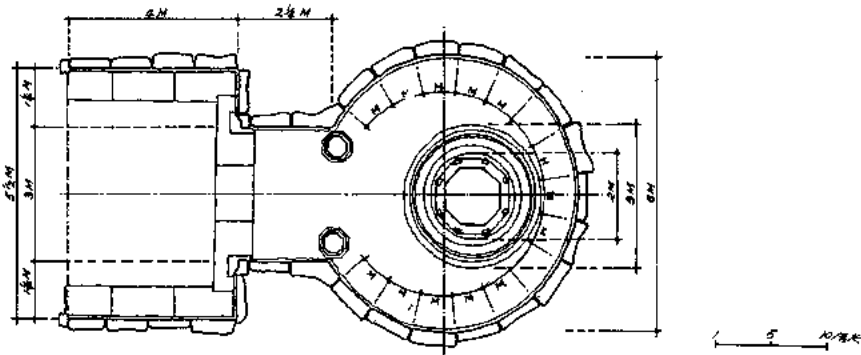
● 南天祐 案³⁴⁾

Module 은 米田씨와 동일하고, 扉道와 前室部를 합한 凸形 평면은 한변의 길이가 36唐尺인 정삼각형에 정확히 내접하는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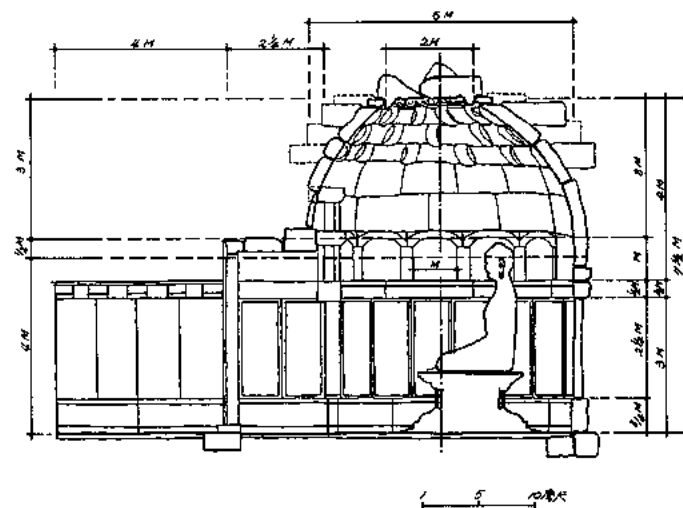


이상의 案들중에 米田氏나 南天祐의 12唐尺 기본 Module 과 10.4唐尺 副 Module 이론에 있어서 주실의 직경과 扉道の 폭이 12唐尺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러 결과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아닌 결과치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Module 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본존불좌대 中石의 직경을 기준으로 한 副 Module 은 단지 주실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육등분한 삼각형의 높이와 관련을 가지는데 米田氏가 주장하는 기본 Module 12唐尺으로 이미 주실의 직경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0.4唐尺의 副 Module 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에비해 申策勳의 4唐尺 基本 Module 이론은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석굴암 전체의 주요 벽면구성요소인 27개의 입상부조석판의 폭이 4唐尺이며, 주실의 직경과 扉道の 폭인 12唐尺도 기본 Module 인 4唐尺의 3배수 즉 3M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면·단면의 구성이 사각형만이 아니고 원형이 함께 하기 때문에 Grid 의 개념으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두개의 정사각형에 의한 구성 또한 너무 많은 수치적 차이를 초래하므로, 그동안의 변형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정교한 석굴암의 전체구성으로 볼 때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볼 때 필자는 입상부조석판의 폭인 4唐尺을 석굴암의 기본 Module 로 추정하며, 또한 전체적인 비례개념은 단순한 배수비례의 원칙하에 있으며 굳이 副 Module 을 상정한다면 기본 Module 을 4등분한 1唐尺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평면에서만 아니라 단면과 입면에서도 잘



(그림37) 석굴암의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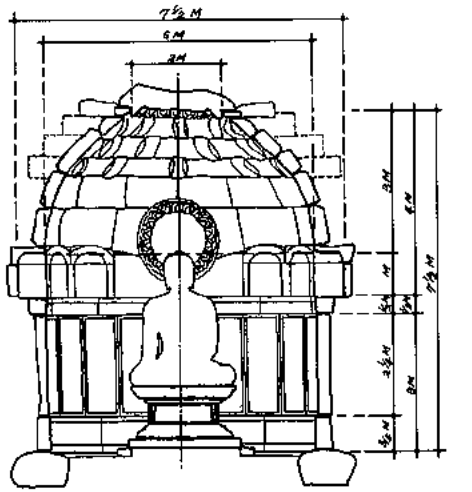
(그림38) 석굴암의 종단면 구성

나타나고 있다.(그림 37, 38, 39, 40) 단 여기서 누락된 본존불 및 본존불좌대와 주실의 관계는 두광과 더불어 시각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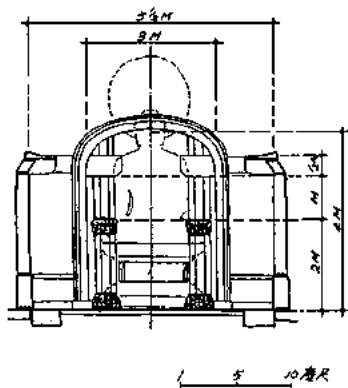
結

우리는 석굴암에서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완전한 典型으로서 공간과 그 공간에 합치되는 내용물의 이상적인 결합을 보게되는 바, 그러한 理想的 空間이 인간들의 娑婆世界가 아닌 神들의 世界 즉 極樂淨土임은 합당한 일이다. 필자는 여기서 제작자가 단지 시공방법만을 고분에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死後의 공간인 고분의 이미지와 역시 死後의 기대 공간인 극락정토의 이미지를 외도적으로 결합하고자 시도한 것이라 짐작한다. 아뭇튼 아잔타 아래의 석굴사원이 석굴암에 와서 그 심오하고 정돈된

불심에서 우러나온, 종합적이고 이상적인 예배공간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찌기 고유섭은 석굴암을 가리켜 Winckelmann 고대 그리스조각을 찬탄하면서 표현한 말을 인용하여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의 세계의 고요하고 중반한 단순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즉 석굴암의 본원적 기능인 극락정토의 현실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Kant는 '美的인 것은 道德的 善의 象徵'이라고 했는 바 이는 근대건축의 교시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의 또다른 표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기능을 필요조건으로하는 건축공간에 특히 종교적 공간에 있어 완벽한 기능의 추구야 말로 絕對善으로 이르는 길이며, 그로 인해 좋은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석굴암은 완전한 善을 향한 의지의 극적인 실현이야말로



〈그림39〉석굴암의 횡단면 구성



〈그림40〉석굴암의 입면 구성

직감적 美를 수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풀》

참고문헌

- 文化財管理局;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1967.
- 韓國佛教研究院; 石窟庵, 一志社, 1977.
- 申榮勳; 石窟庵의 建築的인 築造計劃, 《考古美術》7-7, 1966.
- 米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의 研究, 秋田屋, 1944.
- 申榮勳;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東山文化社, 1976.)
-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1979.
- 南天祐; 石窟庵에서忘却되어있는 高度의 新羅科學, 《진단학보》제32호, 1969.
- 文明大; 韓國의 石窟寺院研究, 《역사학보》제38집, 1968.
- 世界の文化史蹟, 中國의 石窟寺, 講談社, 1969.

○ 世界の文化史蹟, インペの 仏蹟と ヒンズウ寺院, 講談社, 1969

○ 金基雄;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公社, 1982.

○ Dietrich Seckel; Kunst des Buddhismus. (백승길역; 佛教美術, 悅話堂, 1986.)

○ 林範宰; 한 方法論으로서 美學的인 美術史的인 存說, 《홍익미술》3호, 1974.

○ 한국철학회; 한국철학연구(上), 동명사, 1983.

○ 이기백; 신라사상사 연구, 일조각, 1986.

○ I.Kant; Kritik Der Urteilstkraft. (李錫潤역; 判斷力批判, 박영사, 1984.)

주

9) I.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崔載喜역;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1984.) p. 37.

10) I.Kant, (이석윤역) op.cit. p. 59.

11) I.Kant, (이석윤역) op.cit. p. 67.

12) I.Kant, (이석윤역) op.cit. p. 97.

13) 최남선; 조선불교 제4장.

14)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萬波息笛條.

神文王이 利見臺에서 동해에서 감은사를 향해 바위산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가 배를 타고 그 산에가서 해룡이 된 문무왕으로부터 대를 받았는데, 그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에도 비가오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정되어 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는 설화.

15)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연구(上), 신라불교의 철학적전개, 1984, pp. 187~195.

16) 景德王代에 한 가난한 여인이 7일동안 관음상 앞에서 기도를 한후 행방불명된 아들 長春이 돌아오게 되는데, 즉 장춘이 배가 난파되어 오나라에서 발갈이를 하던중에 이상한 중이 나타나 우리말로 위로하며 자기를 데리고 뛰었는데 잠시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설화.

17) 한국철학회 편; op. cit. pp. 205~209.

18)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p. 124~150.

19) 三國遺事 卷5 大城孝 二世父母 神文王代條.

“乃爲現生二親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20) Ibid.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즉, 대성이 죽자 국가에서 완성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21) 南天祐; 石窟庵에서忘却되어 있는 高度의 新羅科學,

《진단학보》제32호, 1969. pp. 84~85.

22) 三國遺事 卷1 第4 脫解王 條.

석탈해가 최초로 머문곳이 토함산이었고, 통일 직후 토함산으로 이장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그를 추모했는데, 즉 천하무적의 力士 석탈해가 동악의 산신이 되었고 나아가 동해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다.

23) 주 14) 참조.

24) Bruno Munari; IL Cerchio, Milano, 1964.

(이건호역; 門 그 발견과 전개, 우성출판사, 1976) p. 5.

25) Herbert Read; ICON & IDEA, (김병익역; 圖像과 思想, 悅話堂, 1982.) pp. 80~84.

26) Dietrich Seckel; op. cit. p. 195. 「연꽃은 고대인도에서 우주를 상징」

27) 한국불교연구원; 石窟庵, 一志社, 1980. p. 75.

28) 빈 두개의 감실을 포함하면 25상이 되고,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상들도 있음.

29) W. TATARKIEWICZ; History of Aesthetics III, Mouton, Paris, 1974. p. 257.

30) 일제시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축약으로서 《석굴암의 조영계획》에서 마려를論함.

31) R.Arnhem; Visual thinking, (김정오역; 시각적 사고, 이대출판부, 1983) p. 58.

32) 米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의 研究, 秋田屋, 1944. (신영훈역;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東山文化社, 1976.) pp. 25~41.

33) 申榮勳; 石窟庵의 建築的인 築造計劃, 《考古美術》7-7, 1966.

34) 南天祐; op. cit. pp. 78~81.

35) 高裕燮; 韓國美術文化史叢論, 通文館, 1983. p. 139.

36) I.Kant; op.cit. p. 243. (이석윤역)



변경

□ 서울지부

- ▲장도협 / 진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6-11 / 676-5557
- ▲이장백·박선홍·김두호 / 기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신사동 573-2 / 543-5986
- ▲임길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동+환경·정인 / 강남구 청담동 47-3 / 544-4628
- ▲이상수·박은규·최형식 / (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 783-5301
- ▲조건영 / 건축사사무소 기산 / 중구 상충동 2가 21 / 275-7144
- ▲전성철 / 동국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550-5 / 478-7181
- ▲강철구·김태선·오홍중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 783-4011
- ▲송상철 / 건축사사무소 유원 / 강동구 성내동 550-5 / 485-1580
- ▲유규성 / 병양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아현동 437-3 / 313-0368
- ▲구제창 / 구인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노고산동 40-33 / 702-3049
- ▲이정일·조사현 / 건축사사무소 법신 / 강남구 논현동 115-3 / 545-6628
- ▲김익식·이해백·이영복 / 도양도양종합건축사사무소 / 동작구 사당동 147-104 / 590-4446
- ▲권태정·유준목 / 태한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대치동 912-21 / 553-0815
- ▲한홍 / 우진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1302-45 / 555-5645
- ▲이현동 / 대원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 242-54 / 544-7189
- ▲강영철 / 창진건축사사무소 / 도봉구 번동 461-98 / 903-5991
- ▲권상혁 / (주) 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 50-3 / 549-0312
- ▲한상진 / 영동건축사사무소 / 중구 무교동 24-2 / 755-7184
- ▲박봉현 /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 1가 308-2 / 634-3112

- ▲강봉진 / 건축사사무소 국보건축 / 종로구 적선동 150 / 733-5917
- ▲이종우·허광호 / (주) 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35-5 / 552-9606
- ▲김영호 / 건축사사무소 덕진건축 / 강남구 성내동 556-4 / 487-6214
- ▲임도생·임길생·강영순 / 현대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성수 2가 322-1 / 468-0998, 0999
- ▲강태봉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종로구 동숭동 1-11 / 744-4123
- ▲강희용 / 태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8-1 / 540-4926
- ▲안병의·박수령 / 건축사사무소 향건축 / 강남구 방배동 851-3 / 590-6001
- ▲신명수 / 청구건축사사무소 / 중구 목장동 30-3 / 266-1258
- ▲신언학 / 토우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444-7 / 586-3086
- ▲여세현·박우하·박성규·유명하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창·합성·고려건축 / 중구 인현 2가 192-30 / 267-7826
- ▲임성호 / 한진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319-27 / 982-2848
- ▲리영근 / 서광원합건축사사무소 / 농대부구 신설동 76-41 / 923-9292
- ▲김관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호·당 / 용산구 한남동 274-14 / 793-1452
- ▲이홍은 / 건축사사무소 예상 / 강남구 청담동 79-19 / 545-3008
- ▲안명제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호·당 / 용산구 한남동 274-14 / 793-2593
- ▲송관식 / 한나라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795-18 / 590-5406
- ▲신종호 / 신종호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162-12 / 553-6876
- ▲허필은·김지덕·유신·우전종합우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32-40 / 562-7549
- ▲정종호 / 유신·우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32-40 / 567-4379
- ▲안인모·김현배 / 한가람건축사사무소 / 중구 다동 131 / 777-3374

□ 대구지부

- ▲최성덕 / 도심건축사사무소 / 서구 내당동 135-2 / 626-5758
- ▲박몽룡 / 병건축사사무소 / 중구 남산 4동 2503-7 / 23-0404
- ▲이병택 / 동원건축사사무소 / 서구 평리 3동 1072-19 / 52-5536
- ▲박성정 / 경진건축사사무소 / 중구 동인 1가 303-1 / 46-3203
- ▲유일우 / 국제건축사사무소 / 서구 평리 3동 1090-9 / 555-0224

□ 인천지부

- ▲한교선 / 대성건축사사무소
- ▲김봉섭·김태영 / 종합건축사사무소 태태, 신화, 성일
- ▲심광섭 / 건축사사무소 의전 / 인천 남구 도화동 391-13
- ▲이대원 / 환경건축사사무소

□ 광주지부

- ▲김영식·유연옥·이창율 /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유안·창조 / 동구 광산동 81-2 / 33-1302, 22-1493, 232-7425
- ▲유연창·정해성·현준철·윤익상 / 종합건축사사무소 류·세광·윤 /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 27-2788, 22-8850, 22-7770
- ▲전생규 / 광주건축사사무소 / 북구 중흥동 645-4

□ 경기지부

- ▲한관수 / 경원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68-28 / 62-5958
- ▲김세주 / 미도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교동 22-3 / 36-8615
- ▲이연섭 / 동남건축사사무소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90-3 / 2-2875
- ▲박영익 / 원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고잔동 527-5 / 6-3111
- ▲정명호 / 다인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고잔동 530-3 / 82-9158
- ▲김철우 / 안산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고잔동 533-1 / 82-9833
-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 81브릭 6롯데 / 34-8008

▲원유성 / 원유성건축사사무소 /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603-3 / 62-5079
▲장기성 / 소망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83-8 / 662-9053
▲박중화 / 현대건축사사무소 / 송탄시
서정동 90-1 / 4-2215
▲김정치 / (주) 부영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88-1 / 654-0494 3
▲조일환 / 현진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관양 7지구 10-5 롯데 / 44-9306
▲조성만 / 건축사사무소 성광 / 수원시
인계동 652-2 / 36-6638

□ 강원지부

▲이정식 / 화일건축사사무소 / 삼척시
남양동 331-1

□ 충북지부

▲오복수·송인창·양철호 /
수북종합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북문로 3가
87-4 / 2-0894, 52-7025
▲박성인·정경수·박성식 /

기단종합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북문로 2가
116-165 / 3-5453, 52-5156
▲신영동 / 신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북문로 3가 100 / 2-3581

□ 충남지부

▲고남극 / 진축사사무소 고건축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0-2
▲육이창 / 육이창·미도건축사사무소
▲김현성 / 육이창·미도건축사사무소
▲임성국·박홍식·이준권 / 건축사사무소
대전 종합건축 / 대전시 중구 대흥동 477-2

□ 전북지부

▲심생길 / 반도건축사사무소 /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1-5
▲조완익 / 서울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진북동 358-6
▲장기중 / 한도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서노동 564-4
▲김용훈 / 김용훈건축사사무소 / 군산시
중앙로 1가 15-4

▲박재남 / 전라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고사동 1가 13
▲김성용 / 태형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6-1

□ 전남지부

▲강인수 / 세원건축사사무소 / 순천시
장천동 53-4 / 2-7828
▲구천모 / 여수제일건축사사무소 / 여주시
중앙동 695 / 62-2284

□ 경북지부

▲김용관 / 한양건축사사무소 / 포항시
죽도 2동 612-1
▲권오웅·강신태 / 부성건축사사무소
▲손재수 / 손재건축사사무소
▲박찬권 /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558

□ 제주지부

▲이공선 / 중앙건축사사무소 / 제주시
이도 일동 1465-1

‘韓國의 建築’ 發刊 案内

협회에서는 건설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고
금(古今)을 집대성한 “韓國의 建築”誌를 다음과 같이 발간하

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
다.

발간목적

-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位相 定立
- 建築時代史의 再照明
- 國際化時代의 韓國建築 弘報
- 現代建築의 質的向上 道모

편집내용

- 각 시대별 건축작품에 대한 개요기술
- 수록내용 / 傳統建築編 약 50작품
近代建築編 약 100작품
現代建築編 약 250작품
총 400작품 (400페이지)
- 책의모양 / 5×7배판 (한·영문 / 원색인쇄)

작품접수

“韓國의 建築”은
掲載을 희망하는 會員여러분의 作品원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제출요령 및 자료

- 1) 설계의 주안점(문제점) : 설계상의 특이한점 · 새로운 점 ·
장점 · 기술등 (원고지 3매)
- 2) 작품의 연혁 : 수상경력 · 용도 · 면적 : 건축주 · 소재지 ·
준공년월일 (작품명 및 설계자명은 영문표기 바람)
- 3) 작품의 사진 : 슬라이드 필름 (작품의 전경) : 6cm×6cm
크기 이상
- 4) 도 면 : 선정된 작품의 주요 평면도 1매
(트레이징지 42cm×59cm 가량 크기에 양킹할 것)

-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의 건축”발간위원회
(문의 : 581-5711~4 권회용출판사업부)

* 게재 희망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法律 第3,998號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 ◇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 주요골자
-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도 앞으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4).
-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을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무주택주민과 동일직장내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 바, 앞으로는 도시재개발구역외의 지역의 무주택주민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는 고용자가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3조 제9호 및 제44조 제3항).
- 주택건설사업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한 주택건설

- 등록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3).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 처분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2).
-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주택관리사제도”를 신설함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
-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제48조의2).
-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며, 동조 제5호중 “대지조성사업자”를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5조 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등록의 말소)”를“(등록의 말소 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호중 “연간 영업실적이”를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제6조 제2항에”를 “제6조 제4항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 2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 2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 (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33조 제4항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 제4호중 “측량법 제22조에”를 “측량법 제25조에”로 하며, 동조 제8항 전단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3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제38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중 “주택관리인에 의하여 관리한다”를 “주택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로 하며, 동조 제5항·제7항 및 제9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 제14항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으로 하며, 동조 제15항중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8조의 3 제1항 본문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한”을 “건설·공급한”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 및 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 2 내지 제39조의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2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등)

① 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9조의 3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보(이하“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 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의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

① 주택관리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9조의 6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사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의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는 자치관리구조·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1조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등)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주택자재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자재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과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제3항중 “그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를 사업주체로 본다. 이 경우에 제6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조립식주택부재 등의 상태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조립식 주택부재”를 각각

“우량주택자재”로 한다.

① 건설부장관은 구조 및 상태에 있어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이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의 3본문중 “조립식주택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적합하지 아니한 조립식 주택부재를 판매한 때”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로 한다.

제45조의4의 제목중 “상태인정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상태인정”을 “인정”으로, “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가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식공법설계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청문) 건설부장관은 제7조·제9조·제39조의2·제39조의5·제41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등)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营业을 한 자

제52조 제1항 제3호(중전의 제2호)중 “영위한 자”를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 제4호(중전의 제3호)중 “제41조 제4항”을 “제41조 제5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8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제5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3(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9조의7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가 부과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조합식주택부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식주택부채로 성재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때까지는 제7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정직위엔 금자탑이 부정위엔 모래탑이

정보자료실소장 도서목록 소개

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소개합니다.
그간 본 정보자료실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도서를 기증하여 주신 출판사 및 저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아직은 출발단계에 있는 본협회 자료실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정보자료
실의 도서를 적극 활용, 업무발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청구번호	저 자	도 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501	539.7	도시계획연구회	도표에 의한 도시계획방법론	기술문화사	1985
1502	539.7	도시계획연구회	도표에 의한 도시경관방법론	기술문화사	1985
1503	542.1	김 재 연	건축접합부의 디자인	기술문화사	1984
1504	542.1	기술문화사편집부	패시브 건축수법사전	기술문화사	1984
1505	030	중앙일보사	VIP 중앙대백과	중앙일보사	1985
1506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살기좋은 꾸며진 주택 (21평~50평) 150집	중앙일보사	1985
1507	539.7	기술문화사편집부	도시환경계획 (서독에르랑겐시의 예)	중앙일보사	1986
1508	542.8	기술문화사편집부	건축시공QC 가이드북	중앙일보사	1984
1509	542.1	기술문화사편집부	현대건축계획각론	중앙일보사	1983
1510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1	중앙일보사	1984
1511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2	중앙일보사	1984
1512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3	중앙일보사	1984
1513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4	중앙일보사	1984
1514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5	중앙일보사	1985
1515	542.2	기술문화사편집부	오늘날의 디테일 V. 6	중앙일보사	1985
1516	989.11	한 국 지 도	서울특별시 지반안내도 1/5,000	한 국 지 도	1985
1517	606.9	사이도 쓰네마사	세계의 박물관·뉴욕자연사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1518	606.9	사누끼 마다오	세계의 박물관·워싱턴 항공우주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1519	606.9	카도히 데도시	세계의 박물관·아메리카 역사기술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1520	606.9	스기모도 히사쓰구	세계의 박물관·스웨덴·덴마크 야외역사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1521	606.9	마스다 요시로	세계의 박물관·멕시코국립인류학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1522	560.053	한국전기공사협회	1986전기공사업 통계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1986
1523	322.02	건 설 부	국토조사총람 1986(제20호)	건 설 부	1986
1524	530.02	건 설 부	건설통계연람 1970	건 설 부	1970
1525	530.02	건 설 부	건설통계연람 1971	건 설 부	1971
1526	540.099	한양대학교동문회	한양대학교동문회명부 1982	한양대동문회	1982
1527	541.02	건설자재총람편찬위원회	75년판 건설자재총람(제5판)	(주) 상공정보센터	1975
1528	518.09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 약사회사	서울특별시약사회	1978
1529	065.09	(주) 한 성	주식회사 한성10년사	(주) 한 성	1982
1530	540.09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제주건축,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지부 20년사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지부	1986
1531	226.04	영천군(경북)	銀海寺 百興庵 實測調査報告書	매일원색정판사	1985
1532	544.04	상 주 군	상주양진당 실측조사보고서	매일원색정판사	1981
1533	539.04	한국토지개발공사·기술연구소	외국의 신도시계획(2)	한국토지개발공사	1986
1534	542.04	건설기술연구회	슬러리실·시공물·공방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건설기술연구회	
1535	610.04	강 명 구	조형의장론	문 운 당	1985
1536	540.081	찰스·W·무어	찰스·W·무어작품집(a+u) 건축·도시	도서출판 갑을	1985
1537	540.081	LOUIS I. KAHN	LOUIS I. KAHN(착상, 의미) (a+u) 건축·도시	도서출판 갑을	1985
1538	610.42	이 강 훈	전환하는 미국의 현대건축(a+u) 건축·도시	도서출판 갑을	1985
1539	660.081	최 병 옥	최병옥사진집 한국의 자연미	삼 화 출 판 사	1986
1540	541.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7건설자재총람A (대저조성재, 콘크리트재, 단열 및 방수재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541	541.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7건설자재총람A (장호재, 마감재, 시설품, 운송설비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등록번호	청구번호	저	자	도	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542	541.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7건설자재총람M/E (기계설비, 전기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543	540.03	장 기 인				한국건축대계Ⅳ 한국건축사전	보 정 문 화 사			1985
1544	542.1	권기봉·김용환				건축의 APPROACH	화 영 사			1985
1545	559.04	建築研究振興協會				メキンコ地震災害調査速報	建築研究振興協會			1985
1546	540.368	日本建築士會連合會				日影規制の基礎講座	日本建築士會連合會			1981
1547	542.368	日本建築士會連合會				建築士事務所の開設者がその業務に関して請求することのできる報酬の基準と解説	日本建築士會連合會			1981
1548	542.368	日本建築士會連合會				設計, 工事監理業務規準(建築・構造・設備)	日本建築士會連合會			1979
1549	540.09	奈良縣建築士會				創立30周年記念誌, 士會奈良	奈良縣建築士會			1986
1550	540.368	日本建築士會連合會				基本建築関係法令集-昭和59年版-	日本建築士會連合會			1984
1551	322.368	日本建築士會連合會				改訂宅地造成等規制法とその解説	日本建築士會連合會			1981
1552	542.12	台北市建築師公會				鋼筋混凝土構造 設計實例	台北市建築師公會			
1553	844	김 동 기				時代의 所望	時 兆 社			1975
1554	844	김 동 기				人類의 所望	時 兆 社			1975
1555	844	김 동 기				久遠의 所望	時 兆 社			1975
1556	539.04	建 設 部				공간계획론총집	건 설 부			1968
1557	341.06	허 진 도				세계의 역사, 절대주의의 성쇠	한국종합출판사			1976
1558	341.06	허 진 도				세계의 역사, 고대유럽	한국종합출판사			1976
1559	542.1	최 창 길				건축의 모형	기 문 당			1984
1560	549.617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1. 주택(1-2층 주택, 경지이용, 코트하우스, 빌라)	집 문 사			1985
1561	549.617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2. 집무구역(가벽, 테라스하우스, 다중주택)	집 문 사			1978
1562	549.617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3. 소주택(복합주택, 연립주택)	집 문 사			1983
1563	549.069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4. 박물관(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연구소)	집 문 사			1985
1564	549.617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5. 호텔-레스토랑(호텔-레스토랑, 호텔-레스토랑, 호텔-레스토랑)	집 문 사			1984
1565	549.375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6. 휴가와 노년주택(집소주택, 주택, 주택)	집 문 사			1984
1566	549.618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7. 생활시설(학교, 음악관, 문화관, 회의관)	집 문 사			1984
1567	549.558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8. 교통-통신시설(공항터미널, 환승역, 공항, 방송통신시설)	집 문 사			1983
1568	542.616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9. 상업시설(쇼핑센터, 백화점, 상점, 소점)	집 문 사			1984
1569	542.618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10. 체육시설(스포츠센터,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도시)	집 문 사			1985
1570	542.616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11. 사무시설(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집 문 사			1985
1571	542.613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12. 병원시설(병원, 진료실, 수술실)	집 문 사			1985
1572	542.372	집문사, 편집부				세계현대건축사진시리즈 13. (조-중등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 교육시설)	집 문 사			1985
1573	542.613	건축공학연구회				DA건축도집 의병원 I 사람병원 V. 1	태 림 문 화 사			1985
1574	542.613	건축공학연구회				DA건축도집 의병원 II 사람병원 V. 2	태 림 문 화 사			1985
1575	542.618	건축공학연구회				DA건축도집 체육관	태 림 문 화 사			1985
1576	542.069	건축공학연구회				DA건축도집 미술관 I 광역공공의 미술관 V. 1	태 림 문 화 사			1985
1577	542.069	건축공학연구회				DA건축도집 기술관 II 지역의 소미술관 V. 2	태 림 문 화 사			1985
1578	542.1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의 건축(KIA Guide to Seoul City) C. 1	(주)토탈디자인			1985
1579	542.1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의 건축(KIA Guide to Seoul City) C. 2	(주)토탈디자인			1985
1580	542.1	한국건축가협회				서울의 건축(KIA Guide to Seoul City) C. 3	(주)토탈디자인			1985
1581	606.9	김 봉 열				한국의 건축 - 전통건축편 -	공 간 사			1985
1582	606.9	김 봉 열				한국의 건축 - 전통건축편 -	공 간 사			1985
1583	606.9	김 봉 열				한국의 건축 - 전통건축편 -	공 간 사			1985
1584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1 환 경	집 문 사			1986
1585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2 물 품	집 문 사			1986
1586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3 건축 생활	집 문 사			1986
1587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4 단위공간 I	집 문 사			1986
1588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5 단위공간 II	집 문 사			1986
1589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6 단위공간 III	집 문 사			1986
1590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7 건축 문화	집 문 사			1986
1591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8 건축 산업	집 문 사			1986
1592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9 지 역	집 문 사			1986
1593	542.1	집문사, 편집부				건축설계자료집성 No.10기 술	집 문 사			1986
1594	542.617	집문사, 편집부				E+P (설계+계획) No.1 독립주택	집 문 사			1985
1595	542.618	집문사, 편집부				E+P (설계+계획) No.2 다목적주택	집 문 사			1985
1596	542.618	집문사, 편집부				E+P (설계+계획) No.3 체육관과 스포츠시설	집 문 사			1985
1597	542.617	집문사, 편집부				E+P (설계+계획) No.4 저층집합주택	집 문 사			1985

등록번호	창구번호	저	자	도	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598	542.372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5	어린이를 위한 건물	집	문	사	1985			
1599	542.372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6	학 교 I	집	문	사	1985			
1600	542.069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7	도 서 관	집	문	사	1985			
1601	542.617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8	테라스 하우스	집	문	사	1985			
1602	542.617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9	청소년회관·어린이마을	집	문	사	1985			
1603	542.61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0	오피스빌딩	집	문	사	1985			
1604	542.375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1	노인을 위한 건물	집	문	사	1985			
1605	542.61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2	백화점·쇼핑센터	집	문	사	1985			
1606	542.618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3	회의센터·회의장이 있는 호텔	집	문	사	1985			
1607	542.379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4	심신장애자를 위한 건물	집	문	사	1985			
1608	542.612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5	교 회	집	문	사	1985			
1609	542.61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6	시청사와 지구센터	집	문	사	1985			
1610	542.372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7	직업교육을 위한 건물	집	문	사	1985			
1611	542.61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8	창고·유통센터	집	문	사	1985			
1612	542.69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19	옥내·옥외물	집	문	사	1985			
1613	542.550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0	공 장	집	문	사	1985			
1614	542.61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1	계산센터	집	문	사	1985			
1615	542.372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2	학생기숙사	집	문	사	1985			
1616	542.556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3	자동차수리·판매점과 가솔린스탠드	집	문	사	1985			
1617	542.613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4	대학연구소	집	문	사	1985			
1618	542.550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5	중소공장	집	문	사	1985			
1619	542.539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6	근린가구의 도시계획	집	문	사	1985			
1620	542.540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7	교통로상의 건물	집	문	사	1985			
1621	542.617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8	중층집합주택	집	문	사	1985			
1622	542.617	집문사, 편집부		E + P (설계+계획)	No.29	새로운 타운하우스	집	문	사	1985			
1623	542.8	권 기 태		시공계획과관리 상권 V. 1			집	문	사	1982			
1624	542.8	권 기 태		시공계획과관리 중권 V. 2			집	문	사	1982			
1625	542.8	권 기 태		시공계획과관리 하권 V. 3			집	문	사	1982			
1626	542.2	집문사, 편집부		금속책문, 문짝상세도			집	문	사	1982			
1627	542.1	집문사 건축연구회		5時間半의 설계제도			집	문	사	1983			
1628	540.03	황 일 인 역		건축영어사전			집	문	사	1984			
1629	540.518	집문사 편집부		소음·진동대책 핸드북			집	문	사	1983			
1630	543.8	김 규 석		최신철골구조학			기	문	당	1986			
1631	540.411	유 길 용 역		황금분할 - 피라밋에서 르코르부지에까지 -			기	문	당	1985			
1632	540.1	장 동 찬		해법구조역학			기	문	당	1986			
1633	540.03	김 평 탁 편 저		건축용어대사전			기	문	당	1986			
1634	542.1	허동국·최창길 편저		새로운 건축부사도기법 - 도법편, 착색편 -			기	문	당	1982			
1635	540.525	최 상 범 역		조경식재설계			기	문	당	1985			
1636	543.8	이리형·정재철역		강구조설계			기	문	당	1984			
1637	542.013	이 현 호 역		건축선언문집			기	문	당	1985			
1638	542.013	최일·조희철역		건축의 고전적언어			기	문	당	1986			
1639	542.1	윤 장 섭 역		건축계획방법론			태	림	문	화	사	1987	
1640	547.8	공기조화·위생공학회		공기조화 위생설비의 알기쉬운 지식			태	림	문	화	사	1986	
1641	542.1	이 리 형 역		건축물의 내진극한 설계			건	우	사		1982		
1642	542.8	건축공학연구회역		건축공사시공관리지침			건	우	사		1983		
1643	542.1	김 정 태 역		건축가·미술가·디자이너를 위한 루시도법			건	우	사		1979		
1644	542.1	건축공학연구회		건축공사 공통시방서			건	우	사		1985		
1645	542.563	이 형 재 편 저		대양열주택(설계와 실예)			건	우	사		1980		
1646	567.560	TELEX 편찬회편저		TELEX 공학			세	진	사		1985		
1647	617.082	정 구 영		공동주택설계경기임상제품모형제도집(大阪府案北條은光明他하루정프로젝트)			건	우	사		1984		
1648	617.807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M(적용설계기법 연구)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649	617.542	대한주택공사		'86주택의 계획 및 설계(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650	617.542	대한주택공사		'86주택의 계획 및 설계(아파트)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651	617.072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의 내부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652	617.072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의 노후화실태 조사연구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653	617.072	대한주택공사		싱가폴 공동주택의 발전상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등록번호	청구번호	지	자	도	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654	617.072	대한주택공사		조립식주택 공법 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1986
1655	542.072	대한주택공사		건축척도 조정활동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1986
1656	226.07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구례군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6
1657	606.07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8			문화재관리국			1986
1658	540.04	대한건축학회		198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제 5 권 제 1 호-			대한건축학회			1985
1659	540.04	대한건축학회		1985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제 5 권 제 2 호-			대한건축학회			1985
1660	327.3	건설부		1984 지가변동을			건설부			1984
1661	327.3	건설부		1986 지가변동을			건설부			1986
1662	530.02	건설부		건설통계현황 '86			건설부			1986
1663	543.1	건설부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건설부			1986
1664	537.3	건설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			1986
1665	542.1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미국의 에너지절약적 건물 설계기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1
1666	542.1081	대한건축사협회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주택 현상설계작품집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67	542.1081	대한건축사협회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주택 현상설계작품집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68	542.1081	대한건축사협회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주택 현상설계작품집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69	542.108	대한건축사협회		'86 회원건축설계작품집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0	542.108	대한건축사협회		'86 회원건축설계작품집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1	542.108	대한건축사협회		'86 회원건축설계작품집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2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도시환경과 조형예술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3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도시환경과 조형예술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4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도시환경과 조형예술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5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과 실내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6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과 실내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7	542.619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과 실내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8	542.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학술시방서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79	542.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학술시방서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0	542.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학술시방서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1	542.6	대한건축사협회		공사감리요령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2	542.6	대한건축사협회		공사감리요령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3	542.6	대한건축사협회		공사감리요령 C. 3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4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6 건축사연수(설비·구조 심포지움)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5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6 건축사연수(설비·구조 심포지움)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6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6 건축사연수(시공 및 재료 심포지움)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7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6 건축사연수(시공 및 재료 심포지움)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8	540.02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건축행정현황 C. 1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89	540.02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건축행정현황 C. 2			대한건축사협회			1986
1690	539.04	건설부		제5 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주거·도시 및 토지부문계획 1982-1986			건설부			1982
1691	443.720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86 춘계태양에너지 학술발표회 (소록집) C. 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82
1692	443.720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86 춘계태양에너지 학술발표회 (소록집) C. 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82
1693	542.1023	한국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C. 1			한국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			1984
1694	542.1023	한국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		한국건축설계 경기규준 C. 2			한국건축설계경기운용위원회			1984
1695	329.023	김수진		'86 세법전			세경사			1986
1696	329.023	박종태		'86년판 국세법전			서울출판문화사			1986
1697	350.5	충무처		'87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충무처			1986
1698	539.7304	강현술		정사지 주거환경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1986
1699	616.1504	노형래		고층사무소 건축물의 외관요소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1986
1700	530.91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987년도 국가기술 자격검정 안내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986
1701	530.04	대한건설협회		IFAWPCA 제22차대회 한국대표단참가보고서			대한건설협회			1986
1702	530.058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년보 1986			대한건설협회			1986
1703	530.366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명부 1986			건설공제조합			1986
1704	530.011	산업도시개발연구소		산업개발총서			성림출판사			1986
1705	333.09	사회정화위원회		사회정화운동사			사회정화위원회			1986
1706	537.6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맹건설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07	421.6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무소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08	53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굴착 보조공법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09	543.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준구조물 기초의 보수 및 보강공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등록번호	청구번호	지	자	도	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710	536.2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량습작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1	54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textile 종류별 효용성의 비교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2	53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삼투막법에 의한 해수의 담수화시스템의 설계와 최적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3	53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자동화 시스템 기술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4	530.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플랜트 건설산업의 기술력 및 국제경쟁력에 관한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5	539.1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델공업도시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6	530.5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플랜트의 컴퓨터 제어시스템 기술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7	547.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냉난방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8	542.8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중 및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저차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19	542.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0	542.5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사비 구성요소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1	537.46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저터널의 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2	537.6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댐의계획 및 설계에 관한 습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3	539.15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의 당면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4	530.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소프트웨어의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5	53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 C 용 토목구조 해석 프로그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6
1726	530.0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6년차 사업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7
1727	530.071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 제 6 권			강 원 대 학 교			1986
1728	542.612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3 사원건축			중 앙 일 보 사			1986
1729	542.611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4 궁실, 민가			중 앙 일 보 사			1986
1730	542.6122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5 석동, 부도, 비			중 앙 일 보 사			1986
1731	542.619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6 조선불화			중 앙 일 보 사			1986
1732	642.081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7 추사 김정희			중 앙 일 보 사			1986
1733	654.482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8 화조, 사군자			중 앙 일 보 사			1986
1734	654.8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19 풍속화			중 앙 일 보 사			1986
1735	654.5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20 인물화			중 앙 일 보 사			1986
1736	654.4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21 단원 김홍도			중 앙 일 보 사			1986
1737	634.708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22 고분, 미술			중 앙 일 보 사			1986
1738	612.5308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23 금속공예			중 앙 일 보 사			1986
1739	626.08	김원룡 외 8 인		한국의 미 V. 24 목칠공예			중 앙 일 보 사			1986
1740	540.720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절약형주택(설계도집) C. 1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7
1741	540.720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절약형주택(설계도집) C. 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7
1742	546.07	건설기술연구회		예측수시분해 내역연도 강변의 사공 물·공함산양에 관한 연구보고서			건설기술연구회			1987
1743	530.07	우성기술연구소		우성기술연구보			우 성 기 술			1986
1744	700.03	이승녕 외 4 인		대국어사전			현 문 사			1986
1745	700.03	고광만 외 3 인		신영한대사전			어 문 각			1967
1746	617.0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종합목록			대 한 주 택 공 사			1986
1747	617.804	쌍용건설(주)		초고층아파트의 계획에 관한 연구			쌍 용 건 설 (주)			1987
1748	324.09	김 덕 순		대한투자신탁 10년사			대한투자신탁(주)			1987
1749	804.04	고 연 기		새 세대의 식사·연설전서			대 우 출 판 사			1985
1750	540.366	中山重捷		デザイナーのための建築法規チェックリスト			彰 國 社			1983
1751	540.04	株式會社 大林組技術研究所		大林組技術研究所報 No.34			(株) 大林組東京本社			1987
1752	540.023	飯塚彬矩		設計事務所便覧1986. 全國版			日刊建設工業新聞社			1986
1753	540.023	東京都建築行政協會		建築基準法關係法令集			光 和 堂			1987
1754	530.366	(株) 日刊建設通信新報		1986年版 建設名鑑			(株) 日刊建設通信新報			1986
1755	329.9407	김 의 효		1985년 지방세실무			조 세 문 고 사			1985
1756	329.407	박 용 순		법인의 세무			국 세 자 료 사			1985
1757	329.4207	김 중 화		신계징과목 회계실무(부채·지분)			서울출판문화사			1985
1758	329.4207	김 중 화		신계징과목 회계실무(자산)			서울출판문화사			1985
1759	329.4207	김 중 화		신계징과목 회계실무(손익)			서울출판문화사			1985
1760	325.808	장 누 응		예산회세충람			경 제 평 론 사			1984
1761	329.4203	한국세정연구회		세무대백과사전 V. 1 가격~당구용품			한국세정연구회			1985
1762	329.4203	한국세정연구회		세무대백과사전 V. 2 당구순이익~소득표과			한국세정연구회			1985
1763	329.4203	한국세정연구회		세무대백과사전 V. 3 소매과세~전당포			한국세정연구회			1985
1764	329.4203	한국세정연구회		세무대백과사전 V. 4 전대~회석식소주			한국세정연구회			1985
1765	329.4203	한국세정연구회		세무대백과사전 V. 5 부 료			한국세정연구회			1985

등록번호	청구번호	저	자	도	서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1766	329.4208	유인호 외 2인		최신종합세법총람, 대법원판례(세법), 개정세법(지방세, 국세) 등			한	국	경	제	신	문	1985			
1767	329.4203	박종태		국세법전(직세편)			서	울	출	판	문	화	사	1986		
1768	329.4203	박종태		국세법전(간세, 기타편) I			서	울	출	판	문	화	사	1986		
1769	329.4203	박종태		국세법전(간세, 기타편) II			서	울	출	판	문	화	사	1986		
1770	329.4203	김덕길		조문별 국세예규 통집편 V. I			서	울	출	판	문	화	사	1986		
1771	329.4203	김덕길		조문별 국세예규 통집편 V. II			서	울	출	판	문	화	사	1986		
1772	541.08	British Consultant Bureau		Directory 1987-1988			British	Consulant	Bureau				1987			
1773	541.08	British Consultant Bureau		Directory 1987-1988 Index of specialisations			British	Consulant	Bureau				1987			
1774	542.808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공사 사공사례집(VI)			해	외	건	설	협	회	1987			
1775	530.02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안전사고지침			대	한	건	설	협	회	1987			
1776	617.804	건설부		'86아파트 주거환경조사			건	설	부				1986			
1777	547.9072	건설부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 제1권 제1권: 우라나리의 지진위험도 제2권: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			건	설	부				1987			
1778	547.9072	건설부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 제2권 제3권: 건축물의 방재기준			건	설	부				1987			
1779	547.9072	건설부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 제3권			건	설	부				1987			
1780	617.8072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3대 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건	설	부, 대한주택공사				1986			
1781	617.8082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3대 가족형 공동주택 설계안현상공모 우수작품설계도집			건	설	부, 대한주택공사				1986			
1782	547.9072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재해예방 심포지움(교재) V. 1			건	설	공	제	조	합	1987			
1783	547.9072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재해예방 심포지움(교재) V. 2			건	설	공	제	조	합	1987			
1784	547.9072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재해예방 안전관리교육(교재) V. 3			건	설	공	제	조	합	1987			
1785	617.05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85주택 및 인구센서스 속보(2%표본 추출) C. 1			대	한	통	제	협	회	1986			
1786	617.05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85주택 및 인구센서스 속보(2%표본 추출) C. 2			대	한	통	제	협	회	1986			
1787	310.160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6			대	한	통	제	협	회	1986			
1788	530.09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지부		二十年 略史 (1966-1986)			대	한	건	설	협	회	부산직할시지부	1986		
1789	530.09	해외건설협회		海建協 十年史			해	외	건	설	협	회	1987			
1790	421.60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海外에너지節約 事例集 (II)			한	국	동	력	자	원	연	구	소	1986
1791	553.8407	한 남 화 학 (주)		냉동, 냉장창고 단열시방서			한	남	화	학	(주)		1987			
1792	539.07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Ⅲ) 자료편			국	토	개	발	연	구	원	1986		
1793	539.07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Ⅲ) 도건설종합개발계획			국	토	개	발	연	구	원	1986		
1794	539.07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Ⅲ) 요약			국	토	개	발	연	구	원	1986		
1795	539.07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Ⅲ)			국	토	개	발	연	구	원	1986		
1796	534.107	건설부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건	설	부				1985			
1797	530.360	건설부		건설관계행정심판 및 판례집			건	설	부				1987			
1798	539.076	국토개발연구원		'86 국 토 연 구			국	토	개	발	연	구	원	1986		
1799	530.04	연 세 대 학 교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8집 제2권			연	세	대	학	교		1986			
1800	542.072	경 제 기 획 원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			경	제	기	획	원		1987			
1801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7건축사 특별연수(2급건축사 특별전형대비)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2	540.072	대한건축사협회		'87건축사 특별연수(2급건축사 특별전형대비)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3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구조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4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설비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5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설계 감리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6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도시 환경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7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사공·재료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8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법률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09	542.072	대한건축사협회		1987년도 건축사연수(실내디자인 심포지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1987		
1810	617.07	건설부		'86아파트 주거환경조사 C. 1			건	설	부				1986			
1811	617.07	건설부		'86아파트 주거환경조사 C. 2			건	설	부				1986			
1812	194.072	건설부		정화수범사례집, 뿌리가 내릴때까지			건	설	부				1987			
1813	530.072	건설부		제6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국토개발부문계획 1987~1991			건	설	부				1987			
1814	540.561	건설부		건설기술 진산업무현황			건	설	부				1987			
1815	542.61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주거용 건물의 설계개신방안 연구			한	국	동	력	자	원	연	구	소	1986
1816	563.07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전력의 효율적 이용기술연구 (Ⅲ)			한	국	동	력	자	원	연	구	소	1986
1817	542.07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간이건물에너지 평가기법 개발연구(I)			한	국	동	력	자	원	연	구	소	1986
1818	617.07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아파트난방비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	국	동	력	자	원	연	구	소	1986
1819	300.07	홍익대학교		홍대논총 X VⅢ 인문·과학편			홍	익	대	학	교		1986			
1820	500.07	홍익대학교		홍대논총 X VⅢ 자연과학편			홍	익	대	학	교		1986			
1821	704.7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신문의래어 표기편람			한	국	신	문	편	집	인	협	회	1986

차 례 1987년 1월호(통권214호)

4	회갑 선년사	한기태
6	건설부령문 선년사	이규호
	이달의 시	
12	시간속의 세 건축에서	이근배
	회원작품	
13	덕평로빌 하우스	강순일
16	민주빌딩	유원재
18	캠브리지 사옥	방의재
20	마포현대빌딩	민중식
22	대전강호진문대학	김두연 양추국
24	오호강 주막	오기수
26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상현 안화인
28	역삼동 이세택	김 호
	특집/ '87년에 기대한다	
29	유희준·송민구·정환호·이강식·김영수·정구은·박예환·김민철	
	기고	
37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2)	이재욱
46	건축표준법 개정내용	안희상
	연구보고	
40	전시공간의 이론과 실제	한도룡
50	컴퓨터와 실제	이명래
56	고층사무소 건물의 외관요소 평가에 관하여	노형래
60	도심지 도로변 학교의 소음실태에 관한 연구	박재평
67	건축과 조경 (Ⅶ)	오상강
	자료	
70	1987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고지	
76	정보자료실 소장 도서목록 소개 (Ⅲ)	
86	공동주택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기준 고지	
74	산입회원	
91	협회소식	

차 례 1987년 2월호(통권215호)

3	특집	최창규
6	이달의 시	박영기
	회원작품	
7	상설여자대학교 강당	강석원
10	고속도로 양방향교차	김자호, 지 순, 이광만
12	강화도상록진사당	김지익
14	동산빌딩	전상배, 김신영
16	필택 남식음식점	조추연
19	가죽호텔(관리동)	임용대
21	이화여자 법정대학관	김정식
24	'87년 어떻게 일한다	각위원회 위원장
	특집 / 建築家・工事監理業務	
33	工事監理業務의 意識性	
45	設計監理 分離에 대한 小考	강기세
	建築世界 ①	
50	국립현대미술관	안성배
	테마와 연대 / 건축을 무엇인가	
47	건축이라는 예술 (I)	안광의
	建築紀行 ①	
58	하회 안동마을을 찾아서	김철길
	研究報告	
62	전시공간 연출	한도룡
66	건축과 조경	오상강
	특 집	
70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내용 해설	강진부
76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이재욱
80	건축표준법 개정내용 (II)	안희상
84	산입회원	
86	협회소식	
90	'87년 건축사지 복차	

차 례 1987년 3월호(통권216호)

6	특집	한기태
	建築과 對應	
	會員作品	
7	소양교회 교목관	최동규
8	사랑유지관	송평성
12	반계시립소	강순일
14	상곡현대학교 양천관	박영진 김영웅
16	국제학교	민중식
18	카톨릭중앙의료원 성모병원	김종근
20	국립현대미술 중앙도서관	위형복
22	카이이민후와 의현	허정도
	이달의 시	
40	작은 집	金國熙
	특 집	
24	測量의 工事監理機能의 性格	李 樑
42	建築法 및 同施行令 改正內容 解説	姜吉次
	알리며 생각하며	
27	美에 대하여	柳存秀
	建築의 發展 / 建築은 무엇인가?	
28	建築이라는 藝術 (I)	安秉義
	建築紀行 ②	
32	藝術의 發展을 위한 資料紀行 (I)	金錫龍
	研究報告	
46	CAD를 이용한 建築設計	김도훈, 강영현
52	전시공간 연출	한도룡
	設計報告	
55	부산문화방송사옥 지명현상설계	김정일, 이영희, 이윤홍, 차관영
	특집報告	
72	컴퓨터의 設計	金海 譯
81	會員作品	
82	新入會員	
84	협회소식	
88	국가기술자의 취득등록자 '87 보수교육 시험안내	

차 례 1987년 4월호(통권217호)

3	특집	張起仁
6	1987년도 建築 建築學會 建築	安秉義
	業務內容의 質을 높이자	
	會員作品	
8	삼하리 A세택	柳春秀
10	경기도 기흥공동주택	金日坤
12	수유동 다세대 주택	韓忠國
14	군자동 주택	黃 仁
16	D인입주거단지	郭成文, 趙龍順
18	상일동 벽상빌라	黃登益
20	서초동 삼익빌라	朴相敏
	建築의 發展 / 建築은 무엇인가? ③	
22	建築이라는 藝術 (II)	安秉義
	建築紀行 ③	
26	藝術의 發展을 위한 資料紀行 (II)	金錫龍
	研究報告	
32	大學施設設計과 所要判斷方法	黃智淵
	알리며 생각하며	
37	용법이 있는 날	李 樑
	이달의 시	
38	비둘기가 품고 있는 집	金國熙
	研究報告	
40	建築과 融合	金日坤
44	전시공간 연출	韓忠國
48	아파트設計改善 및 新 모델 開發	朱鍾元
58	건축·토목설계의 컴퓨터이용	李相計, 朴洪錫
	淨化報告	
69	解決되어야 할 課題들	조영재
70	資料・圖書	
71	資料	
83	會員作品 ③	
	나의 다짐	鄭基英
84	新入會員	
87	협회소식	

차 례

1987년 5월호(통권218호)

- 6 建築士の建築教育有感 李承南
- 美術作品
- 7 모상발달 金花藏·金禮一
- 18 서울독자금융 李相宇
- 12 홍안건축사옥 金泰雄
- 14 한포개발 林承成·金惠來·安俊澤
- 16 중외대학사옥 金宗根
- 18 안도레신 趙中衍·宋光燮
- 20 한일투자금융 尹承重·卡 鎔
- 21 이가원사옥 崔英集
- 建築的 散策/建築은 무엇인가
- 24 건축이라는 藝術(IV) 安秉義
- 建築批評 ②
- 30 서울독자금융 金廣현
- 著 稿
- 36 建築標準化의 諸問題 柳運衡
- 대학도시권의 사실계획 黃智顯
- 61 일하며 생각하며
주선환 명주교 金白浩
- 金剛運載 ①
- 40 韓國近代建築의 再說明(I) 金晶東
- 아담의 詩
- 50 나의 집 趙顯俊
- 設計雜誌
- 52 86년건축주택설계경기 작품 鄭성근·박연식
- 研究報告
- 62 장애자를 위한 건축의 설계 박용환
- 68 都市環境과 色彩 朴政植
- 78 妙洞마을 조사 연구 임충진
- 75 富貴勳勝
- 77 富貴勳勝 ②
- 88 協會消息
- 92 新入會員

차 례

1987년 6월호(219호)

- 6 共同住宅設計의 方向 吳雄熙
- 美術作品
- 7 상암여대(천안)본관 金禮(前)
- 10 포항공과대학 행정관리동·교양학부동 및 공학관 (株)關·三
- 14 공간(중등) 사옥 (股)金海根
- 18 남정빌딩 尹弘甲
- 20 아시아자동차 기술연구소 金善洋·金和的
- 22 국립군산대학 예술관 魏亨復
- 아담의 詩
- 24 맨브로키의 법칙 노승희
- 建築的 散策/建築은 무엇인가
- 26 건축이라는 藝術(完) 安秉義
- 批評
- 32 3월호 회원작품에 대한 비평 金炳春
- 著 稿
- 38 1987 베를린 국제건축박람회 金廣根
- 일하며 생각하며
- 49 다정의 건타널 金宇成
- 金剛運載 ②
- 50 韓國近代建築의 再說明(II) 金晶東
- 아담의 詩
- 61 신바람 鄭延忠
- 研究報告
- 62 서울도심개발사업지구내 건축규모와 용도분식에 관한 연구 李春鶴
- 68 結構形式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金永德
- 74 CAD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金昌壽·趙亨男
- 84 妙洞마을 조사연구(II) 임충진
- 90 자랑스런 우리회원
- 92 誌의 發刊
- 93 新入會員
- 94 協會消息
- 98 富貴勳勝

차 례

1987년 7월호(220호)

- 3 建築士의 自律性 金熙春
- 美術作品
- 11 공주 Y씨주택 朴源浩
- 14 삼정동 P씨택 鄭求殷
- 16 삼전동 K씨주택 金武彦
- 18 3세대를 위한 논현동 J씨택 金仁喆
- 20 정광동 S씨주택 宋二浩·安基錫
- 22 서초동 Y씨주택 金洛中·閔康錫
- 24 고양군 K씨주택 姜孝錫
- 일하며 생각하며
- 26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趙成龍
- 建築的 散策/建築은 무엇인가
- 28 "建築 너 뭐고"(1) 崔昌奎
- 金剛運載 ③
- 32 韓國近代建築의 再說明(3) 金晶東
- 批評
- 42 허우경과 홍영 金炳春
- 著 稿
- 48 建築工事의 監理에 수반되는 紛爭의 調停制度와 実態 李在玉
- 時評
- 53 한·불 문화시설 건축세미나 및 전시회
- 研究報告
- 66 한국의 전통건축(I) 張瑞浩
- 72 중국 전통건축의 이해(I) 朴舒弘
- 82 大都市管理(II) 盧持顯
- 88 新入會員
- 89 協會消息

차 례

1987년 8월호(통권221호)

- 6 말없는 말 宋政求
- 美術作品
- 7 독립기념관 金基雄
- 10 여진도화환 崔英澈
- 14 세한미디어 충주공장 관리동·식당동 公口坤
- 18 순택시청사 李祥杓
- 20 대전진신농장 예식현 吳英澈
- 22 대원빌딩 李鎭祥
- 일하며 생각하며
- 25 강아들은 어디갔나? 姜純一
- 建築的 散策/建築은 무엇인가②
- 26 "建築 너 뭐고"(2) 崔昌奎
- 著 稿
- 32 獨立紀念館의 自初至終 金 洵
- 著 稿
- 38 獨立紀念館의 韓國性과 紀念性 金廣根
- 金剛運載
- 44 韓國近代建築의 再說明(4) 金晶東
- 研究報告
- 56 1987 베를린 국제건축박람회(5) 金廣根
- 66 先史時代의 우리나라 建築 張瑞浩
- 72 중국전통건축의 이해(2) 朴舒弘
- 80 葬禮儀式에 建築計劃에 관한 연구(2) 金永德
- 88 新入會員
- 89 資 料
- 98 協會消息

차 례 1987년 9월호(통권 222호)

6	建築士の使命	金正澈
書展作品 (地方書展作品)		
7	대전대학 학생회관	李載成·俞炳雨·朴相容
10	동래여자중·고등학교 무상예술고등학교	李載成
14	인제 미술관	朴華深
16	제일외원	崔勝元
18	하트타운	金榮培
20	포항종합세입(주) 사옥	李鍾甲·沈聖輔
일반에 생각하며		
23	삼마인	朴在燾
建築의 敎育 / 建築은 무엇인가		
24	人類의 軌跡과 建築軌跡의 理解	崔昌奎
金品東		
30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5)	金品東
외국의 현대건축가 소개 ①		
39	오스발트 미디야스 옹기스	成仁澤
批評		
54	도시적 삶과 도시적 건축	金文德
研究報告		
60	大都市 管理(2)	盧植熙
67	韓半島를 通해서 보는 建築要素 및 宅 小考	趙仁淑
76	住居用建物の 設計改善方案 研究(1)	朴相東·朴李海·尹龍鎭
建築時評		
84	故 李康輔兄을 생각하며	安勝元
建築		
90	2000년을 향한 건축사의 자세	申榮浩
91	協會消息	
94	會員의 聲望	

차 례 1987년 10월호(통권 223호)

書展作品		
6	취주교 약안동 교회	金煥石
8	연희조형관	金仁赫·權永郁
10	임대동 H·세력	金得株
12	青陽莊	崔在源
14	서울신학은행 역촌동지점	金榮珠
16	메이스트론 유스호스텔	朴奎水
18	한국체육대학	羅慶澤
김림		
22	民主化에 대한 우리의 展望	俞景亨
紀行		
24	유람紀行 19일	姜智益
連載		
30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6)	金品東
42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의 住居	張慶浩
49	外國의 現代建築家 / 알도 로시	成仁澤
이달의 詩		
48	등대 혹은 등대지기	원구작
研究報告		
62	特殊學校의 建築環境施設에 關한 研究	申元淑·劉永哲
66	중국전통건축의 이해(3)	朴舒弘
76	吐含山 石窟庵小考(1)	崔富得
85 附 料		
92	제13회 건축사 작품전 및 제2회 신인·학생 건축설계전 수상작 발표	
94	協會消息	
83	會員의 聲望	

차 례 1987년 11월호(통권 224호)

建築		
8	佛舍像 正立을 위한 나의 提言	李永熙
書展作品 (13回 建築士設計作品展 受賞作 發表)		
8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趙成龍·張其成
10	코오동우정관	崔寶珠
12	남부청소년회관	安錫元
14	독립기념관	金基維
15	3 세대를 위한 논현동주택	金仁赫·韓英晳
16	한국은행전주지점	李永熙
18	대전대학 학생회관	李載成·俞炳雨·朴相容
19	카톨릭중앙의료원 김포병원	金榮根
20	방배동 상호빌라	邱雨龍
22	포항평안국민학교	李鍾甲·沈聖輔
김림		
24	건설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세계적선	金貞洙
紀行		
28	유람紀行 19일(2)	姜智益
連載		
36	風水地理說과 住宅設計(1)	朴時翼
48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의 住居	張慶浩
54	住居用建物の 設計改善方案 研究(2)	朴相東·朴李海·尹龍鎭
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와 技能		
42	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와 技能	金文德
63	第2回 新人·學生建築設計公開展 受賞作 發表	
86	協會消息	
90	會員의 聲望	

차 례 1987년 12월호(통권 225호)

3	決意文	
第22回 定期總會		
6	開會辭	
8	建設部長官 致辭	
10	日本建築士會 連合會長 祝辭	
書展作品		
11	국립청주박물관	金壽根
14	국회도서관	李永熙
16	삼성종합기술연구소	金品壽·朴昇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禹時鼎
22	(주) 금성사 중앙연구소	(株) 閔·三建築
25	안양 석수동성당	鄭求榮
이달의 詩		
27	편지	鄭浩承
週年대례		
28	또 한해를 보내며	尹錫祐·朴研心·宋深九·金善洋·金洛中
김림		
34	建築設計는 建築士가 하는데	崔昌奎
連載		
36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7)	金品東
研究報告		
48	오디오라운지의 音響設計	孫章烈
56	風水地理說과 住宅設計(2)	朴時翼
64	吐含山 石窟庵小考(後)	崔富得
63	會員의 聲望	
70	協會消息	
72	附 料 1주백전건축발달을 계정법칙, 정보자료원소장 도서목록, '87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83	協會消息	
89	協會消息	
91	新人會員	



▲ 지난 11월27일, 12월 9일 양일에 걸쳐 본협회 강당에서 제2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 李圭勳 건설부장관이 제13회 건축사 설계작품공모전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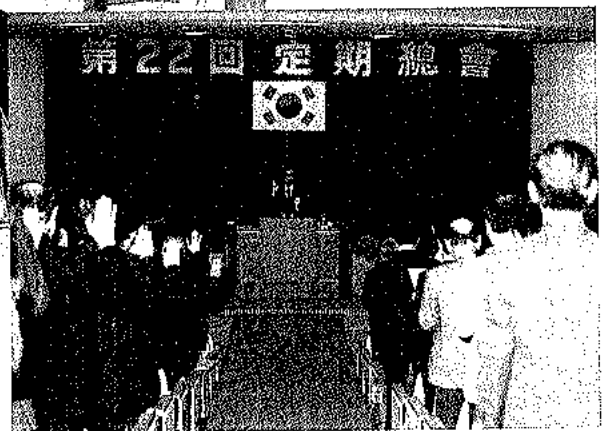
▼ 업무감사보고를 하는 柳根洙 감사



▼ 전 회원이 건설기술 관리법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경리 감사보고를 하는 鄭孝煥 감사



제22회 定期總會 개최

- 任期滿了 理事・監事 改選 -

제22회 定期總會가 11월 27일의
本會議과 12월 9일의
續開會議로 2일간에 걸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1월 27일의
본회의는 제적 代議員 2백94명중

1백84명이, 續開會議에도 역시
1백84명이 각각 참석, 成員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會議經過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本會議

- 일시 : 87. 11. 27. 10:00~
- 장소 : 본협회 강당

開會

安箕泰 회장이 李圭孝
건설부장관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고니시미사끼」부회장, 대한건축학회
李光魯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劉熙俊 회장 등 내빈 여러분을
안내하며 오전 10시 조금 지나
단상에 올랐다.
代議員 일동은 내빈이 입장할 때
박수로 환영하였으며 李圭孝
건설부장관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고니시미사끼」부회장이 대의원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답례하였다.
내빈이 단상의 자리에 미리 앉아

있던 역대회장의 환영을 받으며
자리에 앉자 安箕泰 회장은
在籍代議員 2백94명중 1백84명이
참석, 成員되었음을 알리고
제22회 定期總會의 개최를
선포하였다.
司會를 맡은 任仁赫 사무처장이
다음 순서로 국민의례를
안내하였고 국민의례가 끝난다음
鄭孝煥 감사의 낭독에 뒤따른
代議員 일동의 건축사헌장 宣誓가
있었으며 일동이 착석한뒤 이어서
開會辭가 시작되었다.

安箕泰 회장 開會辭

安箕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지난 1년은 〈건축사 업무의
受注方法이 公正去來次元에서
시비의 대상에 올라야 했는가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建築物의
設計・監理의 업무영역이 다른
기술분야에 의해 侵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협회나 회원
모두에게 어려웠던 해〉라고
회고하고 그러나 〈건설기술
관리법과 우리 건축사의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때 建築物에

대한 監理의 特性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反映하기로
한 바에 따라 현재 본협회와
관계기관간에 協議를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의 정당한
立場과 主張을 기필코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大韓建築士協會의
會長인 本人이 책임을 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決然한 표명을 하였다.
安箕泰 회장은 계속하여
〈工事監理의 制度改善,
監理費의 現實化를 포함한
건축사의 業務 및 報酬規定의
現實化, 건축사 所得標準率의



합리적인 조정, 건축사 특별전형을
포함한 건축사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改善建議, 국제사회로
부터 제기되고 있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自律化要求에
대한 對策講究, 아카시아總會의
主管開催, 본협회의 聯合會制度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연구수립〉등 풀어야 할 懸案이
山積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회원이 一絲不亂한
團結力을 誇示)하여야 할 때라고
合心 協力을 호소하였다.

李圭孝 長官 致辭

李圭孝 건설부장관은 〈지난 여름
史上 類例가 없었던 災害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建築士
여러분에게 치하를 한다고 서두를
시작하고 2천8백여 회원을 기쁘린
큰 단체로 성장하면서 〈기술수준
향상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建築士상의 정립과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
하였으며 내년에는 〈아시아지역
건축시험의회 서울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제건축계에서의
지위향상을 통한 국위선양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와 致賀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건설부장관으로서 평소
생각해오던 바를 당부한다고
전제하고, 당대의 건축문화

발전의 선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
건축기술의 혁신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 전문인으로서 타
전문인보다는 더 강한 직업윤리
의식을 확립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특히 建設技術管理法와
관련하여서는 〈건축사
여러분중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업무가 일부 侵害 내지 萎縮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施工監理制度에 대하여는 同法
施行令 제정시 建築士法이나
建築法の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建築士의 固有業務가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確約하였다.

太田和夫 會長 祝辭

太田和夫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은 대리로 참석한 「고니시

미사끼」부회장을 통해 祝辭를
하는 가운데 〈양국의 건축사



신설된 지부장상 시상 장면

상호간의 이해 및 우의증진, 상호기술의 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 등 兩協會가 더욱 긴밀한 친선관계를 가져 상호 방문을 자주하고 기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作品展入賞者 施賞

내빈 추사가 끝난다음 제13회 건축사 설계작품순회전 및 제2회 신인·학생 설계공모전 입상자 施賞이 거행되었다. 李圭孝 장관은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으로 大賞을 차치한 趙成龍, 張基成 님에게 직접 상패와 부상을 주어 표창하였으며 建築士에 대한 시상이 끝날때까지 박수로 축하하다가 시상이 모두 끝나자 단상의 역대회장과 내빈 및 代議員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시상은 新人과 學生의 순서로 옮겨졌다. 특히 이번 제2회부터는 支部所屬地域 출신학교 학생들을 고무하기 위한 支部長賞制度가 신설되어 市道支部長이 단상에 올라와 지부소속지역학교 학생들을 직접 시상하는 호뜻한 경정이 펼쳐졌다. 다음으로 공보회원과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추대회원 추대가 있었다. (이상 수상자, 표창자, 추대회원 명단은 이미 건축사지를 통하여 소개되었으므로 본란에서는 생략함) 시상, 표창, 추대회원 추대의 순서가 끝나고 88년도 제1회

강조하고 兩協會는 제각기 여러懸案을 안고 있지만 〈건축사로서의 입장은 같아서 기술교류등 그때 그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토의를 자주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더 우호를 깊게 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하였다.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柳根淵 감사의 일반업무 감사보고, 鄭孝煥 감사의 경리감사 보고가 있는 뒤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보고가 접수되었다. 다음으로 부의안전 상정에 들어가서는, 제1호의안: 87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88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88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88건축사연금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의안으로 나와 있었으나 본협회 중요 안전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대책회의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동의와 동시 절대다수가 이를 찬성하여 제1호 의안으로의 상정이 가결되었다. 따라서 이미 내놓았던 의안들은 순차적으로 밀려 2호, 3호, 4호, 5호 의안으로 상정될 것이 확정되었다. 부의안전 상정된 중식을 위해 약40분간 정회하였다.



추대회원 추대

停會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제1호의안, 제2호의안, 제3호의안이 다루어졌으며 제3호의안: '88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중 실적회비에 대한 전국 공통 징수율을 협의하다가 대의원들이 한 분 두 분 퇴장, 成員數에 미달됨으로써 마침내 停會하지 않을 수 없었다. 停會 직전까지의 부의안전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안: 건설기술관리법 대책의 건

의결: 조속한 시일내에 본협회 임원진과 시도지부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수립하여 협회 전체의사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
제2호의안: '87년도 제1차 일반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원안대로 통과
제3호의안: '88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실적회비 전국공통 징수율 0.7%에 대하여 협의중 停會

續開總會

- 일시: 87. 12. 9. 14:00~
- 장소: 본협회 강당

開會

제적대의원 2백94명중 1백48명이 참석, 成員되었다. 安箕泰 회장이 성원보고와 속개총회의 개최를 선포하였다. 安箕泰 회장이 간단한 인사말로 開會辭에 대신하였고 이어서 鄭孝煥 감사의 낭독에 의한 建設技術管理法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安箕泰 회장은 결의문 채택후 建設技術관리법과 관련한 經過報告를 하였으며 부의안건을 다루기전에 〈속개회의 여비〉와 〈4대 日刊紙에 성명문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費用〉등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1월 27일 총회석상에서 협의중 定足數 미달로 停會하게 됨으로써 중단된 협의안건을 계속 다루고 속개회의 여비 및 성명문 게재로 협의는 제6호 의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계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와 대다수 대의원의 찬성이 있어 중단된 의안을 먼저 다루기로 하였다.

속개회의의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의원들에게 인사하는 신임임원들



충청지역건축사협회 개회식

제 3 호의안 : '88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실적회비 전국공통정수율을
0.7%에서 1%로 수정 통과
제 4 호의안 : '88특별회계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통과
제 5 호의안 : '88건축사연금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통과
제 6 호의안 : 속개총회 대의원
참석여비 및 4대일간지 성명문
개재료 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통과

실적회비의 전국공통정수율을
0.7%로 할 것인지 1%로
할 것인지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토의가 계속되었으나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므로 개의나 재개회의가 없는
한 표결에 부쳐 확정짓자는
의견에 대다수 대의원이 찬성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1%로
확정되었다.

제 4 호의안, 제 5 호의안은 이미
유인물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토의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이의없이
신속한 승인 통과로 처리되어
나갔다.

제 6 호의안의 속개총회로 인한
대의원 참석여비와 건설기술
관리법과 관련한 본협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문 신문개재료에 대한
결정 승인의 전도 역시 제안설명에
뒤이어 이의없이 승인 통과되었다

閉 會

새로 선임된 임원 일동이 단상에
나와 대의원에게 인사를 하고난 후
회순은 기타사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기타 안건의 제안이 없자

安箕泰 회장은 총회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만세를
선창하였다.
제22회 定期總會가 閉幕되었다.

任員改選

87년 12월로 임기 만료되는
任員은 理事 5인, 감사 1인이며
성함은 다음과 같다.
理事 : 宋基德 李榮一 安將元
李文雨 尹 鉉
監事 : 鄭孝煥

任員改選 방법에 대하여는
현 회장에게 위임하지는 인과
전임 회장을 전형위원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전임회장을
전형위원으로 하여 선임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으며 전형을 위하여
5 분간 휴식하기로 하였다.
5 분후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선임된 理事 명단이 발표되었다.
禹南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李宗燁 : 건축사사무소 우일
黃鎭周 : 세화건축사사무소
李世勳 : 건축사사무소 세하
朴成圭 : 종합건축사사무소
합성·고려·경신·창건축
監事는 회장단에게 선임을
위임하지는 안이 나왔지만 호선
경신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尹鳳源, 水昌燮, 李鍾萬
세 회원이 추천되었으며 李鍾萬
회원이 일선상의 이유로 固辭하여
尹鳳源 회원과 水昌燮 회원이
경선하게 되었다.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尹鳳源 회원이 監事로
선출되었다.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사 무 소 주 소	전 화
회 장	安箕泰	(주) 원일종합 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서초동 1534-5 (코스모빌딩 401호)	(02) 587 - 1456 ~ 8
상 근 부회장	金基壽	대한건축사협회	강남구 서초동 1603-55	(02) 584 - 6198
이 사	黃在濤	오주·일민건축사사무소	부산시 사구 부민동 1가 7-1	(05) 127 - 3164
이 사	姜基世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강남구 신사동 573-2	(02) 544 - 4723
이 사	趙春元	대원건축사사무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177	(062) 22 - 5058
이 사	朴榮翼	원 안산, 다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77	(0345) 6 - 3111
이 사	黃鎭周	세화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인 1가 235-14	(053) 44 - 0234
이 사	李宗燁	건축사사무소 우일	관악구 봉천동 856-5	(02) 877 - 6231
이 사	朴成圭	종합건축사사무소 합성, 고려, 경신광건축	중구 인현동 2가 192- 30 (산성빌딩 310호)	(02) 269 - 2642
이 사	禹南龍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강남구 서초동 1637-5	(02) 586 - 6992
이 사	李世勳	건축사사무소 세하	관악구 봉천동 862-9	(02) 877 - 1550
감 사	柳根測	중도종합건축사사무소	충남대전시 중구 대흥동 479-8	(042) 22 - 5013
감 사	尹鳳源	건축사사무소 원전사	중구 신당동 101-7 (남흥빌딩 201호)	(02) 253 - 4920

建設部長官招請 오찬간담회



12월 8일 12시부터
李圭孝 건설부장관 초청,
오찬간담회를 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建設技術管理法
관련한 問題, 2급會員
特別銓衡과 관련한 問題 등
本협회의 重要懸案이 진지하게

협의 되었으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本협회에서는 安箕泰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사무원,
각 시도지부장, 서울지부 부지부장,
서울시 건축사복지회 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建設技術管理法 業務推進委員會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 회장,
金基濤 부회장, 姜基世·李文雨·
李榮一 理事, 俞景哲·鄭煥鎬·
趙相鎬·朴永憲 支部長,
金永奐·呂世鉉·朴炳夏·
朴成吉·李東根·高昌永·
尹鎮宇·文尚植 회원이 모여
건설기술관리법 대책을 위한
業務推進委員會를
개최하였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명칭
建設技術管理法 業務推進
委員會로 협의
- 위원구성

委員長: 姜基世
幹事: 李文雨, 金永奐
委員: 宋基德, 李榮一
俞景哲, 鄭煥鎬
朴永憲, 趙相鎬
金正洙, 趙貞鎬
呂世鉉, 朴炳夏
朴成吉, 李東根
高昌永, 尹鎮宇
文尚植

• 협의내용
總會時 전체회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기로 협의 (작성자:
姜基世, 李文雨, 鄭煥鎬,
金永奐, 李東根)
聲明書를 日刊紙에 게재하고
소요예산은 총회시 추경되도록 협의

建設技術管理法 対策委員會

12월 9일 정오부터 본협회
중회의실에서 12월 8일 개최된
건설기술관리법 업무추진위원회
협의내용을 토대로 한
對策委員會를 개최하였다.
본 對策委員會에 참석한 委員은
다음과 같다.

安箕泰 회장, 金基濤 부회장,
宋基德, 安將元·李文雨
黃在禧·姜基世·趙春元 이사,
柳根洙·鄭孝煥 감사, 鄭煥鎬·
張基雄·鄭昌奎·朴永憲·
趙相鎬·金永吉·白亨哲·
趙貞鎬 지부장.

支部消息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제1회 건축사친선 체육대회
11월 8일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회원과 회원가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천2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회 건축사 친선 체육대회가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
본대회 개최식에는 安箕泰
회장의 격려사를 비롯 姜泰淵
부산시장의 축사(金英煥 부시장

대독)도 있었으며 시내 10개구를
6개 팀으로 나눠 축구, 피구,
족구, 모래주머니 던지기,
부부광복여 달리기, 400m계주 등
6개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본대회는 부산직할시지부
창설 22년만에 처음 갖는 대규모
본격 체육대회로서 회원 참석률이
76%나 되었다. 이날 경기
전적은 다음과 같다.

시상명	등 위	수 상 사	득 점	시 상 내 용
입 장 상	1위	B조(북, 서, 사하, 영도구)		상금
	2위	E조(부산진구)		"
	3위	D조(남, 해운대구)		"
경 기 상	종합우승	D조(남, 해운대구)	320점	우승기, 순회컵(회장) 컵, 상금
	준우승	E조(부산진구)	280점	컵, 상금
	3위	F조(동래구)	260점	컵, 상금
	감투상	B조(북, 서, 사하, 영도구)	210점	상금
	장려상	A조(중 구)	222점	"
	노력상	C조(동 구)	170점	"
응 원 상	1위	C조(동 구)		상금
	2위	F조(동래구)		"
	3위	A조(중 구)		"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憲

회원친목단합행사

11월 20일~21일의 1박2일간
회원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천안, 온양, 수덕사, 삼교천,

도고온천, 미곡사, 광주, 부량사
등을 순례하는 회원친목단합행사를
실시 하였다.



광주직할시지부 건축업무간담회

建築業務간담회

11월 25일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박永憲 지부장 외 26명의 회원과 송영환 광주직할시 건설국장 외 9명의 관련 시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7건축업무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본간담회는 건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계 공무원과의 이해증진 및 유대물 등록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지부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 하였다.

블우이웃돕기

12월 1일 박永憲 지부장과 일행이 천해 경토원을 방문하고 성금 15만원을 전달하였다. 광주직할시지부는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송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忠淸南道支部

지부장 康祐植

大川分所 업무개시

11월 6일 대전시 대천동 197~10에 개설한 大川分所에서 현판식을 거행하고 업무를 개시 하였다. 현판식에는 康祐植 지부장과 李元雨

부지부장, 대천분소 申命鎭 분소장 등 회원 다수가 참석 하였으며 대천시, 보령군, 청양군, 서원군의 건축사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大川分所 현판식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木浦分所 추계체육대회

목포분소 추계체육대회 개최

전라남도지부 목포분소 (분소장 李英)는 11월 14일 전라남도 영암군 나로도 유원지에서 분소회원 11명,

보조원 52명, 관계기관 직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와 배구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

□ 正會員



金基元
1955. 12. 8
국립부산개방대학 건축과
藝元 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51의14
805-7720



宋有東
1950. 8. 14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문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91
553-6625



朴贊逸
1958. 2. 28
동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성심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93
552-0978



朴文昌
1958. 9. 15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삼간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63
71-6200



徐喆洙
1954. 7. 18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수건축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7-28
802-6104



姜熙達
1955. 5. 25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제이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예관동 56-10
265-0666



孫旭
1956. 10. 5
부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옥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93-4
886-0953



姜鎬奎
1949. 2. 5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코리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9
757-9939



裴童基
1954. 4. 2
부산개방대학 건축과
청원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북구 구포2동 1186-23
335-7711



河濬秀
1954. 11. 3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반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936-8
584-6634~5



金東壽
1955. 4. 13
부산상지공업고등학교
건축사사무소 남양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9-8
462-4500



李鍾海
1954. 2. 14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745
547-7722



姜基玉
1956. 9. 15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문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91
553-6625



李仁鎭
1957. 3. 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745
547-7722



孫友鎡
1945. 11. 15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장호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성내동 539-2
486-4860



朴明鎬
1958. 2. 9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한국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덕산동 127-10
45-6328



韓文奎
1956. 4. 28
성동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버금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6-6
544-1701



崔鳳相
1954. 1. 24
영남대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미도건축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09
45-3453



李鳳淵
1958. 11. 11
경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예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수유3동 230-10
900-7816



崔明浩
1955. 8. 24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양건축사사무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26-1
753-2577



成龍澤
1953. 9. 13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태·신화·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427-1115



李載昊
1956. 1. 25
동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정범건축
경남 창원시 서호동 177-101
2-7420



金秉華
1957. 1. 17
경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시민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57-1
422-9900



崔漢君
1951. 6. 25
대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화성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서구 내당동 135-2
626-4500



俞興在
1954. 6. 12
대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대원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125-1
45-3600



明贊基
1957. 9. 7
경북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동건축
대구시 중구 수동 51-1
253-8668



裴昌福
1952. 8. 8
계명실업전문대학 건축과
대아건축사사무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 11-3
44-6550



梁哲豪
1958. 11. 3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수북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 3가 87-4
2-0894



姜信太

1954. 3. 25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성건축사사무소
경주시 노동동 14
42-2600



南龍洙

1955. 8. 22
경북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대호·당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4-14
793-1452



元永明

1947. 6. 24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원영명건축사사무소
원주시 일산동 51-2
44-8842



沈章輔

1957. 3. 24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1-28
587-2020



崔炳相

1929. 2. 18
철도고등학교 건축과
대림건축사사무소
수원시 교동 23
42-9290



許炳成

1939. 2. 2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782-3131



黄在焄

1948. 9. 28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자유그룹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2-2
549-1639



崔義鉉

1950. 11. 1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현우
서울시 농대분구 신설동 104-20
253-2272



權相赫

1953. 7. 9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3
549-0312



金永澤

1951. 12. 10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5
552-9606

都映州

1922. 4. 9
국립신경공업대학 건축학과
동남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68-451
802-6214~6



韓尚鎭

1954. 10. 26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영풍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24-2
755-7184



韓明洙

1956. 5. 14.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예도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1-5
84-2744



金俊植

1939. 12. 3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망경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군 광양읍 인동리 357-1
761-0564



石鎮錫

1955. 3. 8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성건축
대구시 중구 동인 2 가 113-4
422-4909



孫基贊

1950. 10. 21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림엔지니어링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783-0161



孫相達

1956. 8. 11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08-5
562-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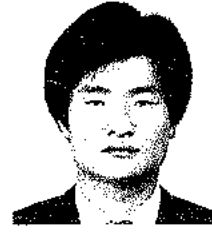
徐炳寬

1951. 11. 11
조선대 공전 건축과
서울시청 건축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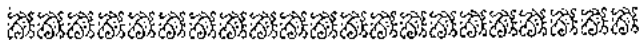
鄭祥明

1940. 12. 4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7
562-3147



白景欽

1957. 4. 16
경북개발대학 건축공학과
포항시청
포항시 덕수동
2-0101



□ 準會員



鄭洪根

1955. 1. 6
대전공전 건축과
서울시 강동구청 건축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03
477-6853



李鍾昊

1954. 3. 5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경기공업개발대학 시설계장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172
972-1432



方勝文

1953. 7. 16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합) 대건사
춘천시 요선동 18-14
53-7101



鄭明沃

1951. 6. 14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전남대학교 시설과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
54-0435



南炳台

1956. 1. 16
대전개발대학 건축과
충남도청 주택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255-1508



金裕志

1950. 2. 22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농협중앙회 전남도지회
광주직할시 동구 대외동 58
22-3175



宋尚奎

1946. 10. 9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쌍용건설 (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3 8
540-6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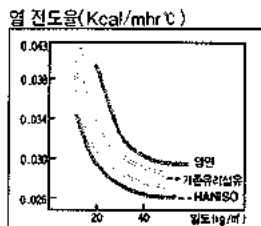


유리섬유는 세계적인 「TEL 공법의 하니소」를 추천해 주십시오.

전세계 85%가 선택한 TEL 공법의 하니소는 프랑스 '이소베 상고방'사의
그 기술 그대로 뛰어난 단열효과와 흡음력, 내구성을 가진 유리섬유입니다.

■ 단열·보온효과가 월등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텔(Tel) 공법으로 만드는 하니소는 기존의 유리섬유에 비해 섬유 굵기가 가늘고
고르며 (평균 4~4.5 마이크론) 동일밀도에서 집속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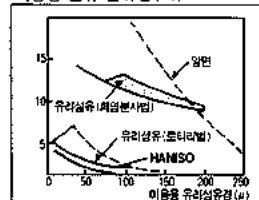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열·보온
효과가 월등하며
단열성능당 시공비도
황선 경제적입니다.

■ 복원력이 뛰어 나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하니소는 최고 1/5까지 압축이 되면서도 복원력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고 시공시
에는 내벽과 외벽사이를 틈새없이 충전시켜 더욱
높은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강도가 높고 복원성, 내화성, 흡음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조용하고 이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뛰어난 흡음효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소음공해를
완전히 해결, 밝은 시끄러워도 실내에서는 조용하고
이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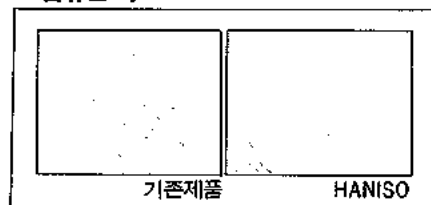
하니소는 천연
규사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며 불연재로서 방화벽 역할도 뛰어납니다.

■ 시공성도 좋습니다.

하니소는 유리가시가 전혀 없어 맨손으로 만져도
따갑지 않고 칼이나 가위로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등
취급이 용이하므로 시공기간을 단축시켜 경제적
으로도 이익을 줍니다.

※ 섬유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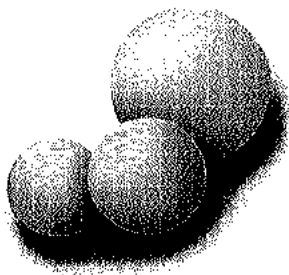
세계적인 TEL 공법의 유리섬유 -

HANISO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TEL) 785-0311~2

철선을 오려 보내시면
「하니소」의 자세한 안내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785-0311
유리섬유 양언부



전문가가 권유하는 단열재- 흰색·녹색 스티로폴

흰색·녹색 스티로폴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단열재에 물기가 스며들면 바로 벽이나 지붕을 헐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단열재가 아니고 열을 전달하는 전열재가 되어 버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폴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단열 효과를 지속시켜 항상 쾌적한 주거분위기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폴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 한남화학의 원료로 만드는 흰색·녹색 스티로폴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용으로 사용됩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폴은 난연성(자기소화성)입니다.

화재시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이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UL 94HF-1 규격 인증).

방습 단열 방음



특 징

-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서 실내 보온효과가 높습니다.
- 취급이 간편하여 시공시 특정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 단열 및 방음, 방습효과가 높아서 아늑하고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이점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단하고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합니다.
- 화재시에는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이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 우수한 원료로 제조되므로 인체에 유해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폴



흰색·녹색 스티로폴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영업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호 784-1171~9

공장 : 경남 울산시 남구 성암동 45-25호 73-1141~5

